

훈련 결과 보고서

캐나다의 불법 범죄수익 추적 및
환수 법제도에 대한 연구
(개인훈련)

2020년 3월

대 검 찰 청
김성룡

목 차

제1장 서설	1
제1절 연구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5
제2장 캐나다의 불법 범죄수익 환수 및 추적 법제도	6
제1절 캐나다 형사법제	6
1. 캐나다의 사법 구조	6
2. 캐나다 사법제도의 특징	10
3. 캐나다의 형사사건 진행 절차	10
4. 범죄 현황	14
제2절 캐나다 범죄수익 환수 법제도	16
1. 개요	16
2. 범죄수익 환수 법제의 연혁 및 근거	17
3.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몰수제도	22
가. 형사몰수(Criminal Forfeiture)	22
나. 민사몰수(Civil Forfeiture)	24
제3절 캐나다의 불법 범죄수익 추적 법제도	27
1. 개요	27
2. 관련 법제 현황	29
가. 법적 근거	29
나. FATF 권고안 이행	32
제3장 캐나다의 범죄수익 추적 및 환수 담당 기관	35
제1절 개요	35
제2절 경찰	36
1. 연방경찰(RCMP)	36
2. 주립경찰(Provincial Police)	37
3. 시립경찰(Civil Police)	38

4. 준 경찰 조직	38
제3절 검찰	39
1. 연방검찰	39
2. 주립검찰	40
제4절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전담 수사기관	41
1. 연방 차원의 범죄수익환수부(Proceeds Of Crime branch)	41
2. 주(지방) 자산몰수부서(Provincial Asset Forfeiture Unit)	42
3. 지역 경찰서의 자산몰수섹션(Asset Forfeiture Section)	45
제5절 FinTRAC	46
1. 개요	46
2. 역할	47
3. 각종 금융거래 및 보고서 분석	48
제6절 압수자산 관리 기관	51
1. 압수자산관리국(Seized Property Management Directorate)	51
2. 민사구제사무소(Civil Remedies for Illicit Activities office, CRIA)	53
제4장 캐나다의 범죄수익 환수 절차와 방법	56
제1절 범죄수익 환수 수사 절차	56
1. 일반 절차	56
2. 자산 몰수 절차	58
3. 차량 환수 절차	62
제2절 범죄수익 환수 수사 방법	64
1. 제출명령(production order)	65
2. 보전명령(restraint order)	70
3. 특별수색영장(special search warrants)	76
4. 관리명령(management order)	81
5. 대인몰수(in personam forfeiture)	84
6. 대물몰수(in rem forfeiture)	85
제5장 국내의 범죄수익 환수 제도 개선방안 검토	86
제1절 국내 범죄수익 환수 적용 법률	86

제2절 국내의 범죄수익등의 몰수·추징	88
1. 몰수·추징의 성격	88
2. 임의적 몰수·추징	89
3. 몰수 요건	89
4. 추징 요건	92
제3절 보전절차	94
제4절 국내 법집행기관의 범죄수익 환수 제도 운용 현황	95
제5절 형법의 '몰수' 규정 변경 움직임	98
제6절 관련 문제	99
제7절 구체적 방안 검토	101
1. 범죄수익 환수 규정의 형법전 삽입	101
2. 독립몰수제도의 도입	102
3. 몰수자산기금 도입	103
4. 범죄수익환수청 신설	106
5. 국제협력 강화	108
제6장 결론	110
참고문헌	112

[표 목차]

[표 1] 캐나다의 사법구조.....	9
[표 2] 캐나다 형사사건 흐름.....	13
[표 3] PAFU 조직 구성.....	44
[표 4] 범죄수익 환수 수사 일반 절차.....	57
[표 5] 자산몰수 흐름도.....	62
[표 6] 차량 압수 절차.....	63
[표 7] 범죄수익환수 관련 5개 법률의 제정 배경 및 특징.....	86
[표 8] 범죄수익환수 관련 5개 법률의 주요 내용.....	87
[표 9] 연도별 범죄수익 환수 실적.....	97

해외훈련 개요

1. 훈련국

- 캐나다

2. 훈련분야

- 검찰 수사

3. 훈련기간

- 2019. 8. 27. ~ 2020. 2. 22.

4. 훈련기관 개요

가. 훈련기관명

- 이갈 리핀드 배리스터 앤드 솔리시터
(Yigal Rifkind Barrister & Solicitor)

나. 인터넷 사이트

- www.rifkindlaw.ca

다. 훈련기관 주소

- 5001 Yonge Street, Suite 301, Toronto, ON, Canada

라. 연혁

- 기업 간 분쟁, 상업 분쟁, 채권 추심 및 주주분쟁 등 다양한 소송에 대한 법률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4년 설립

마. 변호사 소개(Yigal Rifkind)

- Meyer, Wassenaar & Banach LLP에서 변호사 실무
- Toronto, Seneca College에서 행정법, 이민법 등 강의
- 기업 간 소송, 민사, 협상, 중재, 상속, 부동산 관련 전문 변호사

바. 주요 업무

- 기업 경영권 분쟁, 계약 다툼 등 법률 서비스
- 행정, 민사, 이민, 부동산 등 각종 법률 서비스
- 디지털 포렌직 기술을 이용한 기업 데이터 보안 및 침해 사고에 대한 법률 지원 등

훈련결과보고서 요약

훈 련 자	김성룡	직 급	검찰수사관
소 속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훈 련 국	캐나다	훈련기간	2019. 8. 27. ~ 2020. 2. 22.
훈련기관	이갈 리핀드 배리스터 앤드 솔리시터 (Yigal Rifkind Barrister & Solicitor)	훈련구분	단기
훈련목적	금번 실시한 캐나다 불법 범죄수익 추적 및 환수 법제도에 대한 연구는 현재 국가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해외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서 큰 의미를 가지고 이러한 연구결과를 향후 검찰·국세청·금감원 등 범죄수익 환수와 관련된 유관기관에서 도움이 될 유의미한 자료로 활용할 목적임	보고서매수	115 매
내용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나다의 자금추적 및 범죄수익 환수 관련 법·제도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법, 범죄수익 및 테러자금조달법 등 환수 근거법 - 제출명령, 보전명령, 특별수색영장, 관리명령, 형사/민사몰수 등 환수 제도 ○ 최근 증가하는 가상화폐·자금세탁 범죄에 대한 캐나다 당국의 대처 현황 연구 		

제1장 서설

제1절 연구목적

최근 검찰 개혁의 한 방향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검찰청 직제 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 1월 28일자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민생사건 수사와 공판기능 강화를 위해 특수부 등 직접 수사 담당 부서 13곳이 폐지되고, 기존 부서는 형사부·공판부로 전환되었다. 이번 검찰청 직제 개편안 개정 논의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설치되어 있는 범죄수익환수부 역시 폐지가 거론되었으나¹⁾ 최종적으로 폐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존치가 결정된 사실이 있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결과가 수사기관의 사법집행력 약화로 이어져 결국에 범죄의 재생산으로 귀결되는 최소한의 통로는 막은 셈이 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범죄수익환수 전담 부서가 폐지된다면 이는 상대적으로 정치적·사회적·경제적 권력을 부정하게 행사하는 반칙적 범죄와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자들만이 그 반사적 이익을 얻게 되어 웃음 짓게 될 현실이 반복될 뿐이기 때문이다.

범죄수익 환수를 전담하는 부서는 뒤에서 다시금 언급하겠지만 2005년 5월경 비공식직제로 대검찰청 산하에 ‘범죄수익 환수 및 자금세탁 수사 전담반’이 발족하여 직원 10명이 처음 활동을 시작한 이후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도록 정식 직제가 되지 못하였다. 그러던 것이 2016년경 이른바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전 국민이 경험하면서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과 부정축재 재산의 환수를 강력히 요구하게 되었고, 그 실천과제의 하나로 검찰의 범죄수익 환수 기능을 강화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2018년 2월경 고액 추징미납건과 중요 부패사범 수사가 집중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부가 정식 직제로 출범하였고, 전국청 범죄수익 환수 수사의 컨트롤

1) 동아일보, 「법무부 “직접수사 부서 41곳 폐지”...검 “부패수사 포기하라는 것”」, 2019. 11. 14.

타위 역할을 담당할 대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과가 각 정식으로 발족하였다.

범죄 예방의 효과적인 방법은 범죄의 발생 동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사전 예방의 것이겠지만, 사후적으로 이미 발생한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 나아가 범죄로 인해 발생한 수익을 철저히 박탈하여 2차 범죄에 재투자되는 재범의 고리를 끊는 것에 있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우리 사법체계에서는 범죄의 대가로 취득하게 되는 수익을 박탈할 수 있도록 형법과 각종 특별법에서 몰수와 그의 부가형인 추징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범죄의 유발 동기가 금전적인 이익 취득에 있다는 점에서 징역형 등 인신구속적 형벌 이외에 몰수와 추징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것이야말로 범죄자로 하여금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를 마음을 제거하는 최선의 방법이 된다.

이와 같이 중요한 사법집행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을 갖춘 전담 기관이 그 소임을 다하여 범죄에 대응하여야 하지만 범죄수익의 환수를 담당하는 전담 부서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의 범죄 예방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사법제도의 집행부서가 부재하여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면 기왕에 존재하고 있는 법제도는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당초 범죄수익 환수제도의 도입 취지가 잠재적인 범죄자들로 하여금 장래에 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과 그 유래재산까지도 환수된다는데 생각이 미치도록 하여 범죄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고자 하는데 있음에도 이러한 입법 목적 달성은 요원한 미래가 되고 말 것이다.

반면 미국, 영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형사몰수에 국한된 우리나라와는 달리 민사몰수에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여 선진적인 환수 법체계를 세우고 이를 집행할 법집행기관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의회와 법원의 지지 가운데 계속하여 범죄수익 환수제도가 변화, 발전하여 왔고, 법집행기관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범죄를 상대로 한 강력한 대응방안으로서 범죄수익환수제도를 폭넓게 활용하고 있

다2). 자산몰수제도는 미국 법무부 자산몰수운영국(the Asset Forfeiture Management Staff of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등 미국의 법집행기관이 범법자들에게 대응하는 수단이 되고 있고, 나아가 범죄수익 환수기금(Asset Forfeiture Fund)를 통해 환수된 범죄수익의 관리 및 기금을 운용하기까지 확장되어 있는 등 범죄수익 환수 법집행체계가 잘 발달되어 있다. 영국은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통합법인 범죄수익환수법(The Proceeds of Crime Act 2002, 'POCA')에 따라 자산회복기관(Assets Recovery Agency)을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다³⁾. 더욱이 국립범죄수사청(NCA) 산하의 범죄수익교육센터(Proceeds of Crime Centre)에서 금융추적수사과정을 수료한 공인금융추적수사관(Accredited Financial Investigator)으로 하여금 금융추적수사와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POCA의 권한 중 소속기관에게 허용된 권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⁴⁾.

하지만, 우리나라는 2001년 9월 제정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범죄수익 환수라는 개념이 최초 등장하였으나 이를 집행할 기관의 설치 운영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실제 법집행이 제대로 될 수 없었던게 현실이었고, 그로부터 약 4년여 기간이 지난 2005년 5월경에야 비로소 정식 기구는 아니지만 대검찰청 산하에 '자금세탁 범죄 수사 및 범죄수익환수 전담반'이라는 테스크포스 개념의 비상설기구를 설치 운영하게 되었다. 이후 2009년경 전국 60여개 검찰청에 정식 직제 부서가 아닌 기존 부서에 범죄수익환수라는 단위업무를 추가하는 형식으로 범죄수익환수반이 확대 운영되기에 이르렀고, 확장된 범죄수익환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KICS 형사사법포탈에 범죄수익환수시스템(ISF)를 설치하여 전제범죄에 해당되는 범죄를 기소할 경우 촘촘하게 범죄수익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실적이 향상되게 되었다. 이후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것은 아니지만, 2018년경 드디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과가 정식 법제기구로 설치

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주요 해외국 법집행기관의 금융거래추적 운영 실태에 대한 연구」, 2017. 12., 3쪽

3) Proceeds of Crime Act 2002 Chapter 29

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위의 책, 90쪽

운영되어 보다 체계적으로 범죄수익 환수 수사 및 법집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경우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의 수사와 공판이 집중되어 있고, 대형 경제사건뿐 아니라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처리되는 곳이기에 다른 어떤 사법집행부서보다도 범죄수익 환수 수사의 중요성이 요구되어져 대검찰청의 범죄수익환수과와 함께 범죄수익환수부로 정식 직제화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검찰의 특수부 폐지 논의에 맞물려 범죄수익 환수 부서의 존폐 역시 함께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단순히 특수수사를 수행하는 검찰의 일개 부서로서 범죄수익환수과(부)가 다루어진다는 데 있다. 하지만, 오히려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방법인 범죄수익 환수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에 다시금 범죄수익 환수 법제도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보다 튼실한 법집행의 틀을 갖추기 위해 미약하지만 환수 법제도에 대한 재탐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유병언 세월호 사건,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전직 대통령들의 부정부패사건 등 대형 부패범죄를 경험하면서 전국민적으로 범죄로 취득한 수익은 반드시 환수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졌고, 이에 발맞춰 우리나라의 학계 및 실무에서는 미국, 영국 등 해외국의 선진 환수 법제도를 연구해 우리의 법제도에 도입하고자 하는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

반면, 미국과 같은 영미법계 국가에 속하면서도 국가적 특성에 적합한 몰수체계를 갖추고 있는 캐나다의 법제도와 그 집행 체계에 대한 연구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캐나다는 국제사회로부터 ‘불법자금의 도피처’ 혹은 ‘돈세탁의 천국’이라는 비난을 의식하여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관계 법제도를 정비하여, 오늘날에는 미국 등 선진국과 동일한 형태로 상당히 발전된 몰수·추징 등 환수체계 및 범죄수익을 추적하는 법제도를 갖추고 있는 나라이기에 여기서는 캐나다의

범죄수익 환수 법체계를 살펴봄으로서 우리의 범죄수익 환수 체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제2장에서는 캐나다의 불법 범죄수익 환수 및 추적 법제를 살피고자 한다. 이를 위해 캐나다의 사법 구조 및 형사사건 진행 절차를 소개하고,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몰수제도를 알아본다. 그리고 캐나다의 자금 세탁 방지 및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법적근거로 형법(Criminal Code), 범죄수익(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법[Proceeds of Crime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Act] 및 FATF 권고안 이행 실태를 다룬다.

제3장에서는 캐나다의 범죄수익 추적 및 환수를 담당하는 기관에 대해 살핀다. 이를 위해 캐나다의 대표적인 사법집행기관인 경찰, 검찰 조직에 대해 알아보고, 범죄수익 환수를 전담하는 자산몰수부서,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각종 금융거래를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캐나다의 금융정보분석원인 FinTRAC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캐나다의 범죄수익 환수 수사 절차와 그를 위해 동원되는 방법으로 제출명령(production order), 보전명령(restraint order), 특별수색영장(special search warrants), 관리명령(management order), 대인몰수(in personam forfeiture), 대물몰수(in rem forfeiture) 등 다양한 수사 방법의 실태를 살핀다.

제5장에서는 국내의 범죄수익 환수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범죄수익 환수 법제의 실태를 살피고, 캐나다의 각종 제도에 대한 국내 도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관련 문제로 몰수자산기금, 범죄수익환수청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알아본다.

끝으로 제6장에서는 결론을 도출한다.

제2장 캐나다의 불법 범죄수익 환수 및 추적 법제도

제1절 캐나다 형사법제

1. 캐나다의 사법 구조

캐나다는 10개의 주(province)와 3개의 준주(territory)로 이루어진 연방 국가로서, 1867년 헌법(the constitution act, 1867)과 1982년 헌법(constitution act, 1982)을 포함하는 캐나다 헌법(the constitution of canada)⁵⁾의 제정으로 국가의 권력을 입법·사법(재판)·행정(집행)의 삼권으로 분립하고, 연방정부와 각 주/준주의 지방정부간에 사법권한을 규정한 형사법제가 구성되고 그에 따라 각급 법원이 설치되어 있다⁶⁾.

캐나다의 법원 시스템은 조금 복잡하다. 연방정부와 각 주/준주의 지방정부가 각자 법원 설립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지방정부도 민사 및 형사 법원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각 주와 준주에는 자체 지방정부 관할 법원과 국가(national) 관할 법원이 함께 존재하고, 캐나다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캐나다 전역에 존재하는 전체 법원 시스템을 최종적으로 주관하고 있다. 주/준주의 지방 상급(고등)법원 및 지방 항소법원의 판사에 대한 임명권은 중앙정부에 있고⁷⁾, 지방 하급법원 판사 임명권만 지방정부에 주어져 있다.

5) 현재 통합 캐나다 헌법은 크게 1867년 헌법(constitution act, 1867)과 1982년 헌법(constitution act, 1982)으로 구성된다. 1867년 헌법으로 알려진 영국령 북미 조례(british north america act, 1867)가 1892년 헌법에 의해 그 이름이 개정되어 1867년 헌법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3권 분립을 정의하며 캐나다의 민주적 정부 형태 및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간 권력분립 등을 규정하고 있다.

6) '캐나다는 영연방 국가이기는 하지만, 1867년 성문헌법을 제정하였고 캐나다의 헌법 문서는 영국식의 불문헌법과 미국식의 성문헌법을 가미한 특수한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김형남, 「캐나다 연방대법원의 사법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 제7집 제5호(2006), 211~212쪽을 참조하였다.

7) 캐나다에서 판사는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중에서 지명된다. 캐나다 사법 시스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주 상급(고등)법원 판사 지명을 예를 들면, 주내에서 법무부 장관과 대법원장, 고등법원장, 변협 등 법조계 대표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연방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인사 추천과 삼의 과정은 전문성과 업적, 법조계의 평판, 도덕성 등을 놓고 고도의 객관성과 까다로운 요건을 갖춰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 고등판사의 경우 정년은 75세로 사실상 종신직이고, 연방법에 따라 신분과 지위가 철저히 보장되어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연봉을 캐나다 달러로 30만 8천불(한화 약 2억 7천만 원)으로 정해 연방예산에 책정해놓고 있다.

캐나다는 국가의 최종 법원인 연방대법원이 정점으로 4단계 구조 (four-tiered structure)로 법원이 조직되어 있다.

가. 주 소속 법원

캐나다 법원 구조의 1단계로 주/준주 지방정부에 의해 설립된 주/준주 (하급)법원(provincial and territorial (lower) courts)이 있다. 하급법원은 1심 법원으로 ①가장 심각한 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범죄, ②가족법 문제(이혼을 제외한 자녀 양육, 자녀 보호, 입양), ③법에 위배되는 12세에서 17세 사이의 청소년 범죄, ④교통 및 조례 위반, ⑤지방/영토 규제 위반, ⑥소액 청구 등 형사·민사 각 분야별 재판을 가장 많이 다룬다.

법정형이 캐나다 달러로 5,000불⁸⁾ 이하의 벌금 또는 최고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약식기소사건(summary conviction offences)의 경우 주/준주 하급법원 판사가 단독으로 담당한다.

정식 기소 사건(indictable offences)은 약식사건보다 더 심각한 CAD 5,000달러 이상의 절도, 주거침입, 테러, 마약밀매, 특정 유형의 성폭행, 과실치사, 살인 등의 범죄 행위를 포함한다. 사건의 형태에 따라 주/준주 하급법원 전속 관할 사건, 주/준주 상급법원 전속 관할 사건, 기타 사건으로 구분된다. 주/준주 하급법원 전속 관할 사건은 절도죄 등 비교적 경한 범죄가 대부분이고, 주/준주 상급법원은 반역죄, 해적죄, 살인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전속 관할을 갖는다.

2단계로 주/준주 상급(고등) 법원(provincial and territorial superior courts)이 있다. 여기서는 주/준주 하급법원보다 더 심각한 범죄를 처리하고 주/준주 하급법원의 항소를 담당한다. 특히, 이민 및 특허와 같은 법령에 의해 할당된 민사사건을 결정할 책임이 있다.

8) 이하 캐나다 달러는 영문으로 'CAD'라고 표기하기로 한다.

3단계로 모든 주와 준주는 주/준주 항소법원을 두고 있다. 주/준주 항소 법원(provincial and territorial courts of appeal) 및 연방 항소 법원(the federal court of appeal)에서는 각 주/준주 상급법원(the provincial and territorial superior court), 연방 법원(the federal court), 조세재판소(the tax court of canada)의 항소사건을 담당한다.

나. 연방 소속 법원

(1) 연방 법원(federal court)

연방법원은 캐나다 전국을 관할하는 사실심법원(trial court)이다. 연방법원은 의회에 의해 지정된 분야에 관한 연방의 법적 분쟁을 담당 하는데, 정부에 대한 제소 사건, 연방에 걸쳐 규율되는 영역에 관한 사이의 민사사건, 대부분의 연방심판소(federal tribunals) 결정에 대한 심사 사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캐나다 법원체계상 주 상급법원과 같은 2단계에 위치한다.

(2) 연방 항소법원(federal court of appeal)

연방 항소법원은 연방법원과 캐나다 조세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연방법원법(federal courts act)에 열거된 연방심판소 결정에 대한 사법적 재심사(review) 등을 담당한다. 주/준주 항소법원과 마찬가지로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복 사건은 캐나다 (연방)대법원에서 처리한다. 연방 항소법원은 주/준주 항소법원과 같이 3단계에 조직되어 있다.

(3) 특별 연방법원(specialized federal cour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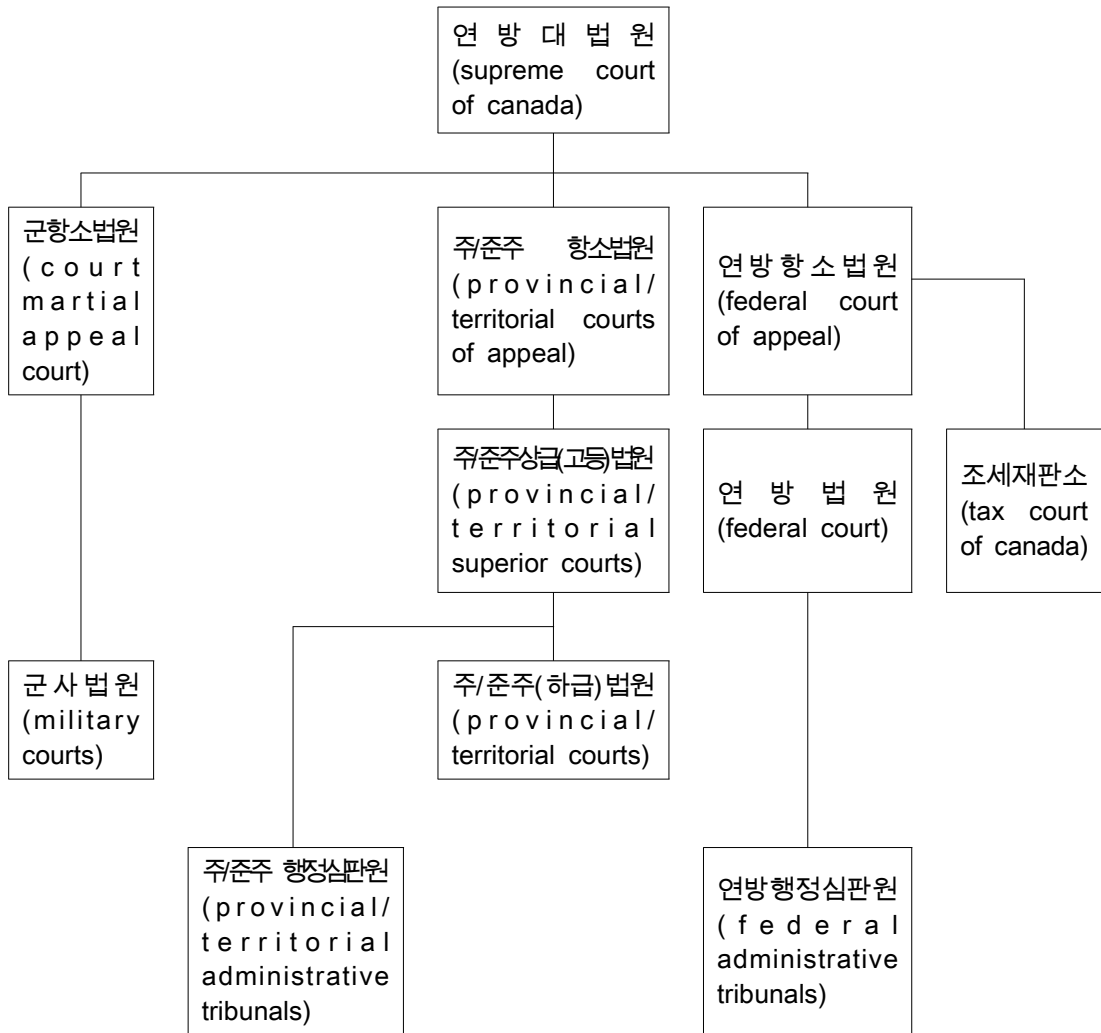
특별법원으로는 '캐나다 조세법원(tax court of canada)'이 있고,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 1심을 담당하는 '군사법원(military courts)과 2심을 담당하는 '캐나다 군사 항소법원(court martial appeal

court of canada)’ 등이 있다9).

나. 캐나다 연방대법원(the supreme court of canada)

캐나다 법원 체계의 정점에는 4단계로 캐나다의 최종심 법원인 캐나다 연방대법원(the supreme court of canada)이 있다. 연방 항소법원과 각 주/준주 항소법원에서 상고된 법의 모든 영역, 즉 헌법, 행정법, 형법, 민법 등과 관련된 사건을 최종적으로 처리한다.

[표 1] 캐나다의 사법 구조10)



9)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각국 법관 징계제도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5-17, 111~112쪽

10) department of justice canada, the judicial structure, <https://www.justice.gc.ca/eng/csj-sjc/just/07.html>

2. 캐나다 사법제도의 특징

위에서 살펴본 캐나다 사법제도의 특징¹¹⁾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사법권이 입법권과 마찬가지로 연방정부와 10개의 주정부에 나뉘어 있는 점

둘째, 각 주의 모든 법원(민사, 형사 및 상급·하급의 각급 법원)에 대한 관리 등의 권한은 각 주에 부여되어 있으나, 주/준주 법원 중 상급법원 판사는 주정부가 아닌 연방정부에서 임명되는 점

셋째, 법관은 오직 임명(appointment)에 의하여 선출될 뿐, 선거나 의회의 인준과 같은 정치적 절차가 없는 점

넷째, 연방 소속 법원과 함께 각 주에 주/준주 (하급)법원과 주/준주 (상급)법원 및 주/준주 항소법원을 두지만, 연방 소속 법원 사건은 물론 주/준주 소속 사건도 캐나다 연방대법원으로 상고되기 때문에 위대법원을 정점으로 한 피라미드식의 법원구조를 취하는 점

3. 캐나다의 형사사건 진행 절차¹²⁾

캐나다의 형사 범죄¹³⁾는 형법(The Criminal Code, R.S.C. 1985, Chap. C-46)과 기타 연방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다¹⁴⁾.

11) 조의연, 「캐나다의 법원구조와 법관인사제도」, 외국사법연수논집(재판자료(제105집)), 주 235, 637

12) 캐나다의 형사절차(canadian criminal procedure)에 대해서는 필자와 현직 서스캐처원 주(Saskatchewan province) 소속 검찰청 검사(crown prosecutor)와의 인터뷰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13) 형법을 위반하는 행동을 범죄, 즉 'crime' 또는 'offence'라고 한다.

14) 캐나다에서는 영국법령의 영향을 받아 1892년 형법 관련 장전(The Bill Respecting Criminal Law of 1892)이 제정된 후, 1947년 왕립 형법 개정 위원회가 발족하여 수년간 연구 작업 끝에 1953년 개정 형법이 입법되었다. 현행 캐나다 형법은 1985년 개정 형법(Criminal Code, An Act respecting the criminal Law, Revised Statutes of Canada 1985, Chapter C-46 and Amendments)을 근간으로 수차례 일부 조항이 수정된 형태이다. 1992년에는 양형 관련 부분의 개정이 있었다.

Roach, Kent, Healy, P., and Trotter, G., Criminal Law and Procedure - Cases and Materials(9th ed), Emond Montgomery, 2004, pp. 17~48

수사는 관련법에 근거하여 수사기관인 경찰에 의해 개시되는데 피해자에 의한 범죄사실의 신고와 고소¹⁵⁾를 그 단서로 한다. 그 이외에 경찰은 현행범을 포함하여 마약, 매춘 사건 등과 같이 경찰이 사전에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경우에 의하여도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경찰은 각종 강제적·임의적 방법을 통하여 기소 가능한 증거를 확보하는 다양한 수사 활동을 전개하고, 수사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체포·수색에 대항할 권리, 변호를 받을 권리 등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피의자의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경찰은 수사한 결과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reasonable grounds)가 있다고 판단되면 혐의와 증거사실 등이 기재된 ‘information’이라는 서류를 작성하여 주/준주 (하급)법원 판사에게 제출한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검사¹⁶⁾의 ‘charge approval’이라는 승인 과정을 거치는데, 이러한 검사의 승인이 있어야 법원의 심리가 진행되는 기소가 된다¹⁷⁾.

공소제기 절차는 치안판사(Justice of the Peace, JP)¹⁸⁾의 확인이 있어야 비로소 유효한 효력을 갖는데, 이를 위해 통상 경찰관은 information을 작성한 후 검사의 승인을 받은 다음 치안판사 앞에서 범죄를 목격하였거나 범죄의 발생을 믿을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가

15) 캐나다는 고소 또는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수사기관인 경찰에서 수사를 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건만 형사사건으로 입건하여 정식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16) 캐나다에서는 검사를 ‘crown attorney’, ‘crown prosecutor’라고 부른다. 검사의 명칭에 crown(왕관)이라는 명칭이 붙는 것은 영국 연방 독립 국가인 캐나다의 특징에서 기인한 것이다. 크라운(crown)은 왕관을 대표하여 형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소송에서 ‘검찰관’으로, 또는 공익을 위해 일하는 ‘정부 측 변호사’로 활동하는 법률시스템의 검사를 의미한다. 검사는 주/준주 하급법원 관할 사건에서 경찰이 제출한 information을 승인하여 정식 기소를 하거나, 주/준주 상급(고등)법원 관할 사건에서 검사가 직접 indictment에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기소한다. 검사는 범죄자의 혐의를 입증하기도 하지만, 피의자가 무고한 경우엔 결백을 입증하는 일도 중요시 여기고 있다.

17) 이태형, 「캐나다 양형조사제도에 관한 연구-우리나라 양형조사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2006년 국외단기개 인훈련보고서, 18쪽

18) 치안판사(justice of the peace)는 말 그대로 치안을 도모하기 위해 검찰총장(attorney general)이 지명한 재판관이다. 캐나다 온타리오주(ontario province)의 경우 치안판사가 약 300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은 로스쿨을 나와 변호사나 검사를 거친 법조인 출신도 있지만, 공무원, 교육자, 종교인, 커뮤니티 지도자 등 비(非)사법전문가 중에서 소정의 시험을 통해 선발되기도 한다. 치안판사는 형법 관할과 지방 관할 범죄에 대한 공식적(official)인 법문서인 체포·압수수색영장 발부, 소환장 발행, production order 발부 등을 담당하고, 본 재판에 회부되기까지 구속여부와 보석금 결정, 교통위반 티켓 등 비교적 경미한 사건을 재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등 온타리오주 지방 법원 관할 전체 재판의 약 70%를 담당하고 있다.

<https://www.ontariocourts.ca/ocj/general-public/what-do-judges-and-justices-of-the-peace-do/> 참고

지고 있음을 선서(swear)하여야 한다.

피의자가 기소되면 사실심리절차가 진행된다. 캐나다 형법상 모든 기소 범죄에 대하여 예비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준주 상급(고등)법원 재판 사건에 한하여 진행한다. 주/준주 상급(고등)법원 관할 사건의 경우 사실심 이전에 주/준주 하급법원 판사에 의한 예비심리를 통하여 심리를 진행할 충분한 증거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사전 판단하게 된다. 이 경우 예비심리를 통과하여야만 사실심 절차가 진행된다. 사실심의 진행을 통하여 배심재판의 경우 배심에 의하여, 배심이 없는 경우 사실심 판사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평결(conviction) 여부가 결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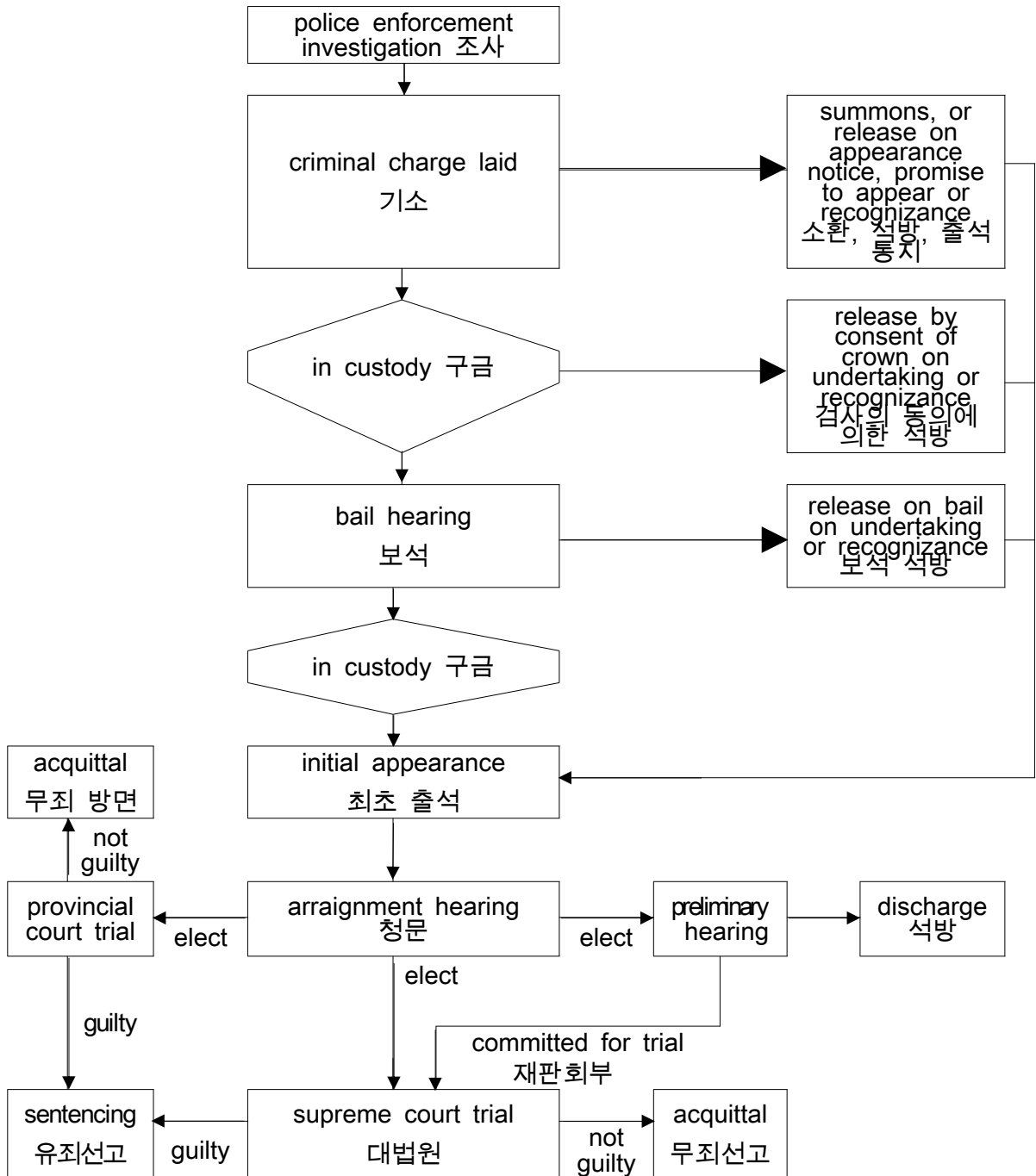
예심 후 주/준주 상급법원의 공소사실 인부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검사는 주/준주 상급법원에 'indictment'라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indictment는 information과 같이 기소 범죄사실이 기록된 기소 서류이나, information과는 달리 치안판사 앞에서의 선서가 필요하지 않고, 경찰관이 아닌 검사가 작성한다. 즉, 주/준주 상급법원의 공소사실 인부절차에서는 판사가 information이 아닌 indictment를 낭독하고 그 내용에 대한 인부 여부를 질문한다.

그러나 통상의 경우 사실심 절차가 진행되기 이전에 피고인이 유죄협상제도(plea bargaining) 등을 통하여 유죄를 인정(guilty plea)하기 때문에 사실심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다. 사실심 절차가 진행되면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beyond a reasonable doubt)' 입증하여야 한다.

피고인에 대해 유죄평결이 결정되고 나면 판사는 피고인에 대한 적정한 양형을 결정하여야 한다. 판사가 양형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범죄의 심각성, 법률상 가능한 양형의 범위, 동종 유사 사건의 양형 결과, 피고인에 대한 제재, 예방 및 갱생 효과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야 한다. 재판 결과에 대하여는 상급 법원에 항소하여 다룰 수 있고, 항소

심 재판결과는 연방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¹⁹⁾.

[표 2] 캐나다 형사사건 흐름²⁰⁾



19) 이태형, 앞의 책, 16~24쪽

20)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province of british columbia)의 형사절차 흐름을 예시로 든다.

<https://www.provincialcourt.bc.ca/downloads/criminal/Criminal-Flowchart.pdf> 참고

4. 범죄 현황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범죄율과 범죄 심각도 지수(Crime Severity Index, CSI)²¹⁾는 5년 연속 소폭이지만 계속하여 증가 추세에 있다. 이는 사기, 성폭력, CAD 5,000달러 이상 절도²²⁾ 사건이 늘어나면서 범죄율이 증가한 결과이다.

이중 사기 사건의 경우 '선불 기프트 카드 사기(pre-paid gift card scams)²³⁾' 및 '캐나다 국세청 사기(canadian revenue agency scam)²⁴⁾' 같은 일반적인 온라인과 전화 등을 통한 금융 사기 사건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사기 행위는 7년 연속 증가하고 있고, 대량의 사기 행위로 인해 캐나다의 국가 CSI 지수를 증가시키는 주요

21) 인구 100,000명당 경찰에 신고된 범죄의 양을 측정하는 범죄율과 범죄에 따른 심각도를 측정하여 보여주는 통계 지수를 의미한다.

22) 캐나다 형사법은 절도 사건을 피해액 기준 CAD 5,000달러 이상은 가중 처벌한다. 아울러, 캐나다는 3가지 종류의 형사범죄(criminal offences)가 있다. 첫 번째는 약식기소사건(summary conviction offences)으로 최대 형량이 벌금 CAD 5,000달러, 6개월 징역형 미만, 벌금과 징역형 병과 가능한 경우이다. 두 번째는 기소가능한 범죄(indictable offence)로 중범죄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고, 세 번째는 중죄와 경죄가 함께 혼합되어 있는 dual, 즉 hybrid offence로 어떤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할지는 검사가 결정한다.

23) 이러한 예로서 캐나다 뉴펀들랜드주(Newfoundland province)의 RCMP(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왕립 캐나다 연방 기마경찰)에서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iTunes 카드 사기'를 경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기꾼(scammer)은 자기 이름과 직원번호를 말하면서 웨스턴 유니언 송금(western union money transfer)과 관련하여 Scotiabank 및 BMO(Bank Of Montreal) 내에서 발생하는 사기성 은행 활동에 대해 RCMP와 공동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에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거짓말을 한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컴퓨터에 로그인하여 사기꾼에게 원격으로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 그리고 피해자는 여러 이메일을 통해 특정 위치에 있는 업체들로부터 iTunes 카드를 구매해달라는 지침을 받는다. 이에 피해자가 카드를 구매하면 사기꾼으로부터 다시 전화를 받고 카드를 활성화한 후 카드 뒷면의 번호를 사기꾼에게 제공해준다. 사기꾼은 피해자의 은행 계좌에 돈이 입금될 것이라고 말하고, RCMP로부터 합법적인 은행거래내역 사본을 제공받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받은 이메일에는 RCMP의 조사에 방해하지 않도록 기밀을 유지해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또한 특정 날짜에 자원 봉사자 모임을 위해 RCMP 지부에 참석해달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이것을 BCMP는 사기라고 경고하고 있다.」

24)

또한, 캐나다, 미국에서는 캐나다 국세청(CRA), 미국 연방국세청(IRS)을 사칭한 사기꾼(scammer) 일당들이 전화를 걸어 iTunes 기프트카드를 이용해 밀린 세금을 납부할 것을 종용하는 사기 행각이 광범위하게 벌어지는데, 사기꾼들은 자동전화시스템을 통해 납세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세금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거액의 벌금을 내거나 수사당국에 체포될 수 있다”고 협박한 뒤 가까운 상점에서 구매한 iTunes 기프트 카드에 적힌 16자리 일련번호를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전화사기범들은 국세청 이외에도 서비스캐나다, 법무부, 경찰 등을 사칭하며 추적이 불가능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Cryptocurrency)로 세금이나 공공 요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한다.

중앙일보, 「밴쿠버, 포코-코퀴틀람, 전화사기 피해규모 산더미, 2019. 11. 8.

https://joinsmediacanada.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22708 참고



원인이 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교통법 위반을 제외하고, 경찰에 신고된 전체 범 죄는 2018년 약 226만건으로 2017년보다 6만 9,800건이 늘었다²⁵⁾. 지난해 캐나다에는 입건 사례 기준으로 사기건은 13% 증가하였고, 1단계 성폭행²⁶⁾은 15% 증가, CAD 5,000달러 미만 상품 절도는 14% 증가, 5,000달러 이상 절도는 15% 증가하였다. 반면 침입절도는 - 1% 감소, 강도는 - 3%로 미미하게 감소하는 등 전체적으로 사기, 절도 범 죄가 증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범 죄 중 가장 심각한 위반 유형인 조직범 죄는 마약류, 살인, 성범 죄, 총기사고 등의 범 죄 유형군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데, 이러한 조직범 죄는 반드시 범 죄수익금 세탁 행위를 수반하므로 그 의미는 상당하다. 조직범 죄는 2016년 4,810건, 2017년 6,184건, 2018년 6,559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2018년 살인 사건은 줄긴 했지만 살인률은 지난 10년간의 캐나다 평균보다 높고, 성범 죄율 역시 4년 연속 증가 추세에 있다. 성범 죄의 특성상 실제 발생한 범 죄가 수사기관에 보고되지 않는 점을 고려한다면 성범 죄율은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²⁷⁾.

하지만, 이렇게 신고된 범 죄라 하더라도 모두 기소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기소된 경우라 할지라도 대부분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사실심 절차의 진행 없이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있다. 영미법계 국가인 캐나다에서는 일반적으로 유죄협상절차(plea bargain)²⁸⁾에 의해 형사사건의

25) 범 죄 발생율은 인구 100,000명당 5,488건으로, 캐나다의 전체 인구는 캐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7월 1일 기준 37,589,262명으로 추산된다.

26) 1단계 성폭행이란 통계상의 용어로 무거나 신체적 피해 증거가 없는 성추행을 의미한다.

27)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Police-reported Crime in Canada, 2018

<https://www150.statcan.gc.ca/n1/daily-quotidien/190722/dq190722a-eng.htm>.

28) 한국에서는 2020년 1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법정에서 검찰조사시 진술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하면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수사기관과 피고인 사이에 사실관계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커져서 실제적 진실 발견에 난항을 겪고, 그 결과 신속한 사건 종결 역시 어려워질 예정이다. 이렇게 수사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유죄협상제도(plea bargaining)의 도입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캐나다미국을 비롯한 영미법계 국가에서 주로 사용되어져온 이 제도는 신속한 사건 종결이 가능하므로 현실적으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 캐나다미국의 경우 형사사건의 95% 이상에서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더욱이 현재 영미법계 국가 이외에 대륙법계 국가인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에서도 유죄협상제도를 통해 실제적 진실과 인권보호를 조화롭게 실현하려는 노력이 한창이다. 자백을 조건으로 피의자의 형을 감경해주는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때문이다. 결국 사회에서 발생된 범죄 중 일부만이 신고되어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 중 일부만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다²⁹⁾.

제2절 캐나다 범죄수익 환수 법제도

1. 개요

캐나다의 범죄수익 환수 법제는 1985년 마약류규제법(Narcotic Control Act)의 제정으로 최초 도입되어 1989년 형법전(Criminal Code) 제12.2편에 ‘범죄수익법(Proceeds of Crime)’을 직접 삽입한 이래 현재까지 계속 그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제가 개정·시행되고 있다.

형법전에 의하여 범죄자가 기소가능한 범죄(indictable offence)인 지정범죄(designated offence)를 범하여 자국내에서 또는 국외에서 취득한 범죄수익을 사용·변환·송금·배달·운송·처분 등의 행위를 하면 처벌하고, 이러한 자금세탁 수사를 위해 특별수색영장(special search warrant), 보전명령(restraint order), 관리명령(management order), 제출명령(production order)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최종적으로 범죄수익을 몰수(order of forfeiture of property)하고 있다.

이러한 캐나다 환수 법제는 범죄수익의 범위를 매우 폭넓게 규정하면서, 엄격하게 조직화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추정규정에 의한 입증책임의 전환을 채택하고 있지 않아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게 운영하고 있어 헌법 및 형법의 제원칙에 부합하고 있다.

또한, 자금세탁 행위의 방지를 위해 전국의 금융기관들은 각 고객의 금융거래기록을 5년 이상 보관하고, 의심스러운 금융거래의 경우

유죄협상제도 이외에 면책조건부증언취득제도(immunity) 도입 역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면책조건부증언취득 제도는 피의자 성격이 강한 참고인이 제3자의 범행을 증언하면 일정한 범위내에서 죄를 면해주거나 감경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29) 이태형, 앞의 책, 11쪽

FinTRAC(Financial Transactions and Reports Analysis Centre of Canada)³⁰⁾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시행되고 있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urrency Transaction Report)는 추정금을 빼돌린 경우의 추적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실효적 제도로 운영되고 있고, 마약범죄 뿐만 아니라 뇌물죄, 사기죄 등 도합 22개의 범죄에 대하여 불법수익을 추적하고 있어서 부패수익의 성격상 실효성이 높다.

한편, 1993년 제정된 ‘압수자산관리법(Seized Property Management Act)’에 따라 몰수자산기금이 관리되고 있으나, 재무부나 법무부 산하의 몰수자산기금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독립된 제3의 기관인 공공사업부 소속의 압수자산관리국(Seized Property Management Directorate, SPMD)에서 몰수자산을 관리하고 그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경찰이 압수자산을 관리하던 1993년 이전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고자 설립되었다고 알려져 있다³¹⁾.

2. 범죄수익 환수 법제의 연혁 및 근거

캐나다는 1980년대 초반부터 범죄수익박탈에 관한 입법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1984년 2월경 ‘형사법개혁법(The Criminal Law Reform Act)’으로 불렸던 ‘C-19 법률안(Bill C-19)’을 입안해 의회에 상정하는데, 그 법안의 주요 취지는 일체의 범죄수익에 대한 효과적인 압수·수색·압류(제107조) 및 몰수(제206조)에 관한 수사기관의 권한을 확대하는데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기본권 및 사생활에 대한 침해가능성을 내세운 야당의 완강한 반대로 의제로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되고 만다.

이후, 불법 마약거래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국내외 여론이 변화하기 시작하였고, 국제사회의 압박도 가중되었다. 1985년 불법마약거래에 초점이 맞추어진 마약류규제법(narcotic control act)이 제정되어 범죄수익 박탈 제도의 토대가 갖춰지기 시작하였고, 1996년 ‘금지마약류 및

30) FinTRAC은 캐나다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자세한 설명은 뒤의 제3장 제5절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1)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수익의 사후적 통제 및 환수금 활용방안」, 연구용역보고서, 2013. 12., 94~95쪽

물질에 관한 법률(Controlled Drugs and Substances Act)의 제정으로 더욱 체계화되었다.

그사이 유엔(UN)은 1988년 마약거래 수익의 무차별 박탈을 골자로 하는 ‘불법마약류 및 향정신성물질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유엔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Illicit Traffic in Narcotic Drugs and Psychologic Substances)’을 채택하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FATF³²) 보고서를 배포해 회원국들의 적극적 이행을 강력하게 촉구하기에 이르렀는데, 캐나다는 이미 유엔협약에 가입된 국가이었기에 협약 내용에 따라 국내 법규를 정비해야 할 상황이 처하게 되었다.

마침내 1989년 1월 1일 범죄수익법(the proceeds of crime act)이 편입된 형법전(Criminal Code)이 발효되면서 1989년 이전까지는 유죄판결이 선고된 피고인에게 추징금을 병과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하던 것이 그 범위가 더욱 넓어져 강력한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하기에 이르게 된다.

당시의 캐나다 법무부장관 레이 흐나티신 경(Ray Hnatyshyn)은 1989년 최종 발효된 형법전 법안인 ‘형법전, 식품의약품, 마약류규제법에 관한 수정법률안(An Act to amend the Criminal Code, the Food and Drugs Act and the Narcotic Control Act)’이라고 명명된 ‘C-61 법률안(Bill C-61)’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C-61 법률안은 조직범죄에 대한 온건한 대응을 벗어던지고 ‘불법 마약류 및 향정신성 물질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유엔협약’을 따르기 위한 것이지만 캐나다의 특성이 반영된 법률안이다.”라고 언급하였다. 당시 레이 법무부장관의 의회 발

32) UN협약 및 UN 안보리결의 관련 금융조치(financial action)의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task force)로 1989년 G7합의로 설립되었고, 설립 이후 관할 범위가 중대범죄의 자금세탁(1996년), 테러자금조달(2001년),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2012년) 등으로 확대되었다. 주요 기능으로는 자금세탁 방지(Anti-Money Laundering, AML)·테러자금조달 방지(Counter Financing Terrorism, CFT) 분야 국제규범을 제정하고, 각국의 이행 현황을 회원국간 상호평가(peer review)를 통해 평가감독하며, AML(자금세탁방지)/CFT(테러방지) 국제규범 미이행 국가를 선별하고 제재,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수법 등에 대한 연구, 대응수단을 개발한다. 회원으로는 정회원(한국, 캐나다, 미국 등 35개국 + 유럽연합(EC), 걸프협력회의(GCC)), 준회원, 옵서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언내용을 요약 소개해보면 다음과 같다³³⁾.

「법률은 불법 마약거래 및 여타 기업범죄를 수사하여 기소하는데 필요한 엄정하고 효과적인 새로운 수단을 제공할 것이다. ‘양형(sentencing)’이라는 전통적 방법으로 불법 마약거래자와 같은 기업 범죄자들을 제압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측면이 많다. 그러므로 캐나다의 법률도 범죄자들로부터 그들이 범죄로 취득한 과실을 빼앗아 수익의 인센티브를 제거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해 요구되는 기본적 수단은 법원이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권한(power of forfeiture)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1989년 제정된 형법전의 범죄수익법은 앞서 언급한 1988년 유엔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제정한 입법이었지만, 유엔협약의 권고를 훨씬 넘는 조항들이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지정범죄(designated offences)’로 취득한 각종 재산에 대하여는 ‘특별수색영장(special search warrants)’ 및 ‘보전명령(restraint order)’을 통해 판결전에도 압류(pre-trial seizure) 혹은 처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수사기관에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한과 관련된 용어들을 신축적으로 해석하여 범집행의 효율성이 높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범죄수익인 자금을 세탁(laundering)하는 행위 및 특정의 범죄로 취득한 수익의 점유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형법전 제462조 제31항은 ‘지정범죄’에 해당하는 모든 범법행위를 자금세탁 범죄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킴에 따라 기소를 담당하는 각 주의 검찰총장은 각종 범죄수익의 출처를 은닉하는 자금세탁 행위를 기소할 수 있다. 기소대상범죄에 해당하여 정식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최고 징역 10년까지 선고가능하고, 즉결재판에 회부된 범죄의 경우 양형에 관한 형법전 제725조의 규정에 따라 추징금이 선고되고 이를 미납할 경우 6개월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33) 조병인, 「캐나다의 불법수익 몰수체계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64~67쪽

캐나다 범죄수익법은 독특하게도 특별법의 형태가 아닌 형법전에 직접 범죄수익법(the proceeds of crime act) 규정이 삽입되어 있어 '범죄자 처벌' 보다 '범죄로 인해 취득한 수익을 박탈'하는 것에 더욱 그 초점이 맞춰져있다. 즉, 형법전에서 범죄수익에 대한 압류, 동결, 몰수에 관한 법체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특정 개인이 소유한 범죄수익과 관련된 범죄혐의가 존재할 때에 환수가 가능하도록 수사권한을 넓혀주고 있다.

범죄수익법에서 말하는 '지정범죄(designated offence)'란,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정식기소사건(indictable offence)에 속하는 범죄로서 형법이나 다른 연방법령에 의해 기소가 가능한 범법행위이거나, 위 범죄의 공모, 미수, 종범이 되거나 혹은 범죄에 관한 자문을 행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고 있으며, 동법에서 말하는 '범죄수익'은 캐나다 내에서 지정범죄를 저질렀거나, 이와 관련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직접, 간접적 결과로서 캐나다 국내 혹은 국외에서 획득한 모든 재산이나 이익, 편의를 의미하고 있다. 범죄수익에 속하는 재산, 이익, 편의는 캐나다 내에서 저질러진 지정범죄 혹은 캐나다 내에서 지정범죄를 저지른 상황과 동일시될 만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부터 비롯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범죄수익에 속할 수 있는 '재산'에는 일체의 부동산·개인재산·자격문서와 전환 혹은 교환의 산물에 속하는 모든 재산이 포함되는데, '수익'이란 '1988년 유엔협약 제3조(article 3 : offences and sanctions) 제1항'에 부합되는 범법행위를 저지름으로써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발생하거나 얻어진 모든 재산을 의미한다.

1993년 캐나다 연방정부가 발표한 밀수단속대책(anti-smuggling initiative)에 따라 범죄 자체와 범죄자보다 범죄수익에 초점이 맞추어진 입법이 계속 추진되었다.

1996년 금지마약류 및 물질에 관한 법률(the Controlled Drugs and

Substances Act)이 제정되면서 불법마약거래로 획득한 수익의 몰수에 관한 조항이 반영되었고, 또한 1996년에 제정된 ‘형법개선에 관한 법률(criminal law improvement)’에 포함된 형법 수정 조항들 속에 범죄수익법 및 범죄조직법(criminal organizations act) 등이 안고 있던 취약요소들을 해소하는 내용을 반영해 시행에 들어갔다. 특정한 형태의 조직을 규합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금지마약류 및 물질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와 관련된 재산’의 개념을 상세히 서술한 시행규칙도 이때 제정되어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1998년에는 외국공무원부패방지법(Corruption of Foreign Public Officials Act, CFPOA)이 제정·시행되어 ‘캐나다 이외의 지역에서 범죄행위의 결과가 있더라도 법률상 지정범죄에 속할 수 있는 행위에서 비롯된 재산이나 수익을 점유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게 이른다.

위의 금지마약류 및 물질에 관한 법률, 외국공무원부패방지법, 관세법, 물품세법 등에 규정된 몰수조항들은 각기 독립적인 범조항으로서의 성격을 갖지만, 형법전 제12.2편에 의해 인정되는 보호막의 영향 하에 놓여있다. 형법전 제12.2편에 포함된 자금세탁 범죄 및 범죄수익의 점유에 관한 내용 등이 이들 법령에도 똑같이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각 법령마다 형법전 제12.2편의 규정들을 원용하는데 필요한 요건과 요소들을 자세하게 담고 있다³⁴⁾.

2000년대에 접어들어 특정 사업이나 직업 분야 등 종사자들에게 의심스러운 거래를 보고할 의무를 확대시키는 법률안이 의회를 통과하고 그 하위 규정들이 속속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2012년에는 ‘범죄수익 및 테러자금조달법[proceeds of crime(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act]’이 형법전에 편입됨에 따라 지정범죄로 취득한 각종 재산에 대해 특별수색영장 및 보전명령을 통해

34) 조병인, 앞의 책, 86쪽

판결 전에도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을 수사기관에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범죄수익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여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3.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몰수제도

캐나다의 몰수제도는 연방법인 형법 등의 적용을 받는 형사몰수(Criminal Forfeiture)와 각 주의 지방민사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몰수(Civil Forfeiture)로 구분된다.

가. 형사몰수(Criminal Forfeiture)

(1) 법적근거

캐나다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영미법의 전통을 계수하였고 연방국가체제이지만 몰수제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는데, 캐나다 연방형법전의 몰수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을 상대로 한 대인적(in personam) 조치이며, 미국에서와 같은 일반적인 민사몰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인몰수는 전통적인 의미의 형사 몰수와 같다. 즉, 형사 사건에 부수하여 범죄자를 대상으로 범죄자의 재산을 몰수하는 제도이다. 범죄관련재산의 몰수 및 범죄수익의 몰수에서도 이러한 대인몰수가 원칙이다.

다만, 캐나다 연방형법은 몰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일종의 대물몰수(in rem forfeiture)를 인정하고 있다. 즉,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도주하여 혐의에 대한 유죄판결이 곤란해진 경우는 예외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몰수가 아닌, 물건에 대한 몰수의 청구가 가능하다. 이 규정은 지정범죄(designated offence)에 대한 기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이 사망하였거나 도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밀접한 인적관련성을 가지는 조항이며, 순수한 대물몰수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런 점에서 준대물몰수(quasi-in rem forfeiture)라고도 한다³⁵⁾.

(2) 캐나다 연방형법의 대물몰수제도(in rem forfeiture)

캐나다 연방형법은 형사몰수에 대한 보완적 제도로써 대물몰수를 인정하고 있어서, 일정한 경우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과 상관없이 물건에 대한 몰수가 가능하다. 즉, ①당해재산의 범죄관련성이 합리적 의심없이 입증되었고, ②지정범죄에 대한 사법절차가 이미 개시된 상태이며, ③피고인이 사망하거나 도주하였다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법원은 반드시 당해 물건에 대한 몰수명령을 발해야 한다(제462조의38, 제490조의2).

또한, 이러한 대물몰수와 관련하여서는 ①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기소가 있었고, ②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고, ③영장에 의거하여 피고인에 대한 체포의 시도가 합리적으로 행해졌지만 영장이 발부된 날을 기점으로 6개월 동안 체포에 실패한 경우, 피고인은 6개월의 마지막 날에 도주한 것으로 간주된다(제462조의38제3항, 제490조의2제3항).

캐나다 밖에 소재한 재산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대물몰수명령을 발할 수 있다(제490조의2제4.1항). 당해 재산이 이미 법원에 영치되어 있을 필요가 없으며, 압류 또는 보전조치가 취해져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범죄관련재산으로서 몰수가 가능한 것이면 어떤 재산이든지 '대물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캐나다의 이러한 대물몰수제도는 당해재산이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이 없도록 입증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피고인 으로서는 도주의 유혹을 느끼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피고인이 캐나다에 소재하며 유죄판결을 받는 때에는 우월적 증거

35) 김구술, 「범죄수익몰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독립몰수의 도입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2014년 박사학위 청구논문, 129쪽

만으로도 재산이 범죄수익으로 인정되어 몰수될 수 있는 반면에(제462조의37제1항, 제490.1조제1항), 만약 도주를 하면 '합리적 의심을 넘는 정도'라는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므로 재산을 몰수당할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다³⁶⁾.

나. 민사몰수(Civil Forfeiture)

(1) 성격

캐나다의 주 민사몰수법은 원래 범죄를 저지하고, 범죄자가 취득한 부당이득(unjust enrichment)을 피해자에게 보상해주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오늘날 민사몰수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독점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않고, 형법에 대한 보충적 또는 대안적 방법이 되었다. 연방형법전의 대물몰수나 주(지방정부) 법전의 민사몰수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행위자에 대한 기소여부와 무관하게 범죄관련재산을 몰수하는 독립적 몰수절차인 NCB몰수(Non-Conviction Based asset forfeiture)의 일종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연방 형법전의 대물몰수는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범인이 기소되었을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NCB몰수의 가장 소극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2) 현황

캐나다의 각 지방정부들은 연방 형법전과는 별개로 민사몰수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2001년 온타리오 주(Ontario Province)가 처음으로 민사몰수제도를 도입한 민사구제법(Civil Remedies Act)을 제정·시행한 이후,

36) 김구술, 앞의 책, 130~131쪽

- 같은 해인 2001년에 알버타 주(Alberta)에서 피해자손해배상및보상 지급법(Victims Restitution and Compensation Payment Act),
- 계속하여 2004년 매니토바 주(Manitoba)에서 범죄재산몰수법(The Criminal Property Forfeiture Act),
- 2005년 브리티쉬 콜럼비아 주(British Columbia)에서 민사몰수법(Civil Forfeiture act),
- 2005년 사스캐처원 주(Saskatchewan)에서 범죄재산압수법(The Seizure of Criminal Property Act),
- 2007년 노바스코샤 주(Nova Scotia)에서 민사몰수법(Civil Forfeiture Act),
- 2007년 퀘벡 주(Quebec)에서 불법활동의수익금및수단의몰수·관리·세출에관한법(Act respecting the forfeiture, administration and appropriation of proceeds and instruments of unlawful activity),
- 2010년 브런스윅(Brunswick)에서 민사몰수법(Civil Forfeiture Act)

등 총 8개주에서 범죄수익의 관리, 범죄수익에 의한 범죄피해자 보상 등과 관련된 민사몰수 법규를 입법화함과 동시에 민사몰수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³⁷⁾.

(3) 내용

캐나다에서 민사몰수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한 것은 온타리오 주의 민사구제법(Civil Remedies Act, 2001)이다. 이 법 시행 당시 법무부

37) anadian constitution foundation, 「Civil Forfeiture in canada」, 2015-2016, 15쪽

장관이었던 데이비드 영(David Young)은 “이 법은 현대의 골칫거리에 대한 21세기식 해결책이다. 조직범죄와 여타 불법행위에 개입한 사람들은 불법수익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 오늘부터 불법행위로 인한 수익은 온타리오 주에서 안전한 피난처를 찾을 수 없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온타리오 주의 경우, 경찰 및 정부 각 기관의 의뢰에 따라 검사(crown prosecutor)는 당해사건이 민사구제법상의 민사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검사가 민사몰수대상 사건이라고 결정하면 그 사건정보를 민사구제사무소(civil remedies for illicit activities office, CRIA office)³⁸⁾에 이관하게 되고, 민사몰수청 소속 검사가 법무부장관을 대리하여 민사몰수 소송 절차를 수행한다. 브리티시 콜롬비아(British Columbia) 주의 경우도 민사몰수사무소(Civil Forfeiture office, CFO)를 두고 민사몰수법(Civil Forfeiture act)을 집행하고 있다³⁹⁾.

온타리오 주의 민사구제법이나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의 민사몰수법상의 몰수절차에서는 불법행위와 몰수대상 재산 사이의 관련성(nexus)이 인정되기만 하면 몰수가 가능하며,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나 기소 절차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불법행위란 당해 주 내에서 범한 연방 또는 주의 범죄를 구성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의미하며, 주 내에서 범해졌다면 범죄가 되는 캐나다의 다른 주 또는 다른 국가에서의 범죄를 구성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도 포함한다. 불법수익이란 불법행위의 직·간접적 결과로 획득한 재산상 이익(재산에 관한 권리, 소유권, 이익, 채권, 상속재산 등) 및 재산상 가치의 상승분 또는 채무의 감소분을 의미한다. 이때의 재산에는 부동산, 유형 또는 무형의 현금을 포함한 개인재산이 모두 포함된다.

38) CRIA에 대해서는 「제3장 제6절 압수자산 관리 기관」 편에서 자세히 설명되어지나, 순차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여기서는 간략히만 기관 소개를 하고자 한다. 경찰이나 검사와 같이 지정된 기관의 추천을 받아 설립된 온타리오 주정부에 있는 법무부 소속 부서 중 하나이다. CRIA는 주 법무부장관을 대신하여 법정 절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여 범죄수익의 몰수 명령을 받아 이를 집행한다. 2016년 기준으로 온타리오주 민사구제법에 따라 약 CAD 48.6만 달러가 특수 목적 계좌에 예치되었다. 불법 활동의 결과로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손실을 겪은 모든 개인 또는 다른 사람들은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https://www.ontario.ca/document/ontario-gazette-volume-149-issue-12-march-19-2016/ministry-attorney-general> 참고

39) 2006년부터 2017년 중반까지 CFO는 법집행기관으로부터 4,900건 이상의 과일을 추천받았고, 그 결과 CAD 7,300백만달러를 몰수하여, 그 중 3,100백만달러는 범죄예방 지원금 및 적격 피해자에 대한 보상의 형태로 사용되었다. <https://www2.gov.bc.ca/gov/content/safety/crime-prevention/civil-forfeiture-office> 참고

몰수절차는 원고의 청구와 소환장송달 등을 통해 개시된다. 민사 몰수를 위해서는 등록 또는 무등록의 재산 소유자들과 그 재산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들에 대한 통지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사건에 있어 민사몰수책임자는 몰수 대상 재산을 동결하기 위해 임시 보존명령(Interim Preservation Order)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몰수대상 재산에 대한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 없이 몰수대상 재산의 처분을 제한하거나 몰수 이전에 재산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재산 관리자 지정 등을 위하여 임시 보존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

민사몰수 재판에는 법원의 민사소송 규칙들이 적용된다. 법원은 불법행위와 재산 사이에 관련성이 우월적 증거에 의해 입증되면 필요적으로 몰수명령을 내려야 한다. 다만, 재산의 몰수가 형평의 이익(the interests of justice)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몰수명령을 내리지 않거나 몰수 명령신청을 제한하거나 몰수 명령에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⁴⁰⁾.

제3절 캐나다의 불법 범죄수익 추적 제도

1. 개관

캐나다 역시 한국을 포함하여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의 경우와 같이 불법 범죄수익을 효과적으로 찾기 위한 수단으로 불법 범죄수익 추적, 자산 추적 그리고 자금세탁⁴¹⁾ 수사이라 불리는 ‘자금추적 수사’ 방법을 널리 활용하고 있다.

캐나다 수사기관이 말하는 자금 추적⁴²⁾이란 실소유자로부터 그 재

40) 김구술, 앞의 책, 131~132쪽

41) 자금세탁을 최초로 정의한 UN의 ‘불법마약류 및 향정신성물질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Illicit Traffic in Narcotic Drugs and Psychologic Substances, ‘1988년 비엔나협약)’에 의하면 자금세탁은 “범죄행위로부터 발생한 자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1)당해 자산의 출처를 은닉하거나 위장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를 저지른 자들의 법적 책임을 면하도록 도울 목적으로 해당 자산을 전환 또는 양도하는 행위, (2)당해 자산의 성질·출처·소재·처분·이동·관리·소유권을 은닉하거나 가장하는 행위, (3) 당해 자산을 취득·소지·사용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로 정의된다.

42) 한국의 수사기관에서는 자금추적을 영문으로 ‘money tracking’, ‘asset tracing’ 등 다양하게 표기하고 있으나, 캐나다 경찰에서는 이를 두고 ‘source tracing of funds’라고 부른다. 이하에서 계속하여 기술하는 캐나다의 자금추적 및 범죄수익 환수 관련 실무 사항들은 필자가 직접 온타리오 주경찰청 소속 범죄수익환수닛(Provincial Asset Forfeiture Unit, PAFU)에서 연수를 통해 operation manager로 일하는 detective와 인터

산을 분리하거나 거리를 두게 할 목적으로 이를 변환(convert)시키거나 이동(transport)시키는 방법을 추적 조사하는 법적 행위를 의미한다.

자산은 범죄 수익으로서 실소유자를 식별하기 위해 추적되며, 궁극적으로 정당한 소유자인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해 추적되고 있다. 범죄수익금이 다른 지역 관할(jurisdiction)로 이전될 때, 실소유자들은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금융기관, 변호사⁴³⁾, 기업단체 등 여러 중개자들을 통하게 된다. 이때 최종적으로 범죄자 또는 피해자에게 그 소유가 이어지는 수익금을 찾기 위해서는 수익금이 이동하는 경로에 등장하는 중개자와의 관계를 철저히 분석하여, 자산 추적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자금세탁을 하였음을 입증할 증거를 찾아야 한다. 이러한 증거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통해 문서 조사, 증인 인터뷰, 배경 조사(background investigations), 컴퓨터 포렌직(computer forensic)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자금추적 수사가 어렵다고 범죄행위로 얻은 불법한 이익의 환수를 포기할 수 없기에 그 재산의 상당한 가액의 추징이 곤란할 때는 직접증거 또는 간접증거를 이용하여 '재산의 흔적(trail of assets)'을 밝혀내는 방법이 대안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예컨대, 크루이크생크(Cruikshank)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브리티시 콜럼비아(BC) 주 고등법원의 히슨 판사(Hickson J.A.)는 “마약거래로 획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태에서 스위스은행에 정기에금으로 예치되었다가 인출되어 캐나다 국내의 피고인의 회사로 되돌아온 자금을 범죄수익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판사의 재량에 속하는 문제”라고 언급하여 자금 추적 및 자금세탁 수사의 어려움으로 인한 수사기관의 입증부담을 덜어 주었다. 기록상으로는 캐나다로 되돌아온 문제의 자금이 피고인 부부의

류한 결과 확인한 것임을 밝힌다.

43) 캐나다에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캐나다는 3년간 로스쿨에서의 교육과 변호사협회(law society)에서의 변호사 자격 부여 과정의 2단계를 거쳐야 변호사 자격이 부여된다. 즉,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과대학 과정을 수료하는 것 이외에 변호사협회가 주관하는 1년 과정의 변호사협회 입학 프로그램(Law Society's Admission Program, LSAP)을 이수해야 하는데, 1년 과정의 위 프로그램은 ①9개월 로펌에서의 실무수습(articling), ②각 주별로 실시하는 실무연수(Professional Legal Training Course, PLTC), ③PLTC 등 실무연수에 기초한 2개의 자격시험을 포함하고 있다.

주식매입 및 부동산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부동산을 처분해 생긴 이윤을 스위스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주식을 팔아서 생긴 돈의 일부로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⁴⁴⁾.

2. 관련 법제 현황

가. 법적 근거

(1) 형법 및 특별법

범죄 수익과 관련된 행위의 기소 근거는 형법(Criminal Code)에 규정되어 있는데, 범죄수익과 관련된 행위는 주로 마약 범죄로 인한 돈과 재산과 관련이 있다.

형법

제354조 범죄로 얻은 재산의 소지(Possession of property obtained by crime)

(1) 누구나 어떤 재산이나 물건, 재산의 수익금이나 재산의 일부분 혹은 전부라고 알고 있는 물건, 직간접으로 입수되었거나 파생된 수익금을 자신이 소지(possession)하는 범죄를 범한다.

제355조 354조를 범한자의 처벌

(a) 범죄 대상의 가치가 CAD 5,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i) 기소가능 범죄(indictable offence)로 유죄이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구금될 수 있다.

(ii) 약식기소사건(summary conviction)에 대한 형벌도 유죄이다.

(b) 범죄가 CAD 5,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유죄

(i) 기소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거나,

(ii) 약식기소사건(summary conviction)에 대한 형벌도 유죄이다.

44) 조병인, 앞의 책, 138쪽

형법

제462조 제31항 범죄 수익의 세탁(Laundering of proceeds of crime)

- (1) 누구나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재산 또는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결과로서 직간접적으로 얻어지거나 파생되었는지 여부를 알거나, 믿거나, 또는 그 재산을 은닉하거나 가장하려는 의도가 있는 재산의 수익, 그 재산에서 파생된 재산을 사용하거나 소유의 전환, 다른 사람이나 장소에 송달 및 양도, 운송, 전송, 변경, 처분하는 범죄를 범한다.
- (2) (1)항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모든 사람은 기소가능 범죄(indictable offence)로 유죄이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구금될 수 있다. 또는 약식기소사건(summary conviction)에 대한 형벌도 유죄이다.

대부분 범죄수익과 관련된 범죄는 형법 규정에 의거해 기소되지만 그 이외에도 범죄 행위를 초래한 근본적인 범죄가 형사법 이외의 금지마약류 및 물질에 관한 법률(the Controlled Drugs and Substances Act) 등 연방법에 따라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위반되는 경우 이러한 위법 행위를 기소하고 있다.

금지마약류 및 물질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Definitions)

범죄 관련 재산(offence-related property)이란 규제 대상 물질을 제외한 캐나다 내외의 모든 재산

- (a) 지정 물질 범죄(designated substance offence)가 저질러지는데 사용된 경우
- (b) 지정 물질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어떤 방식으로든 사용된 경우
- (c) 지정된 물질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

제4조 물질의 소지(Possession of substance)

- (1) 규정에 의해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도 마약류 등 물질을 소유할 수 없다.
- (2) 누구도 마약류 등 물질을 찾거나 구할 수 없다.

제7.1조 물질의 생산 또는 밀거래에 사용하기 위한 소유, 판매등(Possession, sale, etc., for use in production of or trafficking in substance)

(1) 어느 누구도 사용할 목적으로 소유, 생산, 판매, 수입 또는 운송할 수 없다.

(2) 범죄수익(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법[Proceeds of Crime(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Act, PCMLTFA]

이 법의 제정 목적은 자금세탁 및 테러 활동의 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①자금세탁 또는 테러 활동의 자금 조달에 사용될 수 있는 활동에 종사하는 금융 서비스 제공 업체 및 개인·단체 등에 대한 고객 식별 정보 등 기록 보관, ②의심스러운 금융 거래 보고, ③통화 및 통화 수단의 국경간 이동에 대한 보고 등을 요구할 수 있는 특별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하는데 있다.

또한, 법 집행 공무원에게 범죄 행위의 수익금을 범죄자로부터 박탈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자금세탁범죄 및 테러활동 자금 조달 범죄의 조사 및 기소를 통해 조직범죄로 인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 수단을 마련하면서 테러와 같은 초국가적 범죄와의 전쟁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규범의 이행을 지원하고, 자국의 금융 시스템이 자금세탁 및 테러 활동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위험을 완화하려는 캐나다의 노력을 촉진시키고 있다.

이를 위해 PCMLTFA 제3장에 의해 캐나다의 금융거래및보고서 분석센터(Financial Transactions and Reports Analysis Centre of Canada, FinTRAC)이 설립되었다. 여기서는 자금세탁 및 테러 활동 자

금 조달의 탐지, 예방 및 억제를 돕기 위해 의심스러운 자금 거래 정보 등을 수집, 분석, 평가 및 공개한다.

나. FATF 권고안 이행

(1) 자국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에 적극 대응

2016년 9월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는 캐나다의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방지 자금 조달 제도에 대한 평가⁴⁵⁾를 발표했다. FATF는 1986년 회원국들이 설립한 정부간 국제기구로, 자금세탁, 테러 자금 조달 및 기타 국제 금융 시스템의 무결성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표준을 설정하고, 법률, 규제 및 상호 협력 조치의 효과적인 이행 촉진을 목표로 한다. 전반적으로 이 FATF 평가 보고서는 캐나다가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과 싸우기 위한 강력한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조사 기관이 크고 복잡한 재무 조사를 수행 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FATF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자 캐나다는 연방과 지방 정부가 모두 적극적으로 AML/CFT 제도를 구축 시행하고 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의 경우, 2018년 3월 RCMP 부국장인 피터 저만(Peter German)은 '로워 메인랜드(Lower Mainland)' 카지노에서 자금 세탁 혐의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7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의 리버 락 카지노(River Rock casino)에서 약 20 달러 지폐로 약 1,350만 달러가 자금세탁된 것으로 회계감사 결과 확인되었다. 보고서에는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의 도박 산업에서 자금세탁과 관련된 정책 및 관행을 검토할 때 발견된 문제를 대상으로 하는 48개의 권장안이 기재되어 있다.

45) FATF 국제기준은 각국이 자국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확인·평가·이해하고, 정책을 통해 위험을 효과적으로 경감시킬 것을 요구하는데, 이를 위해 각국은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National money laundering & terrorist financing Risk Assessment, NRA)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금융정보 분석원장, 법무부, 외교부, 금융위,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국정원 등 12개 기관의 국장급으로 구성된 AML/CFT 정책협의회를 통해 NRA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2018년 11월 하원 재무위원회 상무위원회는 ‘범죄수익(자금 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현황을 검토하고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에 직면 : 캐나다 앞으로 나아가기(Confronting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Moving Canada Forward)’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의 32개 권고사항 중 하나로서, 위원회는 “[...] [캐나다 정부가]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활동을 추구하기 위해 법 집행 및 검사에게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것(권고 20 참조)”을 권고했다.

그 결과, FATF 보고서와 캐나다 하원 재무위원회의 보고서에 의해 제기된 다양한 우려와 권고에 대응하기 위해 캐나다 재무부 소속에 실무 그룹이 구성되었다. 이 실무 그룹은 궁극적으로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방지 금융(AML/ATF) 차관위원회에 보고한다⁴⁶⁾.

(2) ‘가상화폐 규제’ 등 국제사회 선도

최근 FATF가 가상화폐 최종 규제 가이드라인 권고안⁴⁷⁾을 발표함에 따라 각국은 그 대응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가 다른 나라보다 제일 먼저 AML 규제안을 발표하여 조만간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캐나다가 FATF 국제 권고안을 얼마나 성실히 이행하려고 노력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다.

캐나다가 발표한 규제 내용은 캐나다 연방기관인 FinTRAC에 가상화폐 업체 등록 및 신고, 준법감시인 고용, 고객인증제도(KYC) 이행 등을 해야 한다고 ‘범죄수익(자금세탁)및테러자금조달법(the Proceeds of Crime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Act)’에 관련 법규정을 개정한다는 것으로 2020년 6월 1일자로 발효할 예정이다.

46) <https://www.ppsc-sppc.gc.ca/eng/tra/tr/17.html> 참고

47) 2019년 6월 FATF는 가상자산(암호화 자산)의 범죄, 테러 악용 위험은 ‘중대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하면서 36개 회원국에 가상화폐 최종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FATF 최종 권고안에 따르면, 「국가는 “자금을 보내는 가상화폐 취급업체가 정확한 송금인 요구 정보와 수취인 요구 정보를 획득·보관하고 이를 수취기관에 제공하는지”, 그리고 “수취기관이 송금인 요구 정보(일부)와 정확한 수취인 요구 정보를 획득·보관하는지”를 분명히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금 송금시, 취급업체가 확인·보관해야 하는 고객 정보는 ①송금인 성명, ②거래 처리에 사용된 송금 계좌번호(예, 가상화폐 지갑), ③송금인 주소 또는 국가등록 신분번호 또는 신원 식별이 가능한 처리업체 등록 고객번호, 또는 출생연도, 출생지, ④수취자 성명, ⑤거래 처리에 사용된 수취계좌번호(예, 가상화폐 지갑) 등」이다.

이번 규제안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비롯해 디지털 플랫폼, 지갑 업체, 가상화폐공개(ICO) 업체, 유틸리티 및 게임 토큰, 비트코인, ATM 등 캐나다 가상화폐 업계 전반에 적용될 예정이다.

2019년 7월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 정부가 보고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 발생한 자금세탁 규모는 CAD 56억 달러(한화 약 6조 6,0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BC주의 이번 규제안 발표는 가상화폐 업계 규제보다는 자금세탁방지 단속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FATF 권고안 발표 후 규제안을 내놓은 것은 캐나다가 처음이기에 향후 다른 나라 규제당국이 벤치마킹하는 사례가 될 수 있고, 특히 가상화폐 관련한 범죄가 기승을 벌이고 있는 우리나라에⁴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⁴⁹⁾.

48) 한국에서는 2018년경 가상화폐 거래실명제도를 시행하여 실명확인을 거친 계좌만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지 못하면 원화로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은행은 FATF가 제시한 자금세탁방지(AML), 고객신원확인(Customer Due Diligence, CDD) 등 가이드라인에 따라 거래소의 보안성을 실사하고 있는데, 2020년 2월 현재 국내의 주요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은 시중은행과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 재계약을 완료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가상화폐의 불법 거래 방지 노력에도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의 가격 급등에 편승하여, 투자자들에게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수백배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여 이를 편취하는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49) the bchain, 「자금세탁방지 글로벌 대응 본격화...캐나다 규제안 발표」, 2019. 7. 11.

(<https://www.thebch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36> 참고)

제3장 캐나다의 범죄수익 추적 및 환수 담당 기관

제1절 개요

캐나다는 범죄수익 관련 정보의 수집, 자금세탁 수사, 불법 재산의 몰수, 몰수된 자산의 관리·처분 등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일련의 업무가 그 단계별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에 의해 독자적으로, 때론 상호협력적으로 수행되어 지고 있다.

즉, 범죄수익 환수 수사를 위해 경찰은 FinTRAC에서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를 받거나, 또는 경찰이 자체 인지 수사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수사를 개시하고, 검찰은 이를 기소하며, 법원에서 심리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후 법원에 의해 몰수 결정된 자산은 연방과 각 주별로 설치되어 있는 압수자산관리부서에서 보관·처분되어 진다.

이렇게 캐나다의 경우 범죄수익 환수 업무가 단계별로 세분화되어 각자의 기관에서 그 임무를 수행하는데, 특히 우리나라와 형사 법제사 못 다른 캐나다의 경우 경찰, 검찰로 대표되어지는 법집행기관들의 역할과 지위⁵⁰⁾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범죄수익 환수가 이루어지는 제반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기는 힘들다 할 것이다.

이에 아래에서는 캐나다 사법 시스템 전반에 걸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경찰, 검찰에 대해 살펴보고, 자금세탁 관련 금융거래 정보를 수집하여 법집행기관에 이를 제공하는 FinTRAC, 압류·몰수된 자산을 관리하는 압수자산관리국 등 각 기관들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50) 「경찰은 법에 의해 검찰총장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위험한 범죄자(Dangerous Offender, DO) 또는 장기 범죄자(long-term offender, 재범의 상당한 위험이 있는 유죄판결을 받은 자) 적용에 착수되는 경우, 2백만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프로젝트의 준비 등]를 제외하고 형사 범죄 수사 및 형사 고발에 대한 단독 책임과 재량을 가진다. 검찰은 형사소송 진행 여부 결정을 포함하여 형사범죄의 기소에 대한 단독 책임과 재량을 갖는다. 경찰과 검사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하지만, 조사 서비스와 기소 서비스는 협력과 상호 의존의 관계에 있다.」

<https://www.ontario.ca/document/crown-prosecution-manual> 캐나다 온타리오주 정부 홈페이지_검사 매뉴얼(crown prosecution manual) 참고

제2절 경찰

캐나다는 연방 전체를 관할하는 연방경찰, 독립된 주권을 가지고 있는 각 주별 경찰, 그리고 광대한 영토와 재정적 제약 등으로 인해 연방과 각 주 사이에 맺은 계약으로 연방경찰이 각 주에 경찰력을 제공하는 ‘계약경찰’이라는 독특한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캐나다 경찰의 조직은 크게 4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연방경찰(RCMP)

왕립 캐나다 기마 경찰(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RCMP⁵¹)은 캐나다 연방정부 부서인 공공안전부(public safety of canada) 소속으로 1873년 9월에 창립된 연방 경찰로 그 조직 규모는 약 2만 5천명에 달한다.

RCMP는 범죄 예방 및 조사/수사, 평화와 질서 유지, 법의 집행, 국가안보, 해외 주재원 및 공무원의 안전 보장, 캐나다 국내외에 있는 타 경찰 및 법집행기관의 운영을 지원해주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주요 담당 업무로는 국경 수비(border integrity), 마약 및 조직범죄(drugs and organized crime) 등 치안업무는 물론, 연방 시설물 관리, 총독·수상·연방 대법관 등 주요 인사 경호업무와 국제 경찰 업무(international policing)까지 광범위한 연방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준주의 하위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맺고 주/준주 및 하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찰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도 한다.

위와 같이, RCMP는 연방정부와 외국에서의 부패행위에 대해 조사·수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외국공무원부패방지법(Corruption of

51) RCMP는 paramilitary background(준 군대) 배경을 가진 경찰이기에 군대와 유사한 훈련과정을 거치게 되고, 일반 주/시 경찰의 훈련기간이 3개월 정도에 인데 반해, RCMP는 6개월 동안의 훈련소 생활을 통해 학과 수업, 사격수업, 운전수업, 방어훈련, 체력훈련, 제식훈련 등의 다양한 연습훈련을 하여야 한다. 채용방식은 18세 이상 캐나다 시민권자로 필기시험(RPAB)과 체력테스트(RMSI)를 거쳐 적성검사, 심층인터뷰, 거짓말탐지기 테스트를 통과한 후 범죄경력 등 개인정보 조사과정과 신체검사를 거쳐 선발한다. 임관 후 초봉은 4만9천불로, 일반적으로 3년 이상 근무시 연봉은 8만불 수준이다.

Foreign Public Officials Act, CFPOA)’에 따라 캐나다 국민이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등의 부패행위에 대한 수사 및 기소에 관하여 독점적 관할권을 RCMP에 부여하고 있다.

RCMP는 전국에서 발생한 모든 외국공무원부패방지법위반 사건을 추적 수사하면서, 외국 공무원의 뇌물 수수를 용이하게 하거나, 숨기기 위해 장부와 기록을 보관·폐기하는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⁵²⁾.

2. 주립경찰(provincial police)

캐나다 전체 10개주, 3개의 준주 중에서 온타리오주와 퀘벡주를 제외하고,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를 포함해 캐나다 8개의 주와 3개의 준주에는 연방과 독립된 주경찰이 없다. 이들 주/준주는 연방경찰인 RCMP와 계약을 맺어 주 경찰권을 위임하고 있다⁵³⁾.

온타리오 주 경찰(Ontario Provincial Police, OPP)은 온타리오 주 북서부 개척지와 광산도시개발에 대한 책임을 맡으면서 1909년 창설되었고, 1990년에 제정된 경찰서비스법(police services act)에 따라 온타리오주의 모든 경찰 부대의 역할을 정의하고, 특별조사부서(special investigations unit)을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받고 있다.

OPP는 2018년에 사기·부패·경제 등을 담당하는 금융범죄 전문 수사부서(Serious Fraud Office, SFO⁵⁴⁾)를 신설하고, 자산몰수부서

52) 2018년 12월 17일 퀘벡 고등법원은 맥길대학교 보건센터(McGill University Health Centre)의 전임 수석 매니저 A에 대해 외국공무원부패방지법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피고인 A은 몬트리올에 새로운 병원 시설을 건설하고 유지하기 위해 13억 달러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천만 달러를 뇌물로 수수하였다. 캐나다에서는 위 판결에 대해 “캐나다 역사상 가장 중대한 부패 유죄 판결 중 하나이며, 캐나다의 부패방지법에 대한 커다란 진전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렇듯 캐나다는 국내 뇌물 수수 방지와 외국 공무원에 대한 부패방지법의 집행을 강화하고 있다.

53) 위임계약에 따라 RCMP가 특정 지역에서 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지역과건 근무(general duty)라고 하는데, RCMP 경찰관의 경우 훈련소를 졸업하고 4~5년간은 본부에서 지정해주는 곳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54) SFO는 온타리오 시민을 심각한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수사하고, 사기로 얻은 자산을 복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OPP 소속 경찰관과 온타리오주에 있는 시립경찰, 온타리오주 법무부 소속 검사(crown attorneys)로 구성된다.

(Provincial Asset Forfeiture Unit, PAFU)팀을 운영하는 등 전문 수사 영역으로 그 규모가 확장되어 현재는 북미대륙에서 RCMP와 같은 가장 큰 경찰조직 중의 하나이다.

퀘벡 주 경찰(quebec provincial police)은 1870년에 창설된 퀘벡 전역을 관할하고 다양한 명령을 수행하는 유일한 퀘벡 경찰 조직이자 캐나다 최초의 주 경찰이다. RCMP나 OPP와는 달리 퀘벡 주 정부의 기관으로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특징으로 범죄 예방, 경제·조직 범죄의 수사, 테러와의 전쟁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 시립경찰(civil police)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교통관리는 물론 범죄예방과 신고출동, 범죄 수사와 집회시위관리 등 경비업무까지 수행하는 독립적인 지방자치경찰(independent municipal police)을 인정하고 있는데, 주경찰과 시립경찰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피하면서 법률에 의한 치안 유지, 범죄 및 법률위반 행위 방지, 사법절차 준수 등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RCMP, OPP를 이어 캐나다에서 세 번째로 큰 경찰 조직으로 토론 토경찰청(toronto police service)이 대표적인 예이다. 1834년에 북미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시립 경찰 서비스로, 2017년 기준 약 7,500여명의 경찰관이 마약·금융범죄·성범죄·조직범죄 등 수사, 치안 유지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4. 준 경찰 조직

주/시 이외 작은 타운에는 sheriff나 peace officer와 같은 준 경찰 조직도 존재한다. 하지만, 재정적·인적 문제로 경찰을 따로 둘 수 없는 밴프(banff), 캔모어(canmore), 에어드리(airdrie), 스트라스모어(strathmore) 등과 같은 소도시들은 RCMP 연방경찰과 계약을 맺고 RCMP가 대신 경찰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제3절 검찰

1. 연방검찰

캐나다는 2006년 11월까지의 법무부(Minister of Justice) 산하에 '연방검찰청(Federal Prosecution Service, FPS)'을 두어 연방검찰의 권한을 행사하였다. 그러던 중 2006년 12월 발효된 '검찰청장법(Direct of Public Prosecution Act)'에 따라 법무부로부터 독립한 공공기소청(the Public Prosecution Service of Canada, PPSC)이 신설되었다.

PPSC는 RCMP, 다른 연방 수사 기관, 주/시 경찰이 수사한 캐나다 전역에서 발생하는 범죄수익의 소지와 자금세탁 행위 등을 포함한 각종 연방범죄를 기소하고 법집행에 대한 법률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PPSC는 2018년 기준으로 검사 등 약 1,040명의 직원이 있고, 캐나다 전역에 걸쳐 지역 사무소(Regional Office)가 있으며, 일부 PPSC 소속 검사는 통합집행팀(integrated enforcement teams)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PPSC는 직접 조사를 직접할 권한은 없지만, 수사 단계에서 기소 가능성에 대한 법률 조언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마약 수사 사건은 PPSC가 담당하는 기소 사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PPSC는 퀘벡과 뉴브런즈윅 주를 제외한 연방, 주 또는 지방 경찰기관이 혐의를 제기하는지에 관계없이 금지마약류 및 물질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든 마약 범죄를 기소할 책임이 있다. 다만, 퀘벡과 뉴브런즈윅 2개의 지방의 경우 PPSC는 RCMP가 조사한 마약범죄만 기소한다. 그리고, PPSC는 특정영토법령, 북서 영토(Northwest Territories), 누나부트(Nunavut)를 대표하여 형법과 다른 연방 법률 위반 사건을 기소한다. 또한 지방과의 합의에 따라 PPSC는 피고인이 연방 관할권 내에서 더 심각한 혐의를 저지를 경우 주정부 관할권 내에 있는 형법 위반 사건을 기소할 수 있다⁵⁵).

아울러, 범죄 및 자금세탁 사건의 절차에서 중요한 관심사가 발생하는 경우, 검찰청장법(the 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 Act) 제13조에 따라 브리핑 노트(briefing notes)가 작성된다.

검찰청장법

제13조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에게 검찰총장이 일반 관심사에 대한 중요한 의문을 제기하는 기소, 중재 행위에 대해 적시에 알려야 한다.

2. 주립검찰

한편, 캐나다는 독립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는 각 주(Province)들이 연합하여 연방을 이루고 있는 나라로, 대부분의 각 주정부들은 지방정부조직으로 법무부를 두고 있다.

대체로 법무부장관은 지방 정부의 법무부장관 역할과 크라운(crown)의 최고 법률 책임자로서 검찰총장의 지위를 함께 겸하며, 법무부 산하에 검찰부서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온타리오주의 경우 검사(crown)는 법무부 산하에 있는 형사법과(criminal law division)에 속한다⁵⁶⁾. 형사법과에서는 온타리오주에서 벌어진 고속도로교통법, 주류면허법과 같은 주 법령위반 사건 뿐만 아니라 형법, 청소년형사사법과 같은 기타 연방 법령 위반 사건에 대한 기소를 담당한다. 또한 캐나다 연방 대법원과 항소법원에서 크라운을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경찰·형사사법제도의 기타 이해관계자들에게 형사법 분야에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경찰이 신청하는 수색영장(search warrants) 및 도청(wiretaps) 서면 검토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55) <https://www.ppsc-sppc.gc.ca/eng/bas/index.html> (캐나다 연방검찰청 홈페이지) 참고

56)

https://www.ontario.ca/document/crown-prosecution-manual?_ga=2.251973889.909117587.1580692706-1260388943.1579644930 (캐나다 온타리오주 정부 홈페이지) 참고

주 소속 검사(crown)은 범죄조직과 테러그룹의 재산을 보전(restraint)·관리(management)·몰수(forfeiture)하는데 있어 경찰의 각종 법원에의 명령(order) 신청시 그 문서를 직접 검토하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OPP의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자산몰수부서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자산몰수부서 사무실 바로 옆 호실에 검사(crown)가 상주하면서 자산몰수부서에서 신청되는 특별수색영장, 보전명령 등 각종 신청서류를 전달하여 검토하고 있다.

제4절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전달 수사기관

연방 차원에서 RCMP 소속으로 경찰, 국세청, 압류자산관리국, 국경서비스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 검사 등으로 구성된 범죄수익환수부(proceeds of crime branch)가 활동하고 있고, 주 경찰청 산하에 자산몰수부서(Provincial Asset Forfeiture Unit)를 각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경찰서에도 자산몰수섹션(asset forfeiture section)이 있어, 연방과 지역이 서로 긴밀한 네트워크 하에 범죄수익 환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연방 차원의 범죄수익환수부(proceeds of crime branch)

RCMP는 주로 형법에 근거해 범죄의 수익금(Proceeds of Crime) 및 지정 범죄행위에 사용된 재산(Offence-related property)을 범죄자로부터 압수(seizure) 및 보전(restraint) 등의 방법으로 박탈하기 위한 각종의 노력을 하고 있다. 더불어 자금세탁(money laundering) 및 테러자금조달, 통제 약물 및 물질 법 등과 같은 다른 연방 법령들에 의거해 자금세탁 범죄를 수사하고, 조직범죄의 수익 몰수를 담당한다.

이를 위해 RCMP는 자체에 범죄수익환수부(proceeds of crime branch, POC branch)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POC branch는 19개의 범죄수익환수 유닛(proceeds of crime units)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약 256명의 직원 및 지원인력이 근무 중이다.

RCMP의 POC(proceeds of crime) 프로그램은 적극적으로 형법 범죄에 의해 자금세탁된 돈에 관한 조사를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보고되지 않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조직범죄 가담 인물에 대한 재무 정보를 확보하는데, 이 과정에서 자금세탁 조사에 대한 국제 협력은 물론 외국 및 국내 경찰 기관과의 조사 지원 피드백을 수행한다.

POC 프로그램의 대부분 섹션은 통합범죄수익(Integrated Proceeds Of Crime, IPOC) 단위의 일부로 작동하며 다양한 전문가 그룹의 기술, 지식 및 능력이 결합된다. 위의 19개 범죄수익환수유닛(proceeds of crime units) 중 12개 유닛에는 연방/지역 경찰인력을 포함하여 캐나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 CRA), 포렌직 회계사(forensic accountants), 압류자산관리국(Canada's Seized Property Management Directorate, SPMD) 직원, 캐나다 국경서비스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의 세관원, 그리고 PPSC 소속 검사⁵⁷⁾ 등이 포함된다⁵⁸⁾.

또한, 밴쿠버, 켈거리, 토론토, 오타와, 몬트리올에 위치한 5개의 자금세탁팀(Money Laundering teams)에도 POC branch 소속 직원 43명이 근무 중이다. POC branch는 2000년 이후 범죄수익금으로 약 243백만 달러 이상을 압류했다.

2. 주(지방) 자산몰수부서(Provincial Asset Forfeiture Unit)

온타리오 주를 포함하여 각 주 정부의 경찰청은 산하에 '주(지방) 자산몰수부서(Provincial Asset Forfeiture Unit)⁵⁹⁾'를 운영하고 있다. 주(지방) 자산몰수부서는 주 정부의 경찰청을 포함하여 지역 경찰서의 경찰관 등으로 구성되는데, 자금세탁, 테러 자금 조달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조사 전문지식과 훈련을 제공하는 한편, 범죄와 관련된 재산의

57) 검사는 ①조직범죄 수사와 관련한 법적 조인, ②범죄수익과 관련하여 경찰이 작성한 특별수색영장(special search warrant) 및 보전명령(restraint order) 청구 서류 검토, ③법원에 직접 출석(attend at court), ④위 영장이나 명령의 발부 과정에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 손해에 대한 검찰총장의 보증(undertaking)을 위해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일 등이다.

58) <http://www.rcmp-grc.gc.ca/poc-pdc/index-eng.htm> 참고

59) <https://www.publicsafety.gc.ca/cnt/cntrng-crm/plcng/cnmcps-plcng/ndx/snpss-en.aspx?n=74> 참고

식별, 압류, 구속을 포함하여 형법전에 명시된 지정된 위법행위(지정범죄)로 인해 취득한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일을 지원한다.

캐나다에서 연방경찰(RCMP) 다음으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 온타리오주경찰청(OPP) 산하에 설치된 자산몰수부서의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정식명칭은 주(지방) 자산몰수유닛(Provincial Asset Forfeiture Unit)으로, 간단히 PAFU라 부르고 있다. 직제상 OPP 산하에 있는 조직범죄부(Organized Crime Enforcement Bureau, OCEB)의 유닛 중 한 곳⁶⁰⁾이다. PAFU는 광역토론토(Great Toronto Area, GTA), 오타와(Ottawa), 런던(London), 노스베이(North bay), 썬더베이(Thunder bay) 등 권역별로 사무실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또한, OPP 멤버와 연방(PCMP)/지방 법 집행기관 소속 수사관들을 파트너로 구성하여 합동 프로젝트(Joint Forces Operations, JFO)를 수행하고 있다.

PAFU의 역할은 범죄 관련 재산의 식별, 압류, 지정범죄와 관련된 재산 및 범죄수익의 보전과 몰수를 지원하고 있는데, 권역별 각 사무실별로 수사가 진행중인 프로젝트(project)는 대략 4~5건 상당이다⁶¹⁾. 캐나다는 2018년 세계에서 2번째로 모든 마리화나의 법적 판매가 허용된 나라로, 캐나다에서 재배된 마리화나의 대다수가 미국으로 수출되

60) OCEB는 PAFU 이외에도 8개의 전문화된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①주(지방)조직범죄집행팀(Provincial Organized Crime Enforcement Team, POCET), ②주(지방)무기집행유닛(Provincial Weapons Enforcement Unit, PWEU), ③폭주족집행유닛(Biker Enforcement Unit, BEU), ④약물집행유닛(Drug Enforcement Unit, DEU), ⑤신원범죄유닛(Identity Crimes Unit, ICU), ⑥주(지방)자동차도난팀(Provincial Auto Theft Team, PATT), ⑦불법도박유닛(Illegal Gambling Unit, IGU), ⑧재범가석방집행(Repeat Offenders Parole Enforcement, ROPE)

61) PAFU의 년도별 조사/몰수 통계 수치(단, 달러 금액은 자산가치의 추정치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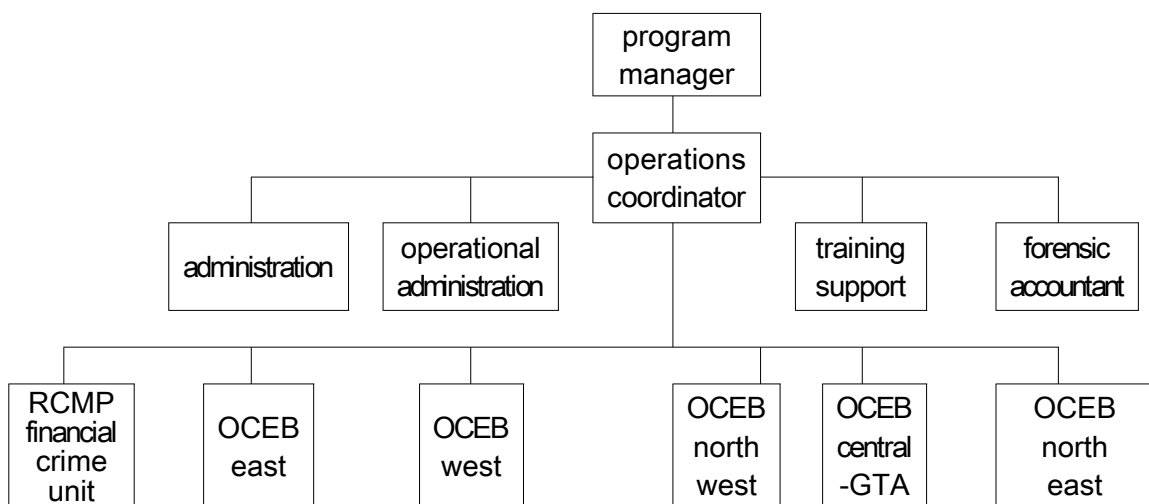
	조사건수	압류/보전금액	몰수금액
2006년	355	\$ 25.5m	\$ 5.5m
2007년	599	\$ 37.5m	\$ 4.3m
2008년	705	\$ 31.7m	\$ 6.4m
2009년	648	\$ 44.4m	\$ 5.3m
2010년	498	\$ 29.6m	\$ 9.6m

<https://www.newswire.ca/news-releases/police-charge-12-and-restrain-numerous-assets-545808002.html> 참고 (cision, 「police charge 12 and restrain numerous assets」, 2010. 10. 14.)

고, 그 대가로 범죄조직을 지원하기 위해 코카인, 현금 또는 총으로 다시 캐나다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주(지방)정부는 이러한 조직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는데, 범죄를 유발하는 재산을 박탈하는 것이 범죄 활동을 억제하는 최선의 방법임을 알고 있기에 PAFU의 활동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해 온타리오주 법무부는 소속 검사를 PAFU 사무실 바로 옆에 상주시켜 PAFU에서 법원에 청구하는 각종 특별수색영장(special search warrant), 보전명령(restraint order), 관리명령(management order), 제출명령(production order) 등을 전담하여 검토하고 있다. 최근 PAFU에서 진행한 전통적인 마약·조직범죄인 프로젝트 신디카도(Project syndic Kado)의 수사 결과 CAD 약 3,500만달러 상당의 범죄수익을 압류하는 성과를 올렸다.

PAFU 수사관은 2020년 1월 기준 전체 약 70여명으로 OPP 소속 전체 약 1만여명의 직원들 중에서 공모를 통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선발된 후 교육 지원부서(training support)를 통해 자산몰수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 현장에 투입되어 각종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자산몰수를 위해서는 자금추적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기에 자금·회계분석을 전담하는 회계전문가(forensic accountant)를 두고 있다.

[표 3] PAFU 조직 구성



PAFU에서 수사한 사건 중 유죄판결을 받을 수 없어 몰수에 이르지 못하는 사안은 온타리오주의 민사구제법(Civil Remedies Act⁶²)에 따라 민사구제사무소(CRIA)에 사건파일을 인계하여 민사몰수제도를 통해 범죄수익을 보전·몰수하고 있다.

3. 지역 경찰서의 자산몰수섹션(asset forfeiture section)

주에 있는 각 지역 경찰서에서는 금융범죄를 전담하는 부서를 별도로 배치하고 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경찰서(Toronto Police Service)의 경우도 금융범죄유닛(Financial Crimes Unit)을 운영하고 있는데, 소속 부서로 사기·기업범죄·조직범죄 섹션(section)을 포함하여 자산몰수를 담당하는 섹션⁶³이 있다.

자산몰수섹션에서는 범죄행위를 통해 개인이 획득한 자산을 식별하고 해당 자산의 보전, 압류, 몰수를 담당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①자금세탁 수사와 범죄수익의 동결을 책임지고 있고, ② FinTRAC(Financial Transactions and Reports Analysis Center of Canada)에서 제공하는 모든 금융정보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으며, ③범죄수익 및 자금세탁 수사를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법집행기관 및 정부기관, 금융기관 및 기타 전문 자원 영역과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공조수사를 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범죄섹션(corporate crimes section)은 주식시장 및 증권 위반, 부동산 금융 범죄, 보험 및 투자금융범죄,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 금융범죄와 관련된 각종 경제 금융범죄에 대한 다국적 조사를 수행하고 있고, 조직범죄섹션(organized crime section)에서는 ①결제카드, 통화, 수표 및 기타 귀중한 수단의 제조, 위조 및 배포와 관련된 조직범죄 또는 여러 관할 구역 사기에 대한 조사의 시작

62) 민사구제법에 따르면 민사법원이 검사(crown)에 의해 범죄수익 또는 불법 활동의 도구인 돈을 동결, 압류 또는 몰수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예를 들어 마약 재배 작업으로 사용된 주택과 같이 불법 활동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과 현금을 포함한다.

63) <https://www.torontopolice.on.ca/financialcrimes/> 참고

또는 조정을 담당하고, ②다양한 현금 또는 금, 선불 수수료 대출, 수표 현금 지급 체계 및 광역토론토(GTA) 경계 내에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유사사기범죄를 포함한 조직화된 사기 마케팅 그룹과 관련된 주요 사기 조사, ③이러한 광범위한 조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금융범죄부서는 온타리오 주 지방 경찰청, 캐나다 사기 방지 센터(Canadian Anti-Fraud Centre, CAFC)⁶⁴ 등 여러 기관과 공조 수사를 하고 있다.

제5절 FinTRAC⁶⁵)

1. 개요

캐나다는 9·11 미국대폭발테러사건 이후 개정한 범죄수익 및 테러자금조달법[Proceeds of Crime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Act]에 따라, 2000년 7월 자국의 금융 시스템의 보호라는 대명제하에 전문 자금세탁 행위 및 자금세탁 조직의 활동과 관련한 의심스러운 거래 등을 식별하고 보고하기 위한 전문 기관으로 FinTRAC(Financial Transactions and Reports Analysis Centre of Canada)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FinTRAC은 에그몽 그룹(Egmont Group)⁶⁶의 회원으로, FATF,

64) CAFC는 텔레마케팅사기(Telemarketing scams), 로맨스사기(Romance Scams), 서부 아프리카 이메일 금융/무역 사기(Nigerian/West-African Business letter scam), 신분 도용(Identity Theft)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사기범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법집행기관에 이를 제공하는 캐나다의 중앙기관이다. 캐나다는 1993년 온타리오주에서 시작된 텔레마케팅 사건인 ‘프로젝트 전화버스터(Project PhoneBusters)’를 계기로 사기 범죄에 적극 대응할 필요성을 일찍 인지하였고, 사기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6년 캐나다의 중앙기관으로 캐나다중앙사기저장소(Phonebusters National Call Center)를 발족시켰고, 이후 2010년 그 이름을 현재의 CAFC로 변경하였다. CAFC는 캐나다 경쟁국(Competition Bureau Canada)과 RCMP, 그리고 OPP와 함께 사기범죄 대응 합동 관리팀(Joint Management Team, JMT)으로 운영하고 있고, 오늘날 CAFC는 국가차원에서 사기 범죄에 적극 대응하는 모범사례로 손꼽히며 많은 국가에서 중앙사기데이터저장소(centralized fraud data repositories)를 구축하는데 많은 동기부여를 하고 있다. CAFC는 캐나다 전역으로부터 매년 약 15만건 이상의 사기 피해 전화를 받고, 매일 약 1,200여개의 이메일을 받고 이를 법집행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65) <https://www.FinTRAC-canafe.gc.ca/publications/ar/2018/1-eng> 참고

66) 에그몽그룹(Egmont Group of Financial Intelligence Units)은 1995년 6월 각국 FIU간 상호주의에 의거하여 의심스럽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금융활동에 대한 금융거래정보(Financial Intelligence)를 수집분석하여 이를 회원국간에 교환 활성화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정보분석기구(FIU, Financial Intelligence Unit)간의 비공식 협의체로 출범하였다. 이후, 1997년 총회에서 공식 국제기구로 전환하고, 캐나다 토론토에 사무국을 두고, 2020년 현재 전세계 164개국의 FIU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한국은 2002년 6월 회원국으로 가입하

APG(Asia-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⁶⁷⁾ 등 다자간 포럼에도 참여하고 있다. 본사는 오타와에 있으며, 몬트리올, 토론토, 밴쿠버에도 지역 사무소를 두고 있다.

2. 역할

FinTRAC은 수만개의 은행, 신용조합, 대부회사, 보증금을 받는 정부기관 등의 금융기관(financial entity)과 생명보험사, 증권사, 카지노 등에서 발생하는 화폐 거래를 모니터링하여 자금세탁 및 테러 활동 자금 조달의 추세와 패턴을 밝히는 다양한 정보 소스의 데이터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불법 활동을 식별·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FinTRAC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금융거래보고서 및 정보를 수신하여 캐나다의 보안 정보를 위협하는 테러자금조달과 자금세탁 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재무 정보를 캐나다 경찰, 법집행기관 및 국가 보안 기관에 제공한다. 더불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에 노출되는 위협에 대응하는 정책 결정권자, 비즈니스 및 국제 협력자 등을 위해 특수 연구보고서 및 동향 분석을 포함한 각종 중요한 전략적 재무 정보를 생성한다.

FinTRAC의 2017-2018년 연간보고서(annual report)에 따르면 경찰, 법집행기관 및 국가보안기관에 2,466개의 금융정보를 공개하였다. 이중 자금세탁⁶⁸⁾ 관련한 정보 공개는 1,821건이었고, 테러자금조달과 관련된 것은 447건, 캐나다 안보 위협에 관련된 정보는 198건이었다. 자금세탁과 관련해서는 공개건의 35%는 마약 범죄와 관련이 있었고, 34%는 사기, 12%는 탈세 관련이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정보가 제공된 곳은 RCMP(캐나다 연방 왕립경찰)에 1,664건, 시 경찰에 1,198건, 캐나다 보

였다. <https://www.egmontgroup.org/en/content/about> 참고

67) APG는 역내 국가들의 FATF 40개 권고사항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아시아-태평양 지역 자금세탁 방지 그룹으로, 1998년부터 활동을 개시하여 현재는 한국과 캐나다를 포함하여 41개국이 정회원으로 가입 활동하고 있다. <http://www.apgml.org/members-and-observers/page.aspx?p=8c32704a-5829-4671-873c-7b5a23ced347> 참고

68) FinTRAC은 2009년에 캐나다에서 매년 세탁된 금액이 50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 사이에 육박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안 정보 기관에 581건, 지방 경찰에 557건, 외국 금융정보 부서에 401건, 캐나다 국경서비스국(CBSA)에 353건, 캐나다 국세청(CRA)에 281건이었다.

이렇게 관계 기관에 제공된 FinTRAC의 금융거래 및 보고서는 유용하게 사용되어져 캐나다 금융경제의 안보를 지키는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FinTRAC에서 제공한 재무정보는 세무조사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캐나다 국세청(CRA)에서 진행 중인 파나마 페이퍼(Panama papers)⁶⁹⁾와 관련된 해외 범죄 조세 회피 조사에서 의심스러운 거래내역 등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캘거리, 웨스트 밴쿠버, 그레이트 토론토 지역에서 3건의 수색 영장을 집행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하는데 사용되는 역외 은행 계좌에 대한 일련의 금융 거래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토론토 경찰청은 RCMP의 통합시장범죄집행팀(Integrated Market Enforcement Teams, IMET)⁷⁰⁾과 수행한 임대계약 및 대출 관련 사기 사건인 'Briscola 프로젝트' 조사에서 FinTRAC 정보를 활용하여 피의자 12명에 대해 피해규모 합계 약 CAD 1,100만달러 달러 상당의 96건의 사기 관련 혐의를 입증하였다⁷¹⁾.

3. 각종 금융거래 및 보고서 분석

(1)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Suspicious Transaction Reporting Regulations)

69)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가 폭로한 파나마 최대 로펌 모색 폰세카(스페인어: Mossack Fonseca & Co.)가 보유한 약 1,150만건의 비밀문서로서 고위관료, 유명인 등의 조세 회피 및 재산은닉 정보가 포함되었다. 또한 이 문건에는 21만 4천여개의 역외회사(域外會社, Offshore company, 한국에서는 주로 페이퍼 컴퍼니 또는 유령회사라고 부른다.)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파나마 페이퍼에는 약 900명 가량의 캐나다인과 법인이 언급되어 있는데, 현재 캐나다 국세청에서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9년 현재 미연방 세금 4억 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5건의 형사조사가 진행중에 있다.

70) IMET는 캐나다의 심각한 자본시장 교란행위(Capital Market Fraud Offences)에 대해 엄단하고, 궁극적으로 캐나다 자본시장의 무결성에 대한 캐나다 및 국제투자자의 신뢰 향상에 기여하고자 캐나다 법무부 산하에 설치된 부서로, 주로 회계부정, 주식시장 조작, 절도, CAD 5,000달러 이상의 사기, 범죄수익 세탁, 범죄로 얻은 재산 소지 등 형사범죄의 예방, 조사 및 기소 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IMET에는 연방/주(지방)경찰, 회계분석가(Forensic Accountants), 각 주의 증권위원회(Securities Commission) 소속 수사관들을 포함하여 연방 검찰청 소속 검사들이 파견(embedded)되어 함께 근무하고 있다.

71) <https://www.FinTRAC-canafe.gc.ca/publications/ar/2018/1-eng> 참고

거래 또는 시도된 거래가 자금세탁(ML) 또는 테러 파이낸싱(TF) 범죄의 커미션 또는 시도된 커미션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금액의 다과(多寡)에 관계없이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서(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RT)를 제출·보고해야 한다.

「범죄수익(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의심 거래 보고 규정 제9조 제2항[section 9(2) of the Proceeds of Crime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ing Regulations]」에 따르면 “보고서는 그들 직원이나 임원 중 한명이 금융거래 또는 시도된 금융거래가 자금세탁행위 또는 테러 활동 자금 조달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근거(reasonable grounds to suspect)를 구성하는 사실을 감지하면 개인이나 단체 또는 직원이 근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FinTRAC으로 보내져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의심스러운 거래 또는 시도된 거래보고서를 FinTRAC에 제출하는 모든 개인 또는 단체는 보고서 사본을 보관하여야 하고, 이는 5년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이러한 STR(Suspicious Transaction or Attempted Transaction Report)에 기재되어지는 내용은 ①거래 또는 거래가 발생한 사업장 정보(법인 이름, 주소, 담당자 이름, 전화번호, 사업유형, 직업, 활동 등), ②거래 또는 시도된 거래에 대한 정보(거래 날짜, 자금 유형, 금액, 거래통화 등), ③계정정보(계좌번호, 지점번호, 각 계정 소유자 이름, 계좌 개설일, 계정상태 등), ④거래를 수행하거나 시도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이름, 주소, 시민권, 직업, 연락처 등), ⑤대리 거래가 수행되거나 시도되는 주체에 관한 정보, ⑥의심스러운 활동에 대한 설명(거래 또는 시도된 거래가 자금세탁범죄 또는 테러 활동 자금 조달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는 근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⑦의심의 결과로 취해진 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의심스러운 테러 재산 보고(suspected terrorist property report)

FinTRAC에 테러재산보고서를 제출하는 지침 가이드라인 (Guideline 5: Submitting Terrorist Property Reports to FINTRAC)에 따라서, 개인 또는 단체⁷²⁾의 경우 자신이 직접 소유하거나 또는 자신이 테러리스트 또는 테러리스트 그룹을 대신하여 재산을 통제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경우, 그렇게 믿고 있는 경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테러리스트 그룹 또는 개인 재산 보고서(Terrorist Group or Listed Person Property Report)에는 ①보고서를 제출한 개인 또는 단체에 관한 정보, ②보고서를 제출한 이유, ③부동산에 관한 정보, ④은행 계좌에 대한 정보, ⑤거래정보, ⑥거래를 수행한 사람에 대한 정보, ⑦대리 거래에 따른 수행 정보 등이 담겨져야 한다⁷³⁾.

(3) 고액현금거래보고(large cash transactions report)

FinTRAC에 고액현금거래보고서를 제출하는 지침[Guideline 7A, 7B: Submitting Large Cash Transaction Reports to FINTRAC Electronically(by Paper)]에 따라서, 개인 또는 단체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단일 거래 과정에서 현금으로 CAD 10,000달러 이상을 받거나, CAD 10,000달러 미만으로 총 CAD 10,000달러 이상의 현금을 두 건 이상 받으면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거래 후 15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⁷⁴⁾.

(4) 전자송금보고(Electronic funds transfers report)

FinTRAC에 전자적으로 전자자금이체보고서를 제출하는 지침 [Guideline 8A, 8B, 8C: Submitting (Non)-SWIFT Electronic Funds Transfer Reports to FinTRAC Electronically (by paper)]에 따라서, 개인 또는 단체는 24시간 이내에 단일 거래 또는 여러 거래에서 국제적

72) 여기 'FinTRAC'편에서 언급되어지는 단체의 종류로는 ①캐나다 은행법에 등재된 은행, 신용조합, 신탁회사, 대출회사 등 금융기관, ②생명보험회사, 중개인 및 대리인, ③증권딜러, ④주정부 저축 사무소 등에 근무하는 왕관 요원(Agents of the Crown), ⑤회계사, ⑥부동산 중개인 또는 영업 담당자, ⑦카지노, ⑧귀금속 및 석재 대리점, ⑨브리티시 컬럼비아 공증인 등을 말한다.

73) <https://www.fintrac-canafe.gc.ca/guidance-directives/transaction-operation/Guide5/5-eng> 참고

74) <https://www.fintrac-canafe.gc.ca/guidance-directives/transaction-operation/Guide7B/7b-eng> 참고

으로 CAD 10,000달러 이상을 양도하라는 지시를 보내거나 받으면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⁷⁵⁾).

(5) 국경간 통화 보고(cross-border currency reporting)

캐나다 달러 10,000불 이상의 통화 또는 통화 수단을 소지한 채 캐나다로 입국 또는 출국하는 경우, 캐나다로 송금하거나 송금한 사람이 각 캐나다 국경서비스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에 보고서(cross-border currency report)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CBSA은 FinTRAC에 이를 제공하는데 현금 또는 통화수단의 압류시 CBSA 담당자가 국경간 압류 보고서(cross-border seizure report)를 FinTRAC에 제출한다.

제6절 압수자산 관리 기관

1. 압수자산관리국(seized property management directorate)

1993년 9월 압수자산관리법(Seized Property Management Act, SPMA)이 발효됨에 따라 캐나다 연방 정부는 형법전의 지정범죄와 연결되어 압수 또는 보전된 재산과 연관 있는 법집행기관에 자문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법원의 몰수 선고 시 압수재산의 처분, 압수 압수된 자산의 판매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에 캐나다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압수자산관리국(seized property management directorate, SPMD)을 신설하고, 그 직제를 법무부 및 재무부와 독립된 제3의 기관인 공공사업부(department of public works and government services)에 소속시켜 몰수자산을 관리하고 몰수자산분배를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압수자산관리국⁷⁶⁾의 주요 업무는 형법(Criminal Code), 금지마약류

75) <https://www.fintrac-canafe.gc.ca/guidance-directives/transaction-operation/Guide8A/nseft-eng> 참고

76) <https://www.tpsgc-pwgscc.gc.ca/app-acq/gbs-spm/index-eng.html> 참고

및 물질에 관한 법률(Controlled Drugs and Substances Act), 범죄수익(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법[Proceeds of Crime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Act]의 특별조항에 의해 압수 또는 보전된 자산을 관리한다. 즉, 자산의 가치와 압류에 따른 관리비용 추정치 등에 대해 경찰과 연방검찰에 조언을 제공하고, 사전압류(pre-seizure, 압류 전의 재산에 대한 재산가치 분석 등)와 사후 압류(post seizure, 조사, 관리, 압류 또는 제한된 재산의 유지·보호 등), 몰수(post-forfeiture, 법원의 유죄선고에 따른 몰수절차 진행 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30일 공지기간 후에 압수자산관리국은 몰수된 자금을 분배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압수된 자산은 압수자산처분규칙(seized property disposition regulations)에 의거 경매 등을 통해 처분하고, 몰수 자산은 몰수자산분배규칙(Forfeited Property Sharing Regulations)에 따라 분배한다. 이러한 압수자산관리국의 역할은 미국의 법무부 자산몰수실의 업무와 유사하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법무부나 재무부 산하의 몰수자산기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캐나다에서 몰수된 자산은 1993년 ‘압수자산관리법(seized property management act)’이 제정된 후 동법에 기초하여 관리·처분되고, 1995년에 제정된 ‘몰수자산분배규칙(forfeited property sharing regulations)’ 제5조에 의해 분배할 수 있는 액수를 결정하고,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한다.

압수자산관리법은 근본적으로는 캐나다 법무부장관이 신청에 의해 몰수할 수 있는 혐의재산 관련 범죄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처리하기 위해 고안되었는데, 압수자산이 ‘공공사업부 장관(the Minister of Public Works and Government Services)’에 의하여 관리되거나 관리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제4조), 공공사업부 장관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제9조(d)]하고 있다⁷⁷⁾.

모든 재산은 압수자산처분규칙에 의거해 공개입찰 또는 공개 경매

77) 도중진/박광섭, 「범죄수익 몰수자산기금 도입방안 - 각국의 입법동향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3호(통권 제71호), 2007년 가을호, 1446쪽

를 포함하여 '있는 그대로' 처분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또한, 자산분배(asset sharing)는 몰수자산분배규칙에 따라 공공사업부 장관이 분배가 가능한 액수를 계산하고(제5조), 순이익(net proceeds)을 계산·결정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개별 사건에 관련된 분배 가능한 금액에 대하여 통지한다(제12조). 또한, 자산분배율은 기본적으로 공공사업부장관이 권고하고, 각 관할기관별 기여도를 참조하여 법무부장관이 결정하는데(제7조 제1항), 법무부장관은 기여도에 따라 우세한(predominant) 경우에는 90%를[제3항(a)], 중요한(significant) 경우에는 50%를[제3항(b)], 미비한(minimal) 경우에는 10%를[제3항(c)] 각 해당 지방정부별로 분배하고, 나머지는 연방정부에 귀속한다.

법원은 몰수명령 전에 제3자에 대한 통지를 요구하여야 하며, 청문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때 통지는 (a)법원이 지정하거나 또는 법원 규칙에 규정된 방법으로 행해져야 하며, (b)법원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기간 또는 법원 규칙에 정해진 기간 동안 지속되어야 하며, (c) 재산에 대한 기술과 범죄혐의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야 한다[형법 490.41.(1),(2)].

하지만, 제3자가 당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합법적인 소유자이거나 또는 그에 대해 합법적으로 권리를 가진다는 것 그리고 그 자가 범죄와 연루 되지 않은 무고한 자임이 확인되어지는 경우 법원의 명령에 의해 몰수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반환될 수 있다[형법 490.4.(3)].

이에 따라, 결국 캐나다에서는 일단 몰수된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임이 분명한 경우 몰수된 범죄피해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범죄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민사구제사무소(Civil Remedies for Illicit Activities office, CRIA)

캐나다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방정부 차원에서 압수자산관

리국(seized property management directorate)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그 이외에도 캐나다의 각 주 지방정부에서 역시 자산회복을 위한 부서를 두고 있다. 캐나다 주 지방정부 중 가장 먼저 민사몰수제도를 도입한 온타리오주가 그 중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온타리오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CRIA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CRIA는 경찰 또는 검사와 같은 지정 기관으로부터 추천이나 권유를 받아 설치된 온타리오 주정부에 있는 법무부 산하의 부서이다. 적절한 경우 CRIA는 범죄수익 몰수 명령을 받기 위해 주정부 법무부장관을 대신하여 허용된 법규[2001년 민사구제법(Civil Remedies Act, 2001), 2002년 재범죄행위수익금지법(Prohibiting Profiting from Recounting Crimes Act, 2002)]⁷⁸⁾에 의거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법원의 범죄수익 몰수 명령을 집행한다.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자산회복 신청은 법무부 산하 CRIA에 의해 시작된다. 사기 피해자는 CRIA에 직접 자신의 민원을 제기할 수는 없다. 신청은 CRIA가 사기 피해자로부터 직접 신청없이 경찰이나 보안 규정의 케이스(case)들을 참조하여 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구제법 신청을 통한 자산 회복을 희망하는 사기 피해자는 형사 소송을 제기한 다음, 검사나 경찰 그리고 기타 규제기관이 CRIA에 사건을 제출하기를 원한다.

이후 법원이 CRIA로부터의 민사구제법 신청에 따라 몰수 명령을 결정하면, 몰수된 금전 또는 재산은 검사에 의해 지정된 기금에 보유되게 된다. 즉, 민사구제법 제6조에 따라 몰수된 금전이나 재산은 주 지방정부의 통합수익기금(Consolidated Revenue Fund)에 있는 '특수목적계정(interest bearing account)'에 예치되어지고, 몰수 절차의 대상이었던 불법 활동의 결과로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손실(돈 또는 금전 이외의 피해)을 겪은 모든 개인 또는 타인 등 피해자는 보상 청구를 제

78) 2002년 온타리오주 정부에서 제정·시행한 법으로 지정범죄의 결과로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손실을 입은 사람들을 보상하고, 범죄 피해자를 돕기 위해 수익금을 사용하기 위해 그 절차와 처분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기할 수 있다.

온타리오주의 민사구제법에 의하면 입증책임은 법무부장관에게 있는데, 해당 재산이 불법 활동의 수익이나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사기 등의 범죄혐의에 대해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되어 몰수할 수 있는데, 법무부장관이 해당 재산이 사기의 대가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사기에 대한 형사유죄판결은 민사구제법에 따라 몰수명령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피고가 무죄로 풀려났거나 고소가 취하되더라도 피고는 여전히 민사구제법에 의한 몰수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CRIA는 유죄 판결이 없이도 몰수명령을 수행하고 있다. 이때 요구되는 증거(standard of proof)는 개연성의 균형(the balance of probabilities)을 입증할 정도로, 즉 형사소송에서의 증거 입증의 정도보다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낮은 약 50% 정도만 입증하면 된다.

이렇게 몰수된 자금은 범죄피해자에게 보상하기 이전에 법무부장관의 법적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불하는데 사용된다. 그런 연후에야 피해자에 대한 보상 절차가 진행된다.

CRIA는 2016년 4월 기준으로 2003년 11월부터 약 48,600,000 달러 상당의 재산을 압수하였는데, 이중 24,500,000 달러는 피해자 기금으로 배분되었고, 10,900,000 달러는 교부금을 통해 법집행기관에 배분되었으며, 13,200,000 달러는 온타리오주정부의 민사몰수사건 처리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사용하였다⁷⁹⁾.

79) <https://investigationcounsel.com/2017/07/11/fraud-victims-know-recovery-civil-remedies-act/> 참고

제4장 캐나다의 범죄수익 환수 수사 절차와 방법

제1절 범죄수익 환수 수사 절차

1. 일반 절차

캐나다 수사기관에서 진행하는 범죄수익 환수 수사의 일반적인 절차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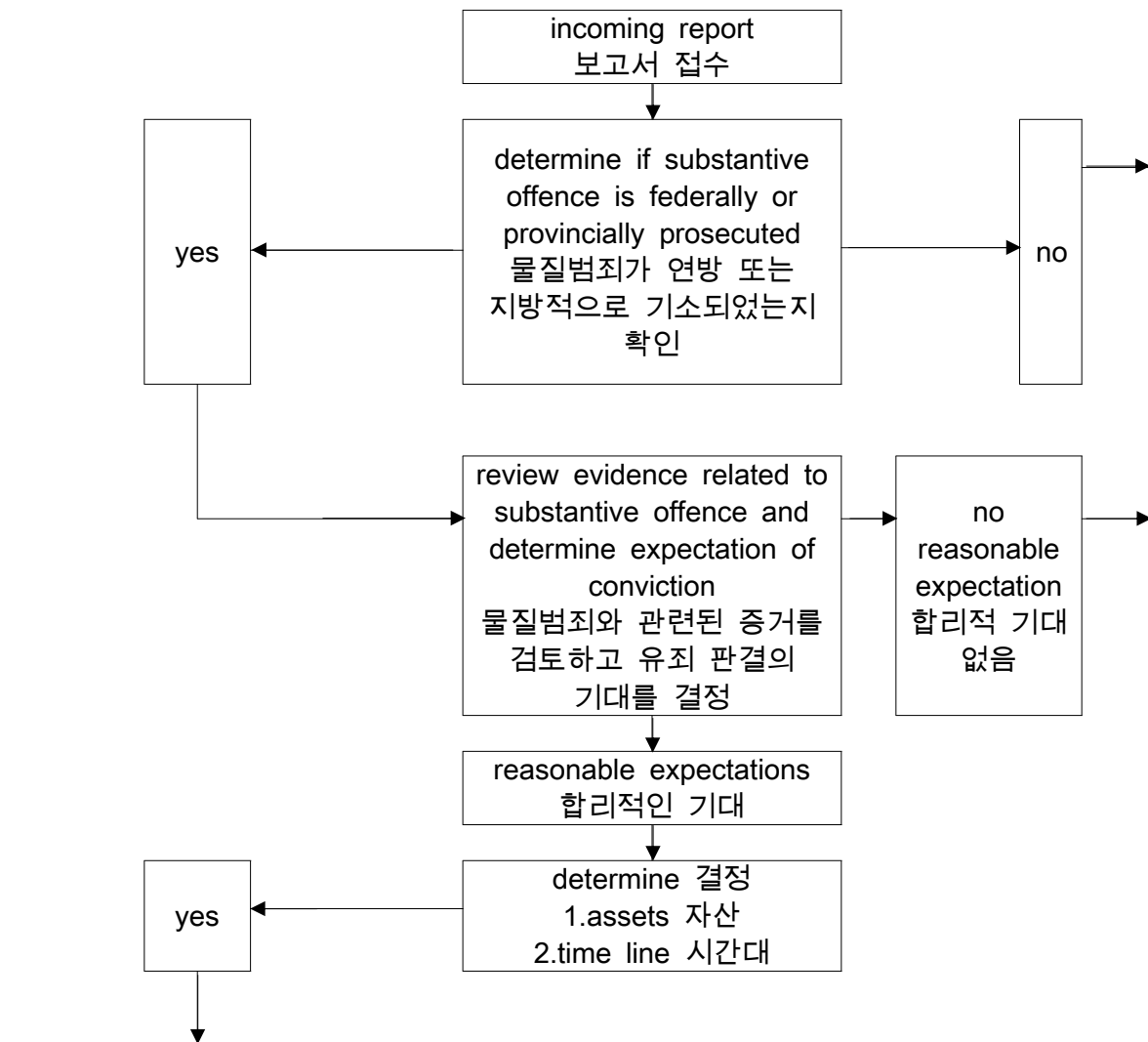
경찰에 보고서(report)가 접수되면 먼저 마약류 등 물질범죄(substantive offense)가 연방 또는 주지방정부에서 기소되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한다. 물질범죄와 관련된 증거를 검토하고 유죄 판결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이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 가능성이 있다면 범죄수익 환수 수사를 결정한다. 이때 범죄자산과 그 취득시점 등을 다각도로 조사 결정한다. 접수된 사건이 기소되었는지 여부를 살피고, 유죄 판결의 합리적 기대가능성이 없다면 민사몰수 또는 국세청을 통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사건을 인계한다.

본격적인 환수 수사를 결정하였다면 압수·보전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를 살핀다. 연방 관할 사건의 경우 법무부의 지원을 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주 지방정부 관할인 경우 각 주 범죄수익환수부서의 지원으로 심도 있는 수사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검사에 의해 기소가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기소에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확실한 증거 확보를 위해 물질범죄에 대해 체포시 대상 주거지 또는 사업장에서 수색영장을 집행한다.

중요한 것은 캐나다에서 형사사건에 관해 범죄수익 환수 수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혐의 유무 수사와 더불어 범죄수익과 관련된 재산 추적 수사가 병렬적(parallel investigation)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캐나다에서 수사기관은 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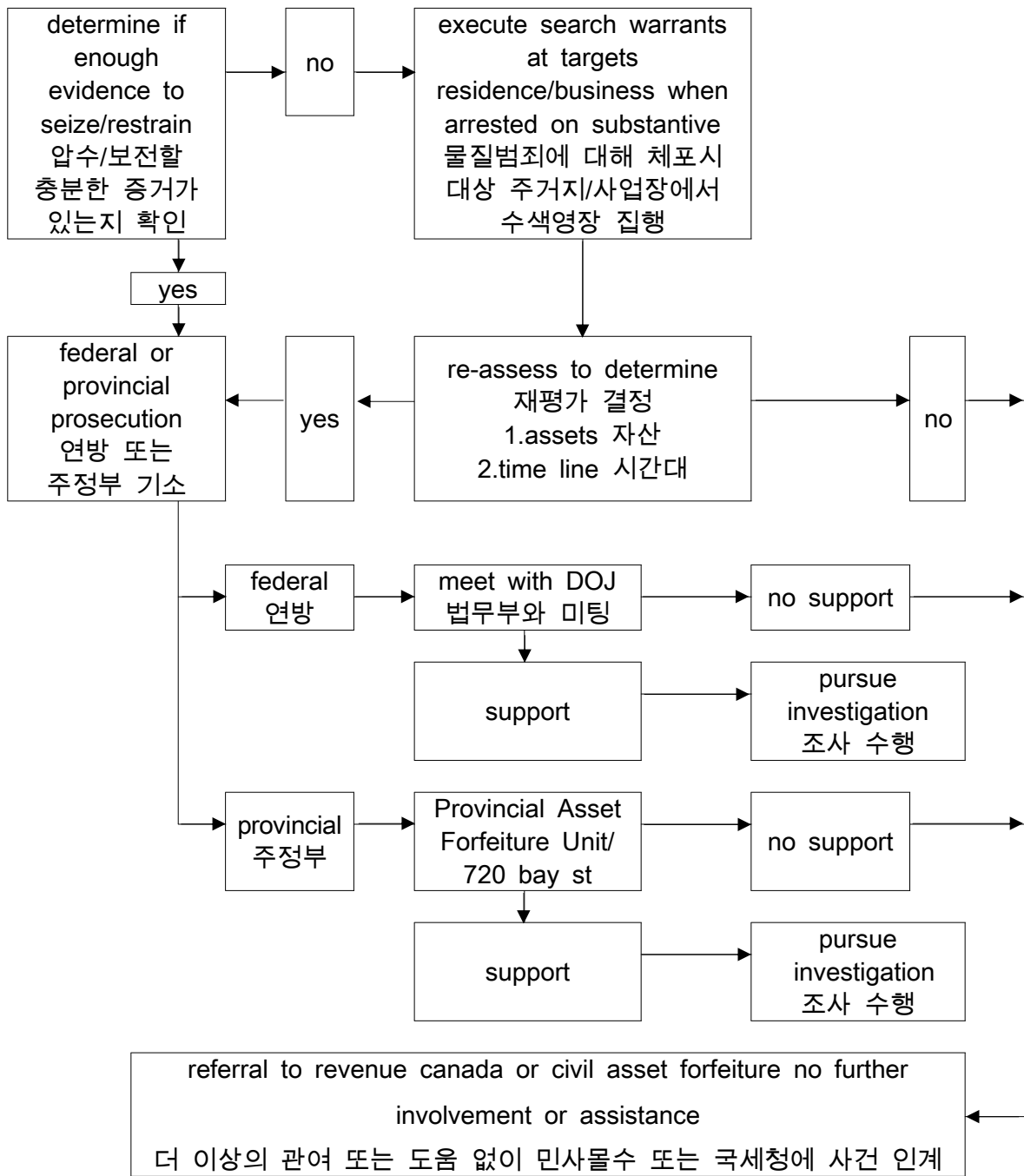
의자에 대한 수사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감청(wiretap), 잠입수사(undertaking), 특별수색영장(Special Search Warrants), 압수수색영장 집행시 영장에 명시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압수 가능⁸⁰⁾ 등 한국 보다 폭넓은 수사의 권한을 인정받고 있다.

[표 4] 범죄수익 환수 수사 일반 절차



80) 캐나다 형법 제489조(Seizure of things not specified)

「489 (1) Every person who executes a warrant may seize, in addition to the things mentioned in the warrant, any thing that the person believes on reasonable grounds
 (a) has been obtained by the commission of an offence against this or any other Act of Parliament;
 (b) has been used in the commission of an offence against this or any other Act of Parliament; or
 (c) will afford evidence in respect of an offence against this or any other Act of Parliament.」



2. 자산 몰수 절차

위의 범죄수익 환수 수사 절차에서 재산조사부터 압수에 이르는 자산 몰수의 과정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보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피의자에 대한 각종 영장⁸¹⁾ 신청을 위한 기초 증거조사 실시
- ②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 정보, 부동산 등 자산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명령(production order⁸²⁾) 집행

- 제출명령은 경찰이 법관에게 청구하는 영장의 일종으로 이를 제출받은 금융기관 등 대상자는 최대 90일 내에 요구기관에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공해야 한다.
- 제출명령도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기에 신청시 혐의사실에 대한 입증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정도는 수색영장의 발부 기준에 해당하는 합리적인 근거(reasonable grounds)를 증명하기 위한 정도보다 더 낮은 한계점(threshold)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증명정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혐의 사실 입증은 이루어져야 하기에 기초 증거조사를 충실히 수행해야 함에는 틀림없다.

③ 본격적인 자금추적

- 캐나다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의 범죄수익 취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피의자의 순재산액(net worth)을 파악한다. 즉, 자산총액으로부터 부채총액을 차감한 순재산액을 계산하는데, 이를 위해서 국세청의 소득세(income tax)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⁸³⁾.
- 예를 들어 피의자 A의 합법적인(legitimate) 소득은 2,100,000 달

81) 여기서 언급하는 영장의 의미는 법관이 발부하는 강제수사 권한을 부여한 각종 문서로, 캐나다 형법 제12.2편(범죄수익)에서 규정하는 제출명령, 특별수색영장, 관리명령, 보전명령 등을 의미한다.

82) ‘생산명령’ 등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여기서는 법원의 명령으로 금융기관 등이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의미를 강조하여 ‘제출명령’이라고 해석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83) 캐나다의 과세제도는 기본적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에 따라 누진세율로 과세하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더욱 중요한 것은 각 소득이 어떤 성질의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번 돈인지에 따라 차등과세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소득세 자료는 범죄수익 취득 여부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러인데, 수사 결과 소득액이 4,200,000 달러로 확인될 경우, 서로간의 불일치(discrepancy)가 발생하여 그 차액의 수입원에 대하여 본격적인 자금 추적 수사를 시작한다.

- 또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 부동산, 보석류 등 확인가능한 자산의 총액과 부채 총액의 차감액의 증감 여부를 연도별·기간별로 살펴어 범죄수익의 취득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 이러한 금융분석을 위해서 공인회계사를 정식 직원(staff)으로 채용하여 전문적인 범죄과학 회계(forensic accounting)을 실시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법관의 제출명령으로 은행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아 피의자 A의 계좌를 살펴면서 이와 연관된 직전·직후 계좌의 거래내역을 순차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제출명령을 받아 이를 집행하고, 이렇게 확보한 금융거래정보는 엑셀(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개의 시트(sheet)에 저장한 후 최종적으로 하나의 시트에 통합한 파일 형태로 재생산하여 시계열분석(time series analysis), 연관규칙분석(association rule analysi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데이터 분석을 실시한다. 아울러, 텍스트의 시각적 분석(visualization analysis)을 위해 I2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여 자금흐름(money flow)를 파악하기도 한다.
- 캐나다는 미국과 인접해있어 피의자들의 대부분이 캐나다와 미국을 비롯하여 중국 등 다양한 국가의 은행을 통해 반복적으로 자금세탁을 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피의자들은 금융거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계좌간 거래가 아닌 비계좌 거래를 주로 선호하는데, 이러한 비계좌 거래시 비대면거래, 제3자를 이용한 은행 창구 거래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범죄자의 신원을 가장 은닉하고 있다. 이때, 이러한 거래 당사자를 확인하고 자금 흐름을 연결하기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전표(slip), 거래내역(account statement), 전자송금 내역(INTERAC e-Transfer

history) 등 금융거래 자료를 제출받아 직전·직후 거래를 확인·분석하고 있다⁸⁴⁾.

④ 토지·건물, 은행계좌 등에 대해 보전명령(restraint order) 집행

- 은행 계좌를 동결하고, 토지·건물 등 피의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가압류하기 위해 보전명령을 집행한다. 여기서 보전은 점유는 취득하지 않고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한국에서의 기소 전·후 몰수(추징)보전명령과 동일하다.

⑤ 특별수색영장(special search warrant) 집행

- 일반수색영장으로는 범죄도구 및 범행증거물 등만을 압수할 수 있는 것과 달리 특별수색영장 집행으로 장래 몰수가 가능한 현금, 보석류, 금, 자동차, 오토바이 등을 확보한다.

⑥ 자동차·오토바이로 대표되는 차량운반구 등 유형자산(tangible property)에 대해 관리명령(management order) 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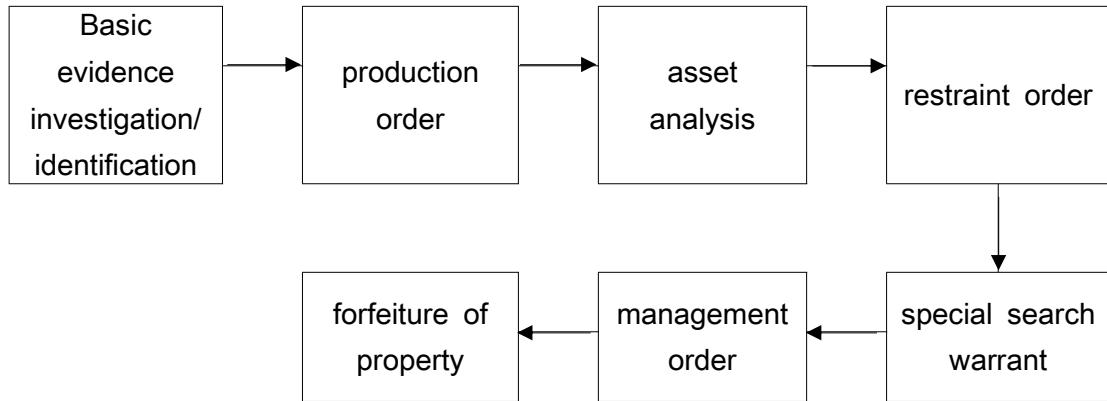
- 판사는 압수자산관리법(Seized Property Management Act)에 따라 압류 재산을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고, 관리하거나 처리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는데, 이때 경찰은 관리명령 신청 경위에 대한 선서 진술서(affidavit)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⑦ 몰수

- 유죄가 확정되면 압류 또는 보전조치가 취해진 재산에 대해 몰수절차가 진행된다.

84) 캐나다 5대 은행인 TD(토론토 도미니온 은행), CIBC(캐나다 임페리얼 상업 은행) 등을 포함하여 은행별로 PDF, Photocopy 등 다양한 형태로 저장된 진표를 제공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분석을 위해 경찰에서는 알티아(altea)라는 문자인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표 5] 자산몰수 흐름도



3. 차량 환수 절차

마약류 등으로 대표되는 물질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마약을 밀매하거나 이를 운반하는데 사용된 차량의 압수는 필수적이다. 여기서는 경찰에서 가장 많이 압수하는 대표적인 물건중 하나인 차량의 압수 실무 과정을 소개하는 것으로 캐나다의 범죄수익 환수 수사 실무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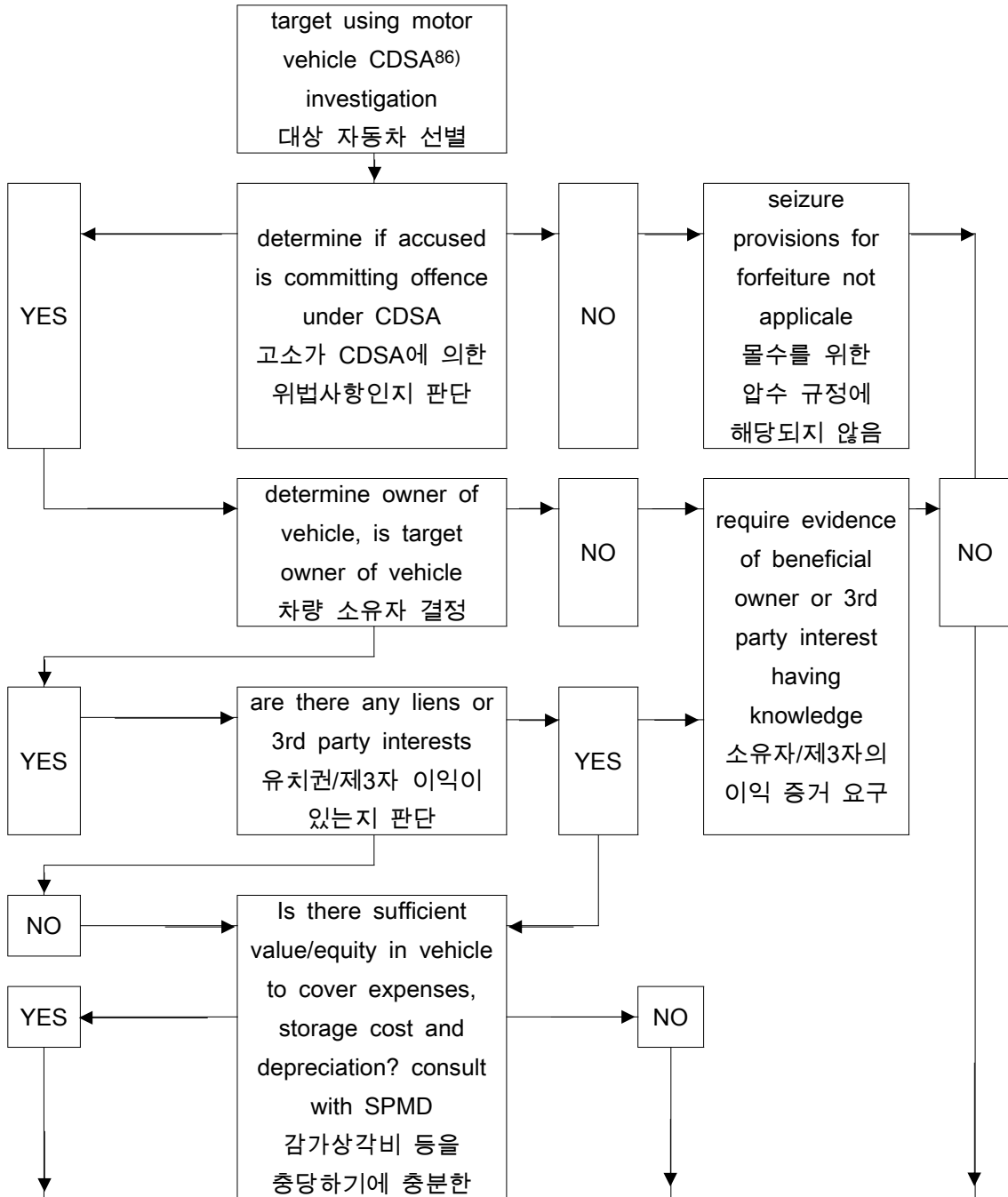
우선 대상 자동차의 조사를 결정하였다면 해당 사건의 고소가 CDSA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한다. 물론 CDSA 법규정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압수하지 않음은 당연하다.

차량 소유자를 확인하고, 유치권 또는 제3자의 이익이 있는지 등을 판단, 감가상각·보관비용 등 비용부담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자산가치가 있는지를 SPMD와 상의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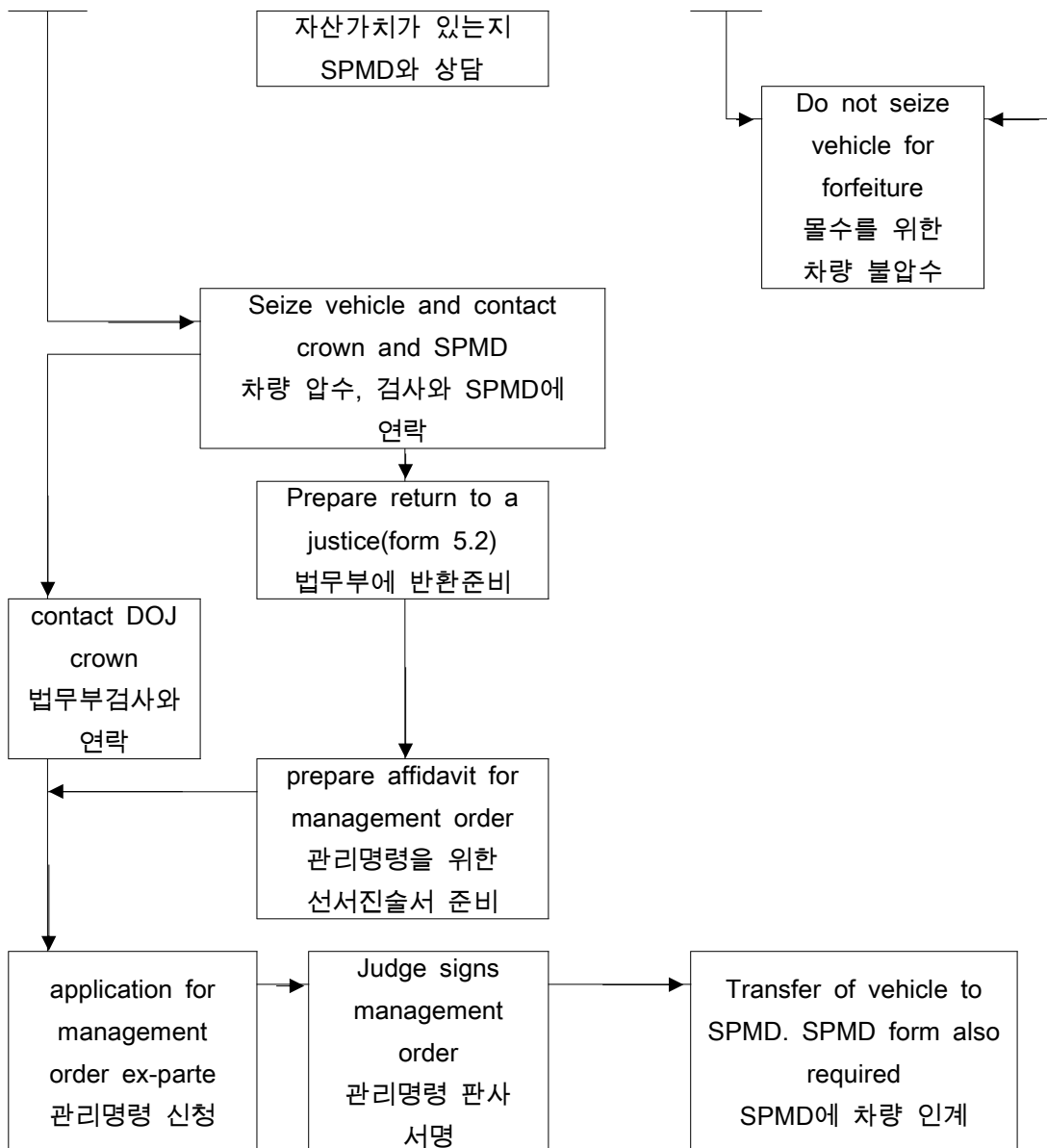
최종적으로 소유권 여부와 자산가치 등을 조사한 연후에 압수가 결정되면 차량을 압수하고 검사와 SPMD에 그 결과를 알린다. 대상 자동차는 법무부로 인계하고, 관리명령을 받기 위해 경찰은 선서 진술서를

작성한 후 검사의 청구로 법원에 관리명령을 신청하고, 법관의 결정으로 자동차는 SPMD로 인계되어 최종 몰수 집행을 위한 관리가 시작된다.

[표 6] 차량 압수 절차⁸⁵⁾



85) 온타리오경찰청 소속 PAFU(Provincial Asset Forfeiture Unit)에서 실제 처리하는 압수절차를 소개한다.



제2절 범죄수의 환수 수사 방법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캐나다 수사기관에서는 범죄수의 환수를 위해 법관이 발부한 제출명령(production order), 보전명령(restraint order), 특별수색영장(special search warrant), 관리명령(management order) 등을 활용하여 피의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압수를 통해 중국적으로 몰수에 까지 이르게 하는 일련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86) 금지 마약류 및 물질에 관한 법률(Controlled Drugs and Substances Act)

이에, 여기서는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캐나다 수사기관의 실제 범죄 수의 환수 수사 방법을 이해해보고자 한다.

1. 제출명령(production order)

가. 법적근거

형법 제487.14조 제1항부터 제487.19조 제3항까지에서 제출명령의 절차 · 방법 · 양식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내용

경찰관(peace officer) 또는 공무원(public officer)에 의해 제 487.015조부터 제487.18조까지 규정된 제출명령 신청이 있을 경우, 판사는 의심할만한 합리적 근거(reasonable grounds)가 있다고 판단되면 은행 등 대상 기관으로 하여금 아래 목적의 신청 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생산하거나 그들의 소유 또는 통제에 있는 문서의 사본을 작성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general production order 487.014 (1)~(4)].

- ① 의사소통의 전송과 관련된 장치와 사람을 식별할 목적(the purpose of identifying a device or person involved in the transmission of a communication)
 - [production order to trace specified communication, 487.015 (1)~(6)]
- ② 전송 데이터를 포함한 문서를 제공받을 목적(to prepare and produce a document containing transmission data)
 - [production order - transmission data, 487.016 (1)~(4)]
- ③ 추적 데이터를 포함한 문서를 제공받을 목적(to prepare and produce a document containing tracking data)

- [production order - tracking data, 487.017 (1)~(4)]

④ 다음 데이터를 명시한 문서를 제공받을 목적(to prepare and produce a document setting out the following data)

- [production order - financial data, 487.018 (1)~(5)]

- (a) 제출명령에 기재된 사람의 계좌번호 또는 제출명령에 특정된 계좌번호의 명의인 성명
- (b) 계좌 유형
- (c) 계좌의 상태
- (d) 계좌 개설 또는 해지 날짜
- (e) 제출명령에 특정된 계좌번호 또는 대상자의 생년월일
- (f) 대상자의 현재 및 이전 주소지

다. 제출명령 신청시 기재사항⁸⁷⁾

통상적으로 제출명령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들을 기재한다. 여기서는 범죄수익 환수 수사를 위해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피의자의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를 위한 제출명령을 신청할 경우 그 기재 사항에 대해 소개한다.

(1) 명령 사항

① 위법 행위(offences)

(예시) a) 형법 제354조 (1)에 근거한 범죄수익금의 소지
b) 형법 제462.31조 (1)에 근거한 범죄수익금의 세탁

② 피의자 정보(persons, businesses)

(예시) 1. 개인인 경우
a) 성명, b) 생년월일, c) 주소

87) 이하에서 소개하는 제출명령 등 각종 신청서의 기재례는 온타리오경찰청(OPP) 산하 자산몰수부서(Provincial Asset Forfeiture Unit)의 부서장으로부터 수사완료된 사건의 제출명령 등 신청서를 공식적으로 제공받아 공개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 이를 번역하여 적은 것임을 밝힌다.

2. 사업체인 경우

a) 회사명

③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해야 할 대상업체

(예시) a) 은행명(TD Canada Trust)

b) 주소(3500 steeles avenus east, markham, ontario L3R 2Z1)

④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

(예시) 본 신청서에 기재된 개인 또는 사업체와 관련하여 재무 기록을 소유 또는 통제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신청서에 기재된 사람 또는 사업자 이름으로 된 모든 금융 상품의 2013년 1월 1일부터 2019년 5월 16일까지의 날짜 범위 내에서 식별된 계정에 대한 해당 고객의 정보
- 금융 상품에는 은행계좌(채권 및 저축), 대출, 신용한도, 모기지, 대여금고, 투자계좌(보증된 투자 계좌, 면세 저축 계좌, 등록된 퇴직 저축 계좌, 주식 거래 계좌)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 고객 정보에는 이름,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고용 및 수입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고 금융기관이 고객과 관련하여 획득한 개인의 정보를 포함함
- 제공된 계정 명세서에서 식별된 특정 거래와 관련하여 본 제출명령 발행일로부터 12개월까지 후속 제공 요청을 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식별된 거래에 대한 지원 문서를 제공함
- 제공 자료는 6년 동안의 재무 기록에 불필요하게 얽매이지 않고, 원활한 조사를 위해 금융거래에 대한 적절하고 관련성 있는 문서가 수집되도록 해야 함
- 작성된 문서는 제출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통상적인 기간임) 이내에 전자메일(rh**ec@ottawapolice.ca)로 온타리오 주에 있는 형사 A에게 전자 형식으로 제공하여야 함
- 제공 자료에는 회신 후 즉시 사용가능한 형태(엑셀,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등)로 거래 데이터를 추출해야 하는데, 계좌

번호, 거래 날짜, 거래 설명, 거래 금액, 내부 추적번호 (internal trace number) 등을 포함하여야 함

⑤ 제출명령 공개 금지(order prohibiting disclosure)

(예시1) 형법 제487.0191조에 의거하여 금융기관 또는 금융 서비스 제공 업체를 포함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는 제출명령의 내용을 제공한 날로부터 12개월 동안 제출명령의 내용과 존재의 공개를 금지한다.

(예시2) 이 수사는 대규모 범죄조직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대량의 통화에 대한 범죄수익의 세탁을 수반하고 있다. 피의자들은 자신들의 자산을 쉽고 빠르게 청산하여 이동할 수 있으므로 제출명령에 대한 정보가 누설되면 자칫 수사를 실패할 수 있다. 이 제출명령은 전체 피의자들의 재무 구조의 전체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고, 이러한 수사가 완료되기까지는 1년 이상 회계 분석을 해야 할 상황이 예상되므로 제출명령일로부터 2년 동안의 비밀 유지 명령을 요구한다.

(2) 별첨 신청서 기재사항

① 제출명령신청 목적(purpose of the proposed production order)

(예시) 이 제출명령서는 신청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봉인하고, 계좌 소유주에게의 통지를 막기 위한 비공개 명령 목적이다.

② 개요(overview)

(예시) 2018년 12월 요크 지방 경찰서 소속 총기.갱단 및 마약 단속 팀(Guns, Gangs & Drug Enforcement Unit, GGDEU)은 주차장 부지에 화학 쓰레기를 버린 일명 “프로젝트 폐기(Project Discard)” 수사를 시작하였다. 이 서류는 용의자와 연결된 은행 계좌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선서 진술서(affidavit)이다.

③ 선서 진술인의 소개(introduction of affiant)

(예시) 나는 경찰관으로 얼마 동안 근무하면서 경제범죄 수사 실무, 수색영장 작성 실무, 기본 자산몰수 실무 등 다양한 전문 지식을 쌓는 각종 훈련과 세미나를 수료하였다.

④ 이전 사법 승인(previous judicial authorizations)

(예시) 2019년 2월 26일 치안판사 A는 B 사건 관련하여 관련 법규정에 근거하여 수색영장을 발부하였다.

⑤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근거(grounds to believe the offences have been committed)

⑥ 범죄의 증거가 반영된 문서를 믿을 수 있을만한 근거(grounds to believe documents will afford evidence of the offences)

⑦ 결론(conclusion)

이렇듯 캐나다에서 금융거래 정보 및 자료를 제공받기 위해 활용하는 제출명령(production order)은 한국의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범위에 있어서 캐나다 법원은 정보 요구 범위를 “~에 국한하지 않고(but is not limited to)”라고 확장하는 수사기관의 신청을 배척하지 않고 있고, 수사의 밀행성을 엄격히 지키기 위해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기간의 제한⁸⁸⁾을 따로 두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한국과는 사뭇 다른 점이다.

88) 한국의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의거하여 증거인멸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금융거래정보 제공일로부터 6개월 간 거래정보 등 제공사실의 통보유예 요청이 가능하고, 서면으로 매1회 3개월의 범위에서 2차례 통보유예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2. 보전명령(restraint order)

가. 법적 근거

형법 제462.33조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범죄수익의 보전명령 절차·방법·양식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내용

법무부장관은 서면으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범죄행위와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여겨지는 피의자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신청서, 선서 진술서(affidavit)를 첨부하여 어떤 재산에 대해서도 보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application for restraint order 462.33 (1)]. 실무적으로는 검찰총장을 겸직하는 법무부장관을 대신하여 연방 및 각 주의 검사(crown)가 대리인 자격으로 실제 보전명령을 신청하고 있다. 즉, 경찰관은 보전명령을 신청할 수 없고 다만 보전명령 신청시 선서 진술서(affidavit)을 제출할 수 있을 뿐이다.

이에 보전명령 신청을 받은 판사는 관할권이 있거나 다른 지방에 재산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할권이 있는 지역내에서 벌어진 지정범죄와 관련하여 명시된 재산을 처분하거나 그 이익을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보전명령을 내린다[462.33 (3)].

보전명령은 캐나다 전역에서 그 효력이 미쳐 집행 가능함은 물론, 캐나다 밖에 위치한 재산에 대해서도 상황에 따라 필요한 보전명령을 내릴 수 있다[462.33 (3.01), (3.1)]. 보전 가능한 재산의 범위도 무형재산(intangibles) 및 부동산(real estate) 뿐 만 아니라 유형재산(tangible) 및 동산(movable items)까지 폭넓다.

보전 대상 재산과 관련하여 보전명령을 내리기 전에 판사는 통지를 요구할 수 있는데, 판사가 명령을 내리기 전에 이러한 통지를 하면

재산의 소실, 소비, 가치 하락을 초래하거나 재산에 영향을 미쳐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몰수명령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판사의 의견에 따라 재산에 대한 유효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462.33 (5)].

보전명령이 시행되는 동안 명령을 위반하거나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은 기소가능 범죄(indictable offence) 또는 약식기소사건(summary conviction)에 대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462.33 (11)].

범죄와 관련된 재산이나 수익에 대해 판사의 보전명령이 발하어진 후 대상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압류 또는 보전조치된 재산에 대해 몰수절차가 진행된다.

다. 보전명령 신청시 기재사항

통상적으로 보전명령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들을 기재하는데, 여기서는 부동산 보전을 위해 작성하는 신청서 기재사항에 대해 소개한다.

① 소개(introduction)

(예시) 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부서에서 근무하였고, 현재는 오타와 경찰서 소속으로 자산몰수부서(PAFU)에서 경찰관(peace officer)이자 형사(detective)로 재직하고 있다. 자산몰수부서(PAFU)의 역할은 범죄수익과 범죄 관련 재산의 식별, 압수, 보전 그리고 몰수를 지원하는 것이다.

저는 캐나다 경찰 대학에서 진행하는 조직범죄과정, 인신매매 전문 수사, 약물 수사 기법 과정 등에서 '자산몰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② 명령의 성격(nature of the ex-parte application and orders sought)

(예시) 이 명령은 대상 재산에 대한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고, 대상 재산의 관리 기관으로 공공사업부(Public Works and Government Services Canada) 소속의 압수자산관리국 (Seized Property Management Directorate, SPMD)을 지목하기 위함이다. 해당 부동산은 A, B의 공동소유이고, C 소재지에 위치해 있다. TD BANK(Toronto Dominion Bank)는 재산의 모기지대출을 보유하고 있다.

③ 사건의 개요(overview of the case)

(예시) 이 사건은 OPS(Ottawa Police Service)가 기밀정보제공자로부터 정보를 받은 후 시작된 마약 밀매 조사와 관련이 있다. 조사 내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OPS는 CDSA 제11조에 의해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한 결과, 피신청인 A는 대해 여러 죄명으로 기소되었다. 압수된 재무 문서를 검토한 결과 은행의 계정 정보를 통해 범죄수익금 중 일부는 의심의 여지 없이(Undoubtedly) 부동산 계약금과 할부금(down payment) 또는 모기지 지불금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보전명령을 신청하게 이르렀다.

④ 대상 재산과 관련된 혐의 범죄(alleged offences to which the property relates)

(예시) 피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⑤ 대상 재산 설명(description of the property)

(예시) a) 부동산의 경우
- 부동산 주소, 소유자 성명
b) 계좌의 경우
- 계좌명의인 성명, 계좌번호, 계좌종류, 잔액

⑥ 대상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믿는 사람(person believe to be in possession of the property)

(예시) 재산을 소유한 사람은 피신청인 A, B라고 믿는다. A, B는 공동 소유주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등록 소유자로 표시한다. 지분은 A는 99%, B는 1%이다.

⑦ 범죄수익(proceeds of crime)

(예시) 범죄수익이란 형법 제462.3조에 규정된 “지정범죄(designated offence)의 결과로 캐나다 내외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하거나 빼앗은 어떤 종류의 재산, 이익 등을 의미”한다.

⑧ 관련재산에 대해 동일한 법조항으로 보전신청을 이전에도 신청한 적이 있는지 유무(no prior applications)

(예시) 이것은 대상 재산과 관련하여 처음 신청하는 보전명령이다.

⑨ 대상재산이 몰수명령 대상이 될 거라고 믿을 수 있는 근거(grounds to believe an order of forfeiture may be made with respect to the property)

(예시) 재산과 관련하여 관련 법률에 의해 몰수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고 믿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소재 주택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대마초, 메탐페타민 등을 발견하였다. 주택을 수색하는 동안 경찰은 다음 물품을 찾아 압류하였다.

- 2층 침실 서랍장에서 \$780 호주 통화, 1층 침실에서 구찌 지갑에 \$3,360 중국 통화, 탁자 옆 남자 지갑에서 \$2,060 캐나다 통화 등 다수의 고액 현금
- 캐비닛에서 애플 아이패드, 아수스 노트북, 저장메모리
- 지하실에서 대마초 포장한 지퍼백, 세탁실 찬장에 메탐페타민 등

⑩ 피의자 범죄 전력(criminal record)

(예시) 2020년 1월 *일 피신청인 A, B에 대해 범죄기록을 조회하였다. 그 결과 피신청인들의 경우 언제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⑪ 신청이 대상자에 통지 없이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application should proceed without notice to respondents)

(예시) 검사의 일방적인 판단에 따른 신청에 기초하였기에 만약 보전신청의 사실이 피신청인에게 알려지면 피신청인이 대상 재산을 처분 또는 멸실, 가치를 감소시키는 일련의 행위를 시도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⑫ 자산관리(asset management)

(예시) 압류자산관리국(SPMD)를 통해 압류된 부동산을 관리 및 통제 할 수 있도록 한다. SPMD는 모든 유형의 재산을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력, 전문지식 및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최종 몰수 또는 반환 전에 재산의 가치를 잃지 않도록 한다. SPMD는 수년 동안 많은 부동산과 관련하여 압류/몰수 재산을 관리하고 책임있게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재산 보호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처분을 위해 부동산을 보전조치하면서도 일상적인 소유권(예,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에 거주하거나 임대)을 방해하는 조치는 금한다.

⑬ 이 신청과 관련된 공개 금지 명령 주문(order prohibiting disclosure relating to this application)

(예시) 보전명령이 집행되기 전에 신청사실이 공개되면 피신청인은 재산을 미리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 금지를 요청하고, 나아가 범죄수익이 다른 형태의 재산으로 전환되면 더 이상 범죄수익으로 몰수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 ⑭ 이 신청의 가치에 대한 결론(conclusion on the merits of this application)

(예시) 대상 재산이 범죄행위의 대가, 범죄에 이용된 재산이라고 믿으므로 관련법에 의해 몰수명령을 받을 수 있다. 더 나아가 대상 재산은 궁극적인 처분을 위해 재산을 보전할 수 있는 전문 재산 관리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라. 보전명령의 결정

보전명령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형식적인 청구 요건이 구비되었는지를 먼저 살핀다.

다음으로 판사는 아래 항목 등과 같이 보전신청에 믿을 수 있다고 여길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충분한지를 고려하여 최종 결정한다.

- ① 몰수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는 재산의 존재[there is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an order of forfeiture may be made under 462.39 (1) or 462.38 (2)]
- ② 재산이 캐나다 국내에 있다는 사실(the property is in canada)
- ③ 재산의 몰수와 판사가 관할권을 가지는 주(province) 내에서 저질러졌다고 의심되는 범법행위와의 관련성(the forfeiture related to a designated offence allegedly committed in the province in which the judge had jurisdiction)

보전명령은 판사의 자유재량으로 결정된다. 그렇기에 검사는 자신에게 보다 우호적으로 보전신청 결정에 동의하는 판사에게 집중적으로 신청서를 제출(judge shopping)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이를 차단하기 위해 동일한 재산에 대해 이전에 보전명령을 신청한 적이 있는지 여부(no prior applications)를 신청서에 기재하여 그 사실을 밝히고 있다.

마. 보전명령의 집행

보전명령은 반드시 서면으로 발행된다. 보전명령의 피신청인에게 그 사본을 송달해주어야 한다. 그게 불가능할 때에는 피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 등이 이를 대신 접수하게 하여 종국적으로 피신청인 본인에게 송달되도록 하고 있다.

보전조치된 모든 재산은 부동산 뿐 만 아니라 동산등록부에 처분 금지된 사실을登記하여야 한다. 이는 선량한 제3자가 처분금지된 사실을 모르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손해를 보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 처분금지된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기 위함이다.

3. 특별수색영장(Special Search Warrants)

가. 법적근거

캐나다 형법 제12.2편 범죄수익법(Proceeds of Crime)에서는 범죄 수익 환수 방법으로 가장 먼저 특별수색영장(Special Search Warrant)을 제462.32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설명하고 있다. 그만큼 특별수색영장은 보전명령과 함께 범죄수익법의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별수색영장과 보전명령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정범죄로 취득한 유·무형의 재산, 그 수익의 압수 및 보전 조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와켈링 판사(Wakeling J.A.)는 Gaudreau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형법 제12.2편의 제정 의도에 대해 “입법자들은 검찰의 권한을 더해주기 위해 범죄수익법을 제정한 것이지 종전의 법률을 새로운 법률로 바꾸기 위해 그런 법률을 입법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결론은 수색영장 제도를 규정한 종전의 모든 법조항 및 압류에 수반되던 결과적 상황들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법조문들은 검찰이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을 늘려주려는 의도에서 삽입

된 것임이 틀림없으며, 그 중에서도 어떤 범죄의 수익으로 획득된 자금에 대한 검찰의 대처능력을 확대시키고자 삽입된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우달(Woodal) 같은 이는 “유죄판결 이전의 재산박탈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 자유박탈을 허용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말로써 특별수색영장에 의한 판결전 압수의 정당성을 옹호하였다⁸⁹⁾.

나. 현황

실무적으로 거의 모든 범죄수익 환수 수사가 마약류 등 물질범죄(substantive offense)에 집중되는 캐나다의 현실에 비추어 형법전에 따른 특별수색영장보다는 금지마약류 및 물질에 관한 법률(CDSA) 제11조의 수색영장이 더욱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왜냐하면 CDSA의 영장은 금지물질 뿐만 아니라 금지물질이 포함되거나 은닉된 모든 물건, 범죄관련 재산, 그밖에 CDSA위반의 증거가 되는 모든 물건에 대한 수색을 가능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번거로움은 따르지만 특별수색영장은 수사기관에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반드시 발부받아 집행하는 영장임에 틀림없다.

- ① 보전절차만으로도 수사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는 관념(the need to seizure rather than restrain)
- ② 특별수색영장을 청구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모되는 사정(the time consumed on their preparation by police)
- ③ 특별수색영장을 청구하려면 검찰이 서류를 심사하고 법관에게 설명을 하여야 하는데 따르는 번거로움(the need for the Crown involvement on their review and presentation)
- ④ 특별수색영장은 반드시 상급법원(지방법원 혹은 고등법원)의 판사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는데 따른 불편(the requirement

89) 조병인, 앞의 책, 113쪽

that they be issued by a superior court judge)

- ⑤ 범죄수익의 액수가 많고 혐의가 확실한 사건만 취급하려는 검찰의 소극적 태도(a reluctance by Crown to accept other than strong cases)
- ⑥ 형법전 제462조 제34항의 규정에 따라 압수한 재산이 각종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the possibility that funds could be paid out of seized property pursuant to 462.34)
- ⑦ 압수하려는 대상물이 다른 주(Provinces)로 옮겨갈 가능성에 대한 우려(concerns with their portability between province)

다. 신청 및 발부 절차

특별수색영장은 형법 제487조에 규정된 일반 수색영장의 발부 요건과 절차를 기본으로 필요한 경우 이를 수정하여 준용하고 있다. 특별수색영장은 검찰총장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즉, 연방 및 각 주지방 정부의 검찰총장 또는 그 대리인으로서의 검사로 신청자가 제한되어 있고, 경찰관이 특별수색영장을 신청할 수는 없다.

관할 구역 또는 관할 외 구역 내에 위치한 해당 지역의 건물(building), 용기(receptacle) 또는 장소(place)가 수색 장소가 되거나, 몰수 명령이 예상되는 물건이 있거나,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가 해당 판사의 관할권 내에서 벌어진 지정범죄에 해당된다는 믿을 수 있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고, 이러한 정보가 검찰총장의 맹세(oath)로 만족될 수 있을 경우, 판사는 수색영장 기재 항목에 영장을 집행할 사람(authorizing person) 및 건물 수색을 할 수 있는 경찰관(peace officer)을 특정하여 수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때 영장을 집행할 사람 및 경찰관에게 장래 몰수명령이 예상되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다른 물건에 대해서도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검찰총장의 맹세(oath)는 보증 개념으로, 특별수색영장의 발부 및 집행으로 인하여 해당 재산에 가해질 수 있는 손해나 비용을 지불할 것을 검찰총장이 약

속하는 것이다⁹⁰⁾.

특별수색영장의 발부 요건은 1987년에 열린 의회 토론에서의 캐나다 법무부장관의 발언을 살펴보면 더욱 상세히 알 수 있다.

「판결전 압류 및 보전 권한은 오로지 최고 원로급 판사의 꼼꼼한 인정 과정을 거쳐서 부여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신청은 오로지 검찰총장(Attorney General) 혹은 그의 대리인만(his or her representative)이 할 수 있으며, 신청서에는 반드시 선서진술서(affidavit)가 첨부되어야 한다. 법률의 아주 중요한 요소는 법원이 검찰총장에게 보증을 요구해야 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모든 수단들은 특별수색영장에 수반되는 권한이 단지 그것을 요청할 가치(merit)가 있을 때만 발휘되도록 보장해 줄 것이다⁹¹⁾.」

영장 신청은 검사의 일방적인 판단(ex parte)에 따라 이루어진다. 영장은 서면으로 발부되어야 하고, 영장신청 대상이 되는 재산이 금번 영장 신청 이전에 신청이 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영장을 통해 수색할 수 있는 재산은 전환 혹은 교환의 산물에 속하는 일체의 동산, 부동산, 권리증 및 재산이나 수익 등이 모두 포함된다.

영장은 각 주/준주의 하급법원 또는 상급법원에서 형사 사건을 관할하는 판사가 발부한다. 따라서, 영장 신청은 하급법원 또는 상급법원의 형사사건 전담 판사에게 하여야 하나, 유콘 테리토리(Yukon Territory), 노스웨스트 테리토리(Northwest Territories), 누나부트 준주(Nunavut) 등은 지방법원에서 형사사건 전담 판사들이 특별수색영장의 발부를 도맡아 처리하고 있다.

라. 영장의 집행

90) 보증 업무는 연방 법무부내 지정부서에서 전담하고 있는데, 사실상 검찰이 보증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91) house of commons debates, september 14, 1987 at 8889

영장은 캐나다 내에서 어떤 장소라도 집행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장은 발부하는 판사의 관할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집행이 가능하다. 이때에 영장 집행을 위해서는 영장 발부 판사의 관할권 이외 지역의 해당 판사에게 요청하여 영장의 효력을 확인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신청이 있으면 판사는 일방적인 판단(on ex parte application)에 따라 확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 영장의 효력이 확인될 경우 그 영장은 해당 주에서 발부된 영장과 동일한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영장을 집행하는 경찰관(peace officer)는 영장을 집행할 장소에서 경찰관으로서 정당한 권한(authority)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는 연방경찰과 주지방 경찰 등으로 경찰권이 구분되어 있는 연방제 국가의 특성에서 기인한다고 보여진다. 만약 영장이 다른 주에서 집행될 경우에는 발부된 영장에 영장이 발부된 주 소속 경찰관과 영장을 집행할 다른 주 소속 경찰관의 이름이 각각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그 집행은 판사가 야간 집행을 허용하는 경우(be executed by night)가 아니면 주간(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에 이루어져야 한다.

특별수색영장을 집행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462.32 (4) (a)~(c)].

- (a) 압수할 물건은 영치(detain)되어야 한다. 압수된 재산을 경찰서에 영치(detain)할 때에는 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재산을 보존하는데 합당한 주의를 기울인다.
- (b) 영장의 집행 후 가능한 한 빨리 7일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압류된 재산과 재산이 영치된 장소가 특정된 압수재산집행보고서(report to a judge of property seized)를 작성하고, 이를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c) 재산을 압류당한 사람과 재산에 대한 유효한 이해관계(valid interest)⁹²⁾가 있는 사람에게는 본인들의 요청 또는 판사의 의견에 따라 압수재산집행보고서 사본을 제공하도록 한다.

92) '유효한 이해관계(valid interest)'가 의미하는 바는 법률에서 규정된 바 없지만, 일반적으로 법률적 이해관계 및 이와 동등한 이해관계를 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형법 또는 정부(parliament)의 다른 법에 근거하여 검찰총장의 동의(consent)로 영장에 의해 물건을 압수한 경찰관(peace officer)은, 만약 경찰관이 압수된 물건을 소지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분쟁이 없다는 것이 충족하거나, 압수된 물건의 영치가 몰수의 목적으로 필요하지 않아 계속 영치할 필요가 없다고 여겨지는 경우, 그리고 위의 형법 제 462.32조 (4)(b)에 따라 법원 직원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압수물건을 반환한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그 물건을 소유한 사람에게 압류된 물건을 반환해야 한다.

판사는 만약 영장을 발행하기 전에 통지를 하면 재산의 소멸(disappearance), 멸실(dissipation), 가치 하락(reduction in value)을 초래하거나 재산에 영향을 미쳐 영장에 따라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압수할 수 없다는 결론에 미치지 않는다면, 특별수색영장의 집행 대상이 되는 재산과 관련하여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판사는 통지를 요구할 수 있고, 판사의 의견에 따라 재산에 대한 유효한 이해관계(valid interest)가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여기서 유효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란 일반적으로 압수하려는 재산에 대하여 일정한 지분이나 권리를 보유하는 피신청인 본인을 포함한 배우자, 거래상대방 등을 의미한다.

4. 관리명령(Management order)

가. 법적근거

형법 제462.331조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관리명령의 절차·방법, 파괴명령(destruction order)의 신청, 몰수 명령(forfeiture order) 등 압수된 이후 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압수 자산관리법(seized property management act) 제6편 및 제7편에서 그 관리 및 처리에 대한 근거를 들고 있다.

나. 내용

판사는 형법 제462.32조에 따라 압류되거나, 제462.33조에 따라 보전된 물질 이외에도 CDSA법에서 의미하는 마약 등 통제물질 (controlled substance) 및 대마초법 2(1)에서 정의하고 있는 대마초에 대해 검찰총장의 신청 또는 검찰총장의 서면 동의를 얻은 다른 사람의 신청이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판사는 각 (a)판사의 지시에 따라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제하고 관리하거나 처리할 사람을 지명하거나, (b)그 재산을 소유한 사람은 (a)에 따라 지명된 사람에게 재산을 소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관리명령은 검찰총장의 요청(request)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판사는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은 경우 압류 및 보전된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자로 공공사업부 장관(the minister of public works and government services)을 지명해야 한다. 이후 실제 재산의 관리는 법무부와 독립된 제3의 기관인 공공사업부에 소속된 압수자산관리국 (Seized Property Management Directorate, SPMD)에서 몰수자산을 관리하고 몰수자산기금을 운영한다.

압류 및 보전된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을 포함한다.

- (a) 부패하기 쉬운 자산(perishable property) 또는 빠르게 감가상각되는 자산(depreciating property)의 상호간(interlocutory) 판매를 하는 권한
- (b) 제4항(파괴명령의 신청) 내지 제7항(파괴명령)에 따라 가치가 거의 또는 전혀 없는 재산을 파괴할 수 있는 권한
- (c) 제7.1항(몰수명령)에 따라 국가에 몰수된 부동산 또는 운송(conveyance) 이외의 재산을 소유할 권한

재산을 관리하도록 지명된 자는 압류 및 보전된 재산의 가치가 거의 또는 전혀 없는 재산을 파괴하기 전에 파괴명령(destruction order)을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은 파괴명령을 발부하기

전에 재산에 유효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재산 소유에 관련된 자들에게 통지를 해야 한다. 만약 법원은 재산에 재정적 또는 기타 가치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하면 재산을 파기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압류 및 보전된 재산을 관리하도록 지명된 자가 신청할 경우 법원은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면 부동산 또는 운송 이외의 재산을 국가가 몰수하여 법에 따라 처분하거나 처리하도록 몰수명령(forfeiture order)을 내려야 한다.

- (a) 법원이 지시하거나 법원의 규칙에 명시될 수 있는 방식으로 통지가 제공되거나 발행되는 경우
- (b) 통지에는 60일의 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해당 재산에 대한 자신의 이익(interest)을 주장할 수 있다는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 (c) 그 기간 동안 아무도 그러한 신청을 하는 경우

다. 관리명령 신청시 기재사항

관리명령 신청서에는 법원에서 관리 대상 물건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①사건번호(incident #), ②대상자 정보(involved persons), ③압수된 물건(item seized), ④혐의(offences), ⑤수사상황(details of the investigation)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판사로부터 관리명령이 발부된 이후에 SPMD로 대상 물건과 신청서를 인계할 때에는, 예를 들어 대상 물건이 자동차라고 하면, ①견인 장소(location), ②견인업체(tow company), ⑧차량설명(vehicle description), ④운전면허번호(liens), ⑤신청 개요(synopsis), ⑥전문가 의견(expert opinion) 등의 관리명령을 위한 고려사항들(consideration for management order)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5. 대인몰수(in personam forfeiture)

가. 법적근거

형법 제462.37조에서는 재산의 몰수명령(order of forfeiture of property)의 방법 및 절차, 위법행위 등 대인몰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나. 내용

지정범죄(designated offence)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물론, 유죄의 선고를 받았지만 조건부 면책이 된 사람에 대해서도 범죄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 단, 엄격한 약식기소사건(strict summary offences) 또는 요약적으로 기소된 재량사건(hybrid offences prosecuted summarily)의 경우는 몰수가 불가능하다.

몰수는 검찰총장(attorney general), 그 대리인인 검사(crown)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판사는 몰수대상 재산이 '범죄의 수익'이며, '확률의 균형(on a balance of probabilities)'에 따라 범죄와의 관련성이 충족되는 경우 몰수 선고할 수 있다. 다만, 검사가 입증된 범죄(the proven offence)의 몰수와 관련하여 판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도 검사가 몰수대상 재산이 범죄의 수익이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없이(beyond a reasonable doubt)' 증명할 수 있는 경우는 법원이 재산을 몰수 선고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인정해 주고 있다.

몰수는 캐나다 국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어디서든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선고 가능하다. 몰수대상 재산과 관련하여 약간의 결함으로 인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도 '몰수를 대체하는 벌금형(fine in lieu of forfeiture)'을 선고할 수 있고, 대체벌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법령에 의해 구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6. 대물몰수(in rem forfeiture)

가. 법적근거

대물몰수의 절차는 형법 제462.38조 제(1)(2)항과 제490.2조에서 그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나. 내용

당해 재산의 범죄관련성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고, 범죄에 대한 사법절차가 이미 개시된 상태이며,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도주하였다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당해 물건에 대해 몰수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5장 국내의 범죄수익 환수 법제도 개선방안 검토

제1절 국내 범죄수익 환수 적용 법률⁹³⁾

범죄수익은 특정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거나 그와 관계된 자금 또는 자산을 의미하고, 범죄수익환수는 이와 같은 범죄수익을 범인으로부터 환수하여 국고로 귀속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실무적으로 범죄수익환수 및 그와 관련된 자금세탁범죄에 대해서는 주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하고 있지만, 위의 법 이외에도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마약거래방지법’),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이하 ‘공무원범죄몰수법’), 불법정치자금등의몰수에관한특례법(이하 ‘불법정치자금몰수법’) 이상 5개 법률이 범죄수익환수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표 7] 범죄수익환수 관련 5개 법률의 제정 배경 및 특징

법률	제정연도	제정배경	특징
공무원범죄몰수법	1995	인천, 부천 세무비리사건 ⁹⁴⁾ 이후 공무원이 직무범죄행위를 통해 취득한 불법수익을 철저히 추적, 몰수하기 위해 제정	전두환 전직 대통령 재산에 대한 추징을 위해 2013년 개정으로 특정공무원범죄의 몰수·추징 시효를 10년으로 연장, 몰수·추징집행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 등 도입
마약거래방지법	1995	마약사범 진압을 위한 국제공조의 기틀이 되고 있는 ‘88유엔마약협약’ 가입을 위해 제정	마약류범죄행위로 취득한 불법수익 등을 철저히 추적·환수하기 위한 몰수·추징 보전조치와 외국의 몰수·추징재판의

93) 제1절에서 제시하는 국내의 5개 범죄수익환수 관련 법률을 표식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내용 등과 제2절에서 언급하는 국내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의 집행 사례 등은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에서 발간한 ‘범죄수익 환수업무매뉴얼’이 가장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 매뉴얼의 3~7쪽, 127~175쪽의 내용을 참조하여 요약 정리하였다.

			집행을 위한 국제공조 절차 등을 마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부패재산몰수법의 몰수·추징 보전절차도 이 법 규정을 준용
범죄수익은닉규제법	2001	자금세탁방지 비협조국가 지정을 면하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가입을 위해 제정	범죄수익환수의 기본법으로 전제범죄(중대범죄) 지정시 몰수·추징 범위 확대, 범죄수익은닉 등 자금세탁 행위 처벌, 몰수·추징 보전 가능
불법정치자금법	2005	공공·정치·경제·시민사회 대표자 39인이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하면서 그 일환으로 제정	정치자금법에 의해 규율되는 부정 수수 정치자금에 대한 몰수 등 규정, 입증책임 완화
부패재산몰수특례법	2008	국제반부패 규약의 기초가 되고 있는 ‘유엔 부패방지협약’ 가입을 위해 제정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 특례와 부패재산의 해외반환 및 국내환수 등을 규정

5대 법률의 주요 특징은 몰수대상재산의 확대, 제3자 보호제도, 몰수·추징보전 제도를 들 수 있으며, 마약류범죄 관련 범죄수익을 대상으로 하는 마약거래방지법의 다른 법률은 대부분 대상범죄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대상범죄와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으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다.

[표 8] 범죄수익환수 관련 5개 법률의 주요 내용

법률 항목	마약거래 방지법	범죄수익 규제법	부패재산 몰수법	공무원범죄 몰수법	불법정치 자금법
전제범죄	2조 (정의)	2조 (정의)	2조 (정의)	2조 (정의)	2조 (정의)
자금세탁범죄	7~8조	3~4조	없음	없음	없음

94) 건국 이래 최대 세무비리사건으로 평가되며, 인천시 북구청 및 부천시 세무공무원이 범무사 등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취득세, 등록세 등을 횡령한 사건이다.

법률		마약거래 방지법	범죄수익 규제법	부패재산 몰수법	공무원범 죄몰수법	불법정치 자금법
항목						
몰수		13~14조	8조	3조	3~4조	3~4조
몰수요건		15조	9조	4조	5조	5조
추징		16조	10조	5조	6조	6조
불법수익의 추정· 증명·입증		17조 (불법 수익의 추정)	없음	없음	7조 (불법 재산의 증명)	7조 (불법 재산의 입증)
몰수보전 명령청구	기소후	33조1항	12조 (마약거래 방지법 준용)	12조 (마약거래 방지법 준용)	23조1항	22조1항
	기소전	34조	12조 (마약거래 방지법 준용)	12조 (마약거래 방지법 준용)	24조	23조
추징보전 명령청구	기소후	52조	12조 (마약거래 방지법 준용)	12조 (마약거래 방지법 준용)	42조	41조
	기소전	53조	12조 (마약거래 방지법 준용)	12조 (마약거래 방지법 준용)	43조	42조

제2절 국내의 범죄수익등의 몰수·추징

1. 몰수·추징의 성격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등의 몰수·추징은 특정범죄와 자금 세탁범죄의 부가형이고, 형법 제48조 몰수 규정의 특칙으로 우선 적용된다. 형법 제48조에 의한 몰수는 물건에 대하여만 가능하지만, 본조의 몰수는 몰수대상을 물건에 한정하지 않고, 은행예금·대출채권·무체 재산권 등 무형적 이익을 포함한 사회통념상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익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의 몰수는 특정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 전환되거나 변형·증식된 경우에도 특정되어 추적이 가능한 한 전

환된 횡수에 관계없이 몰수가 가능하다.

몰수·추징형이 선고되기 위해서는 특정범죄 또는 자금세탁범죄에 대한 공소제기가 필요하다. 따라서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해 몰수·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하여 불가능하고, 몰수·추징 선고에 대해서만 독립하여 상고할 수 있다.

2. 임의적 몰수·추징

형법 제48조와 마찬가지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몰수·추징은 임의적 규정이므로 법원의 재량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부패재산몰수법도 임의적 추징을 규정하고 있어, 해당 사건의 특성, 관련 규정의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할 때 몰수·추징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법원은 몰수·추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다.

단, 개별 법률에서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범죄수익환수 관련 5개 특별법 중에서 마약거래방지법(일부 임의적 몰수), 공무원범죄몰수법, 불법정치자금법은 범죄수익 등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동일사안에서는 해당법이 우선 적용되며, 또한 개별 법률에 몰수·추징 규정이 없으나 범죄수익환수 관련 5개 특별법상 전제범죄에 해당할 경우 5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몰수·추징할 필요가 있다.

3. 몰수 요건

가.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된 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특정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을 몰수하기 위해서는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지 않은 경우에만 몰수할 수

있다.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라고 규정하여 보호대상을 소유권으로 명시하였으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에서는 귀속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몰수대상재산이 소유권 이외에도 채권, 기타 재산권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이들 개념을 포함하는 의미로 귀속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소유의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자금법위반죄나 뇌물수수죄에 있어 금품을 수수한 사람이 정치자금이나 뇌물을 제공한 사람의 제공 취지에 따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금품을 수수한 사람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수수자로부터 몰수·추징할 수 없다⁹⁵⁾.

범인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등 공범이 포함되므로 공범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도 몰수가 가능하고, 그 소추 여부를 불문한다⁹⁶⁾.

나. 몰수대상재산 등이 제3자의 권리와 관련된 경우

몰수대상 재산이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더라도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정을 알고 취득한 경우에는 몰수가 가능하다.

단, 범인 외의 자가 비록 그 정을 알았을지라도 법령상의 의무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취득한 경우와 채권자에게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계약시에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 이행이 범죄수익등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고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으로 제공된 것을 취득한 경우에는 몰수할 수 없다.

(1) 법령상 의무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취득한 경우

95)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5652 판결

96)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도3545 판결

- 세금이나 벌과금의 수납, 자력으로 생활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민법상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피부양자에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공

(2) 계약시에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이행이 범죄수익등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고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으로 제공된 것을 취득한 경우

- 금원을 빌려줄 때 그 변제금이 범죄수익등에 의하여 변제되리라는 사정을 몰랐으나 변제의 단계에 이르러 범죄수익등으로 변제한다는 사정을 안 경우, 매매계약시에 그 대금이 범죄수익등으로 지불되리라는 사정은 몰랐으나 목적물을 인도한 후 매수인이 그 대금을 범죄수익등으로 지불한다는 사정을 안 경우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계약이라 함은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 교환계약, 고용계약과 같이 받는 재산과 제공하는 재산상의 이익이 상호 대가관계에 있거나 소비대차와 같이 계약의 성립에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요건으로 되어 있는 계약을 말한다. 따라서 재산을 받는 것에 대하여 대가를 제공하지 않고 계약의 성립에도 재산상의 이익의 제공을 수반하지 않는 증여계약과 예금(가입)계약과 같이 예금을 받는 것 자체가 예금자의 채무이행으로 제공된 것을 받는 것이 아닌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범인 외의 자가 몰수대산재산에 지상권·저당권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몰수가 가능하지만, 제3자가 범죄 전부터 권리를 가지고 있거나 선의로 범죄 후에 가지게 된 경우에는 해당 권리는 존속된다.

물론, 범인 외의 자에게 명의신탁을 한 재산에 대하여는 실제 범인의 소유임을 밝혀 해당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⁹⁷⁾.

97) 대구지방법원 2007고단3592호 판결

다. 비례의 원칙

판례는 일관되게 형법이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규정된 몰수는 임의적 몰수로서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라도 반드시 몰수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비례의 원칙에 제한을 받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몰수 대상 물건(이하 ‘물건’)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⁹⁸⁾.」

4. 추징 요건

추징은 범인에 대하여만 가능하다. 범인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등 공범이 포함되므로 몰수대상재산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공범 전체로부터 추징이 가능하다.

한편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달리 부패재산몰수법상 추징은 범인 외의 자로부터도 가능하다. 다만, 이때에는 범인 외의 자가 부패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여야 하며, 이와 달리 범인으로부터 추징하는 경우에는 부패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한 것인지 여부는 추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⁹⁹⁾.

공범에 대한 추징은 원칙적으로 공범 별로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나 개별적으로 추징가액을 산정할 수

98)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99) 대구고등법원 2017. 8. 7. 선고 2017노16판결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분할한 가액을 추정한다. 이 경우 몰수대상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공범에 대하여도 추정이 가능하고 피고인 중의 1인이 추정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한 경우에는 다른 피고인은 그 한도에서 납부의무를 면하게 된다. 판례는 국방회관을 운영한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 중 일부를 결재권자들에게 교부하였고, 결재권자들은 피고인이 교부한 자금이 위와 같이 횡령한 자금임을 잘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여 방조범으로 기소유예 처분까지 받았다면, 위 결재권자들에게 교부한 자금은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추정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¹⁰⁰⁾.

또한, 범인 이외의 다른 사람 명의 재산이라도 실질적인 소유자가 범인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추정할 수 있다¹⁰¹⁾.

가. 몰수대상재산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이유로 재산의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이며, 몰수대상재산이 판결 당시에 멸실되었거나 소재가 불명하여 사실상 몰수할 수 없는 경우, 몰수대상 재산을 선의의 제3자가 취득하였기 때문에 몰수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나. 몰수대상재산의 성질, 사용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몰수함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법 제48조 제2항¹⁰²⁾과 달리 재산의 몰수가 가능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으로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관의 재량에 의한 추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이나 임차권의 경우와 같이 국가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여 몰수가 상당하지 않는 경우, 몰수대상재산이 부동산이 임대되어 제3자가 이를 점

100)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도6738 판결

101)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도4659 판결

102) 「몰수하기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정한다.」

유하고 있는 경우, 선의의 제3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그것이 실행된 경우에 잉여금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제3절 보전절차

몰수·추징의 보전절차는 장래의 몰수, 추징 확정판결의 집행이 확보될 수 있도록 몰수대상재산이나 일반재산의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절차를 의미한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부패재산몰수법은 마약거래방지법상 보전절차를 준용하고 있고, 공무원범죄몰수법과 불법정치자금법은 보전절차를 자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는 별표에서 서식을 예시한다.

보전명령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 압수는 물건의 점유만 취득할 뿐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은 없지만, 보전절차는 점유를 취득하지 않았지만 처분을 금하는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범죄수익이 압수되었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처분한 경우, 판결선고시 타인 소유가 되어 몰수가 불가능하므로 압수물에 대해서도 몰수보전이 필요하다.

보전명령의 요건으로는 몰수대상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해당 재산을 몰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추징보전의 경우는 관련 법률에 의하여 추징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고, 추징재판을 집행하기 위하여 보전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 정해질 경우 인정된다.

통상적으로 많이 집행하는 기소전 추징보전명령 절차를 간략히 살펴보면 검사가 법원에 청구를 하여야 한다. 청구서에는 피의자의 인적사항, 죄명, 추징보전액,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보전청구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후 추징보전명령장이 발부되어 검사 및 피의자에게 송달되면 검사의 명령에 의해 집행된다.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보전명령 등기촉탁을 하고, 동산의 경우 결정문 등본을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송달하며, 채권은 결정문 등본을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한다. 예금계좌의 경우 은행 담당자에게 결정문을 전송하여 확정 후 압류 및 추심 집행을 한다.

제4절 국내 법집행기관의 범죄수익 환수 제도 운용 현황

공무원범죄몰수특례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범죄수익 환수 법률이 제정·시행되어 자금세탁범죄에 대한 처벌과 몰수·추징을 통한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법률에서 도입한 몰수·추징보전제도 등을 이용한 법집행기관의 환수 실적은 지극히 미미하였다.

이에, 대검찰청에서는 추징분야 형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범죄수익 박탈을 통한 범죄예방과 범죄수익이 범죄자금으로 재투자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2006년 5월 「자금세탁수사 및 범죄수익환수전담반」(이하 ‘범죄수익환수반’이라 한다.)을 출범·운영하였다.

그 결과 2005년 전국청 기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적용 보전명령 건수 총 73건, 범죄수익 환수 보전명령 조치 합계금 29억원 상당에 불과하였던 실적이 2006년 5월 범죄수익환수반 출범 이후부터 2007년 12월 말까지 기준 범죄수익환수반의 독자적인 활동으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적용 보전명령 건수 총 71건, 범죄수익 환수 보전명령 조치 합계금 1,970억원 상당에 이르는 획기적인 증가를 보였고, 전국청 기준으로 동기간 내 총 1,161건, 합계금 3,013억원 상당의 환수실적을 올렸다. 이는 2006년 하반기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한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비리 사건’의 영향도 있었지만, 범죄수익환수반의 일선 검찰청에 대한 환수 수사업무 지도와 자문 등 적극적인 활동으로 인해 이루어진 결과였다.

2013년 12월 현재 전국청 기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적용 보전명령 건수와 범죄수익 환수 보전명령 조치 금액은 각 1,591건, 합계 7,398억

원으로 범죄수익 환수 실적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범죄수익환수반 출범 이후 연도별로 죄명별 환수보전조치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6년의 경우 부패사범에 비해 사행행위사범에 대한 환수 보전조치 건수와 금액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2007년의 경우 전년도 대비 사행행위사범 이외 부패사범과 증권사범 등에 대한 환수 보전조치 건수와 금액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2008년 이후부터는 대표적인 사행행위사범, 부패범죄사범 이외 상표법위반 및 관세법위반, 한국마사회법위반 등 다양한 범죄군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 빈도가 점차 증가하였다.

특히 2013년 5월 배임수증재 등 폐해가 심각한 수개의 범죄를 중대범죄로 추가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이를 계기로 배임수증재에 대한 환수 보전조치 건수와 금액이 총 144건, 합계금 212억원으로 급상승하였다. 이것은 법령의 미비로 인해 실무에서 범죄수익 환수가 불가능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사회 각계 각층의 공론화, 검토를 통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 중대범죄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추가 확대해야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범죄수익환수 수사 강화를 위해 2010년 7월 기존 대검찰청에 설치·운영 중이었던 범죄수익환수반을 「범죄수익환수수사센터」로 확대개편하였고, 전국 각급 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반'을 설치하여 자금추적을 통해 은닉된 재산을 찾아내고, 몰수·추징을 위한 보전처분 및 그 집행에 주력하였다. 사법경찰관은 기소전 몰수보전·부대보전 신청만 가능한 입법 한계로 인해 주로 검찰청에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경찰, 관세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전체 정부관계부처에서 다각적으로 적극적인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듯 범죄수익 환수를 전담하는 부서는 2005년 5월경 비공식직제

로 대검찰청 산하에 '범죄수익 환수 및 자금세탁 수사 전담반'이 발족하여 직원 10명으로 처음 활동을 시작한 이후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도록 정식 직제가 되지 못하였다.

그러던 것이 2016년경 이른바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전 국민이 경험하면서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과 부정축재 재산의 환수를 강력히 요구하게 되었고, 그 실천과제의 하나로 검찰의 범죄수익 환수 기능을 강화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2018년 2월경 고액 추징미납건과 중요 부패사범 수사가 집중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부가 정식 직제로 출범하였고, 전국청 범죄수익 환수 수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할 대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과가 각 정식으로 발족하였다.

위와 같이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서는 범죄수익 환수 보전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추징금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 추징금 징수 집행 실적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추징금 집행실적을 연도별로 추징금을 구분하여 확인해보면 아래 통계자료와 같다.

[표 9] 연도별 범죄수익 환수 실적

(2018. 12. 현재, 단위: 백만원)

연도	자금세탁 기소건수	추징보전 명령건수	물수 추징 보전금액	추징금 선고금액	국고 환수금액	환수율
2014	552	2,216	939,894	394,996	72,988	18.5%
2015	545	2,497	471,724	219,356	58,697	26.8%
2016	774	2,282	540,635	213,221	53,322	25.0%
2017	522	1,992	549,167	217,386	27,786	12.8%
2018	779	2,422	2,439,082	47,126	7,023	14.9%
합계	3,172	11,409	4,940,502	1,092,085	219,816	-

2008년 추징금 집행실적이 전년도보다 월등히 높았던 것은 ‘바다이야기’ 사건 수사로 인해 추징보전되어 있던 범죄수익이 최종심 확정되면서 국고납입되어 집행실적이 향상된 것이고, 2010년 각급 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반’이 설립되면서부터 차츰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2년에는 2008년의 추징금 집행 실적을 훨씬 뛰어넘었다. 이는 몰수·추징보전 등 범죄수익 환수제도를 적극 활용한 결과, 형집행의 실적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나타낸다.

결국, 몰수·추징 부분의 형집행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범죄수익환수반의 적극 활용과 범죄수익 환수 제도의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제5절 형법의 ‘몰수’ 규정 변경 움직임

정부는 2011년 3월 25일 몰수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담은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동 개정안에서는 1953년 현행 ‘형법’ 제정 이후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골격과 내용이 변하지 않았던 형법에 대해서, 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를 명문화하는 등 다수의 조항을 수정하려는 내용을 담았는데, 이중 몰수와 관련된 부분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실무상 잘 활용되지 아니하거나 형의 부수적 효과에 불과한 금고, 자격정지, 자격상실, 과료 및 보안처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몰수를 형의 종류에서 삭제하여 형의 종류를 사형, 징역, 벌금, 구류 등 4개 종류로 간소화하자는 것

② 몰수를 형의 종류에서 삭제하는 대신 몰수의 본질이 형벌과 대물적 보안처분의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는 견해 등 각계 각층의 입장을 반영하여, 몰수를 형의 종류에서 삭제하고 별도의 형사제재로 편재(안 제3장 제9절)하자는 것

③ 몰수의 대상을 물건, 금전, 그 밖의 재산으로 확대하고, 몰수의 대상에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범죄행위의 보수로 취득한 물건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등을 제외하는 한편, 범죄행위의 보수로 취득한 물건, 금전, 그 밖의 재산이 몰수의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자는 것

④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에는 몰수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률을 높이기 위하여 몰수의 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는 것
동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 중 '몰수'관련 규정 수정안은 당시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등 환수 관련 특별법의 적용을 통해 축적된 판례와 형법이론 등을 반영하여 정비하려 하였던 것인데,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8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2012년 5월 29일 자동폐기되었다.

하지만, 개정 형법안에서의 주창한 '몰수'제도는 이미 실무를 통해서 더 이상 주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부가형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독립된 형사 제재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학계와 실무계에서 더욱 광범위하고 세부적인 몰수의 성격, 요건, 대상, 집행방법 등을 논의·검토하여 향후 재상정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6절 관련 문제

위와 같이 캐나다와 한국의 범죄수익 환수 법제도를 살펴보았다. 두 나라 공히 몰수제도를 채택하면서 범죄수익을 효율적으로 환수하기 위해 보전제도를 도입하여 판결 전 압류와 처분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수익 환수 법제도 집행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게 하기 위해 캐나다에서는 연방 및 주정부 차원에서 독립적인 범죄수익환수전담부서를 운영하는 한편, 한국에서는 전국청은 아니지만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과(부)를 정식 직제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중

이다. 그리고, 재산의 사전 동결을 위해 서로간의 성격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재산조사 및 압수 절차를 진행하고, 법관의 몰수 판결로 범죄수익을 국고에 환수하고 있다.

아울러 캐나다는 형법에 '지정범죄(designated crime)'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다양한 범죄와 연관된 불법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체계를 갖추고 있고, 한국의 경우 역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전제(중요)범죄"라는 개념을 삽입하여 다양한 범죄와 연관된 불법수익을 몰수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캐나다와 한국은 범죄수익 환수 법제를 다루는 근본적인 접근법이 원천적으로 다르다. 캐나다는 범죄수익법을 형법전에 삽입하였지만, 우리는 특별법의 형태로 규율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하여 캐나다가 금지마약류 및 물질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수 개의 연방법에서 범죄수익 환수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지 않는 것도 아니므로 그 의미의 차이는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또 하나 다른 점은 캐나다는 한국과는 달리 민사몰수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것으로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는 형사몰수로 범죄수익 환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도 범죄로 얻은 수익금을 박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민사몰수청이 설치 운영중이고, 경찰 수사 결과 유죄판결을 기대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 사건을 민사몰수청으로 인계한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물 쉼 틈 없이 범죄수익 박탈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경찰과 검찰에서 자산몰수가 이루어진 뒤에, 법무부도 재무부도 아닌 제3의 독립 기구인 공공사업부 산하에 압수자산관리국에서 그 압수 대상재산을 관리·처분한다는 사실도 크게 다르다. 이러한 압수자산관리국에서는 몰수한 자산을 별도로 관리하는 기금을 운영하고 있음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결국, 캐나다와 한국의 범죄수익 환수 법제는 비슷한 듯 하면서도, 실제에 있어서는 그 운용에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인다. 이에, 캐나다 법제를 모델로 삼아 우리의 범죄수익 환수 법제를 더욱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제7절 구체적 방안 검토

1. 범죄수익 환수 규정의 형법전 삽입

캐나다 범죄수익법은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특별법의 형태가 아닌 형법전에 직접 범죄수익법(the proceeds of crime act) 규정이 삽입되어 있다. 이는 2012년에 ‘범죄수익 및 테러자금조달법[proceeds of crime(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act]’이 형법전에 직접 편입된 것에 따른 것으로, 이렇게 형법전에 범죄수익 환수에 대한 규정이 직접 삽입된 것은 ‘범죄자 처벌’ 보다 ‘범죄로 인해 취득한 수익을 박탈’하는 것에 더욱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범죄수익의 범위 역시 더욱 폭넓게 규정되어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를 엄격하게 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캐나다는 형법전에서 물건에 대한 몰수 뿐 아니라 범죄수익의 몰수까지도 규정하고, 형법 이외의 다른 연방법에서도 범죄수익의 몰수를 규정하여 상당히 강력한 범죄수익 체계를 갖추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물건에 대한 몰수’는 형법 및 해당 분야의 특별법들에 분산시켜 규정하고, ‘범죄수익’에 대하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별도의 특별법을 통해 몰수하는 이중적인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범죄의 요건과 그 법적 효과인 형사제재를 규정하는 한 나라의 기본 뼈대가 되는 것이 형법이라는 점에서, 캐나다의 경우와 같이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형법전에 삽입되고, 거기에 독립몰수의 제도까지 삽입되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 형법전의 몰수 규정을 변경하여 몰수의 개념에 일반 물건에 대한 몰수를

포함하여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까지 가능한 것으로 부분 개정하고 그 구체적인 집행 절차는 현행대로 각종 특별법을 따르게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현행 5개 몰수특례법 중 적용 대상 범죄가 광범위하여 일반법적 성격을 지니므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독립몰수(추징)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통일적인 제도 운영 및 타 법률 준용 규정을 신설하여 입법경제를 도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2. 독립몰수제도의 도입

형법상 몰수 및 추징은 부가형으로 규정되어(형법 제49조), 범인이 도주하거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기소할 수 없거나 유죄의 재판을 할 수 없는 경우 몰수 및 추징이 불가능하여 조직화, 지능화되는 범죄현상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법집행 실무 현장에서는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를 위하여 범인에 대한 주형과 상관없이 몰수 및 추징만을 독립적으로 선고할 수 있도록 관계 법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범죄수익 환수 관련 국제적 기구인 FATF, UNCAC의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것임과 동시에 독립몰수를 도입한 주요 선진국(독일, 미국, 영국, 일부 캐나다의 주정부 등)의 입법 추세와도 부합하고, 특히나 범죄수익 박탈과 원상회복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독립몰수제도 도입시 포함되어야 하는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대상범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규정된 중대범죄로 한정
- ② 적용 사유는 사망, 소재불명, 성명불상, 사면으로 제한적으로

열거

- ③ 관할법원은 관련 범죄 관할법원, 몰수대상재산 소재지 법원, 몰수 대상 재산의 재산권자 또는 추징을 명할 자의 보통재산적이 있는 곳의 법원 등으로 정함
- ④ 청구절차는 검사가 기소 없이 독립몰수(추징) 명령을 공소장에 준하는 청구서로 관할법원에 청구함
- ⑤ 심리절차는 원칙적으로 서면심리로 하되, 직권 또는 검사 및 피청구인의 신청에 의해 심문기일이 개시됨
- ⑥ 재판형식은 결정으로 하고 즉시항고로 불복하되, 심문기일이 진행된 경우 판결로 하고 항소로 불복함
- ⑦ 재판효력은 원칙적으로 대세효, 귀책사유 없는 이해관계인 보호 규정 마련
- ⑧ 제3자 참가절차는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 소송촉진법 제23조 본문을 준용
- ⑨ 소급효는 이 법 시행 후 범한 범죄부터 적용, 다만 법 시행 당시 수사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 독립몰수(추징) 규정 적용 가능

3. 몰수자산기금 도입

가. 국제기구의 몰수자산기금 도입 권고

UN은 1999년 제정된 ‘자금세탁, 몰수 및 범죄수익과 관련한 국제 협력에 관한 모델법률’ 제4.2.13조에서 “몰수재산과 그 환가대금은 정부에 귀속되며, 정부는 이들 재산을 조직범죄 또는 마약류불법거래 진압을 위한 기금에 분배하여야 한다.”고 하여, 마약류범죄, 조직범죄 등 현재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여 범죄의 예방, 단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몰수된 불법재산 등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 설치의 필요성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UN은 2000년 제정된 ‘국제조직범죄방지에 관한 국제연합 협

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이하 '조직범죄방지협약') 제14조에서 몰수된 범죄수익 또는 재산의 처분(disposal of confiscated proceeds of crime or property)을 규정하고 있다.

FATF는 자금세탁방지에 필요한 법적·금융적 조치사항 및 국제협력 방안 등을 담은 40+9개 권고사항을 제정하여 그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데, 권고사항 중 '몰수 국제공조'에 관한 제38항에서는 몰수 국제공조에 관해 '외국의 요청에 부응하여 자금세탁 또는 전제범죄에 기초하여 발생된 수익 또는 당해 수익에 상응하는 가치의 다른 재산의 확인, 동결, 압류 및 몰수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몰수재산의 분배를 포함한 재산의 압류 및 몰수의 조정을 위한 약정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①각국은 가능한 경우 몰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집행, 건강, 교육, 기타 적절한 목적을 위하여 예치될 몰수자산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며, 또한 ②각국은 가능한 경우 특히 몰수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법집행활동의 공조의 결과인 때에 몰수재산을 국가 간에 분배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몰수자산기금제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나. 캐나다의 현황

캐나다의 경우 법무부나 재무부 산하의 몰수자산기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몰수된 자산은 1993년에 제정된 '압수자산관리법'에 기초하여 관리·처분되고 있다. 이 법은 근본적으로 캐나다 법무부장관이 신청에 의해 몰수할 수 있는 혐의재산 관련 범죄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처리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즉, 압수자산관리법 제4조는 압수자산이 '공공사업부장관(the minister of public works and government services)에 의하여 관리되거나 관리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법 제9조d는 공

공사업부장관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3조 제1항은 '몰수자산계정(seized property proceeds account)'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는 법무부와 독립된 제3의 기관인 공공사업부에 소속된 압수자산관리국(seized property management directorate, SPMD)에서 몰수자산을 관리하고 몰수자산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압수자산관리국의 주요 업무는 미국의 자산몰수실(AFO)의 업무와 유사한 것으로 연방경찰(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RCMP), 지방(provincial)·자치(municipal) 경찰에 대하여 압수대상물의 경제적 가치 등을 조언하는 것이다.

자산의 분배는 공공사업부장관이 1995년에 제정된 몰수자산 분배규칙(forfeited property sharing regulations) 제5조에 의거해 분배가 가능한 액수를 계산한다. 공공사업부장관은 몰수자산분배규칙 제12조에 의거하여 순이익을 계산한 후 법무장관에게 개별사건에 관련된 분배가 가능한 금액에 대하여 통지한다. 자산분배율은 공공사업부장관의 기초적인 권고와 각 관할기관의 기여도를 참조하여 법무부장관이 결정하고 있다¹⁰³⁾.

다. 국내의 몰수자산기금제도 도입 가능성 검토

현행 우리나라 현행 우리나라 실정법에서도 몰수 또는 추징한 범죄재산의 처분을 일괄하여 국고로 귀속시키지 않고 별도의 기관에서 직접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존재하는데, 이는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이하 '몰수금품처리특례법'이라 한다.)'이다.

동법은 법률 제5681호로 1999년 1월 21일 개정되었는데, 국가안전법의 정한 죄를 범한 자로부터 몰수하거나 또는 국고귀속 명령된 금품

103) 국민권익위원회, 앞의 책, 109~110쪽

을 타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신속하고 유효적절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이에 따라 몰수한 무기류, 통신기재, 장비, 기타 물품과 유가증권, 통화 등 공작금품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직접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도 몰수자산기금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토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안보현실 때문에 인정되는 특수한 경우라고 할지라도¹⁰⁴⁾, 범죄수익의 환수가 지니고 있는 본래적인 의의를 생각해보면, 몰수금품처리특례법의 경우와 같이 몰수자산기금을 도입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된다.

4. 범죄수익환수청 신설

캐나다와 한국 모두 장래 몰수·추징 등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집행 단계 이전에 범죄자가 범죄로 인해 취득한 재산 등에 대해 압수 또는 처분을 금지하는 보전조치를 취하고 있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하지만, 이로서 피의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보전조치를 취하였기 때문에 향후 예상되는 추징금을 손쉽게 집행할 수 있으리라고 예견하는 것은 금물이다. 실무에서는 추정보전이 되어 있더라도 가압류집행이 행해진 순위에 따라 본압류가 행해진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선순위 채권이 있는 경우 추징금으로 배당받지 못하여 집행 실익 없음으로

104) 국회전문위원 검토보고서(국가재건최고회의 제75차 상임위원회 상정),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안 검토」, 국회, 1962. 10. 25., 위 검토보고서에는 제안이유에 대해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의 죄를 범한 자로부터 압수한 제반 금품은 동범 범행자 및 동조자들의 색출·적발에 있어 불가결의 자료가 되는 동시에 대북 첩보·공작 등의 연구분석자료로서 획득이 용이치 않는 중요한 자료이나, 현행법상 이와 같은 압수금품은 법원의 몰수인도 또는 검사의 국고귀속명령으로 일질 국고에 귀속되는 관계로 정보수사기관에서는 유사한 압수금품의 적기 활용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이 불가능한 실정임으로 이러한 압수금품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에서 몰수인도 후 또는 검사의 국고귀속명령 후 정보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적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반공을 국시로 하는 우리나라 헌법을 부인하고, 궁극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전복을 기도하는 이들 범법자를 발본색원하는데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같은 압수금품의 처분은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의 승인을 얻어 중앙정보부장의 강력한 통제와 감독하에 행해지게 함으로써 종래와 같은 각 기관의 임의 처분과 이에 수반하는 부정행위를 근절케하며, 대공정보수사활동에 유효 적절히 이용케하여 국가안전보장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종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범죄자는 장래 예상되는 추징금 집행을 피하기 위해 수사단계에서 이미 범죄수익을 가장·은닉해놓은 것이 일반적인 행태이기 때문에 실제 형 집행 단계에서의 추징금 집행은 무척이나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 터잡아 2014년 11월 한국에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개정되어 ①다중인명 피해사고 발생에 형사적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추징판결을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 등을 취득한 제3자에게도 집행할 수 있고, ②몰수·추징 판결 집행을 위한 금융거래정보 및 과세정보 등의 제공, 압수·수색·검증영장의 도입¹⁰⁵⁾ 등 강화된 재산추적 수단이 신설되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추징금 집행을 위해 이러한 재산추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인원과 조직이 턱없이 모자라는 것이 현실이다. 범죄수익은 그 특성상 재산의 출처와 소재지를 숨기기 위해 반복적으로 가장·은닉 행위를, 그것도 본인의 명의가 아닌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한 차명의 형태로 벌이고 있기 때문에 추징금 집행 단계에서 재산추적을 세밀하게 수행할 독립적인 전문기관의 신설은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캐나다의 경우 연방정부 이외에도 주 지방정부별로 독립적인 자산몰수기관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이는 오로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설치된 곳으로, 사람(대상자)·물건 등에 대한 재산조사를 담당하고, 압

105) 제10조의3(몰수추징의 집행을 위한 검사의 처분)

① 검사는 이 법에 따른 몰수추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범인 외의 자에 대한 제4호 및 제5호의 처분은 제3항에 따른 영장이 있어야 한다.

1. 관계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의 청취
2.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에 대한 제출 요구
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4.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요청
6. 그 밖의 공공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사실조회나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 요구

② 제1항의 자료제공 요청에 대하여 해당 기관은 군사, 외교, 대북관계 등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을 근거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 검사는 제1항의 몰수추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수 및 보전을 실행하며, 최종적으로 자산관리 기관인 SPMD로 압수물을 넘길 때까지의 모든 수사·영장 청구/집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인회계사를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여 전문적인 재산추적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도 이러한 전문 기관 설치를 고려해볼만한 가치가 있다 하겠다. 왜냐하면 형 확정 이후 추징금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수사단계에서 얼마나 신속하게 피의자 소유의 재산을 확인하고 이를 보전조치하는가에 달려 있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공판, 형 확정 이후 집행에까지 이르는 일련의 형사절차과정에서 추징금으로 대표되는 범죄수익 환수는 하나의 통일된 독립부서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5. 국제협력 강화

범죄수익은 그 본질이 범죄로 인해 취득한 돈이기에 범죄자는 수사기관과 정부 당국의 감시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적극적인 자금세탁 행위를 거쳐 최종적으로 이를 합법적인 재산으로 가장하여 해외로 은닉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날로 증가되고 있다. 최근 발생한 한진그룹의 해외은닉재산 탈루의혹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2012년경 8,258억 원이던 역외탈세 추정세액은 2017년경 1조 3,192억 원으로 60%나 급증하였다.

불법재산을 해외로 은닉하는 경우 범죄자들은 미국과의 인접성, 도주 생활의 편의성, 낮은 법인세율, 부동산 소유주를 안 밝혀도 되는 법제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유럽, 미국 이외에 특히 한국과 가까운 캐나다를 주 무대로 삼고 있는 경우가 많고, 연간 전 세계 검은돈의 20% 가까이가 캐나다에서 세탁되고 있는 실정으로, 위와 같은 돈세탁을 캐나다에 눈이 많이 내리는 것에 빗대 '스노우 워싱(snow-washing)'이라고 하고 있을 정도이다.

또한, 지난 2018년 5월 50일경 우리 대법원에서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그 재산가치가 인정되므로 몰수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판결

을 신고하였는데, 이와 같이 최근 가장 핫한 이슈인 가상화폐 불법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추운 날씨와 비교적 저렴한 전기요금 때문에 가상화폐 채굴기 불법 설치의 요람이 되고 있는 캐나다가 가상화폐 등을 통한 자금세탁의 무대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캐나다는 돈세탁을 범죄로 규정하고 FinTRAC·연방(주) 경찰 등 전문기관에서 테러·불법 마약거래·사기·조직범죄 등 각종 범죄 활동에 동원되는 불법자금의 흐름을 감시하고 이를 수사하는 특별한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간 협력의 확대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범죄수익 환수와 국제공조의 불가분성의 중요성으로 볼 때 상호간의 이해관계 구축 및 공조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할 것이다.

제6장 결론

이상에서 캐나다의 불법 범죄수익 추적 및 환수 법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캐나다는 1985년 마약류규제법(Narcotic Control Act)의 제정으로 범죄수익 환수 법제를 최초 도입하였고, 1989년 형법전(Criminal Code) 제12.2편에 '범죄수익법(Proceeds of Crime)'을 직접 삽입한 이래 현재까지 계속 그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제가 개정·시행되고 있다. 특히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에서 항공기를 이용한 다발 자살테러가 발생한 직후 테러범들에 대한 재정지원을 근절하기 위한 강경대책을 모색한 결과, 2002년 6월 '범죄수익(돈세탁) 및 테러범 재정 지원금지법[Proceeds of Crime(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Act]' 및 그 시행규칙을 보완하여 테러범 및 테러조직에 대한 재정지원을 엄격히 규제하는 체제를 갖추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

캐나다는 범죄자가 캐나다 내에서 기소가능한 범죄(indictable offence)인 지정범죄(designated offence)를 범하였거나, 이와 관련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직·간접 결과로서 캐나다 국내외에서 획득한 모든 재산·이익·편의 등 범죄수익을 자국내 또는 국외에서 취득·사용·변환·송금·배달·운송·처분 등의 행위를 하면 처벌하고, 범죄수익에 속하는 부동산·개인재산·자격문서 자체·그의 전환 혹은 교환의 산물에 속하는 모든 재산, 그리고 범죄행위를 저지름으로써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발생하거나 얻어진 모든 수익을 압수하고 그 처분을 금지하는 보전처분을 통해 종국적으로 몰수처분하고 있다.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몰수에는 연방법인 형법 등의 적용을 받는 형사몰수(Criminal Forfeiture), 각 주의 지방민사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몰수(Civil Forfeiture)가 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영미법을 따르는 캐나다는 피고인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지 않고, 행위자에 대한 기소 여부와는 무관하게 범죄관련재산을 몰수하는 독립적인 몰수절차인 NCB몰수(Non-Conviction Based asset forfeiture)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캐나다는 범죄수익 환수가 단계별로 세분화되어 진행되고 있다. 우선 FinTRAC에서 자금세탁(ML)과 테러 파이낸싱(TF) 범죄와 관련되어 의심스러운 거래(suspicious transaction) 및 고액현금거래(current transaction) 등 보고서를 작성·보고하고, 연방 및 주 지방정부 차원에 설치된 범죄수익환수부(proceeds of crime branch)에서 형법 및 기타 연방/주 법령들에 의거하여 자금세탁 범죄를 수사하고, 범죄의 수익 압수·보전을 수행한다. 이후 법원의 몰수 선고시 압수재산의 처분, 몰수, 압수된 자산의 판매 수익을 처리하는 역할을 압수자산관리국(SPMD)에서 전담하고 있다. 만약 민사몰수명령을 집행하기 위해서라면 민사구제사무소(CRIA) 등 여타 다른 주정부 소속 민사몰수청에서 몰수 선고에 따른 자산을 처리한다.

이를 위해 법원에서는 수사기관에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각종의 수사 권한을 부여해주고 있다. 지정범죄로 취득한 유·무형의 재산, 그 수익의 압수 및 보전조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특별수색영장(special search warrant)을 포함하여 보전명령(restraint order), 관리명령(management order), 제출명령(production order) 등의 제도를 통해 최종적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있다.

이렇듯 캐나다는 우리의 경우보다 더욱 강력하게 범죄수익의 취득, 가장·은닉 행위를 처벌하고 있고, 범죄로 인해 획득한 재산은 반드시 국가에서 몰수할 수 있도록 민형사에 걸친 강력한 몰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FATF, UN 등 국제기구에서 제시하는 권고안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에 직면하여 국제사회가 나아가갈 방향을 선도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 표명이기도 하다.

향후 캐나다의 환수 법제에 대한 더욱 활발한 논의를 통해 우리 범죄수익 환수 법제의 튼실한 기반을 다지고, 전국민이 공감하는 '범죄로 인한 수익은 반드시 환수된다.'는 명제가 현실로 실현되어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 문헌

가. 논문

- 김형남, 「캐나다 연방대법원의 사법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 제7집 제5호, 2006
- 조의연, 「캐나다의 법원구조와 법관인사제도」, 외국사법연수논집, 재판자료(105집)
- 이태형, 「캐나다 양형조사제도에 관한 연구-우리나라 양형조사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2006년 국외단기개인훈련보고서
- 조병인, 「캐나다의 불법수익 몰수체계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 김구슬, 「범죄수익몰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독립몰수의 도입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2014년 박사학위청구논문
- 도중진/박광섭, 「범죄수익 몰수자산기금 도입방안 - 각국의 입법동향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3호 (통권 제71호), 2007년 가을호

나. 기타 자료

(1) 각종 보고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주요 해외국 법집행기관의 금융거래추적 운영 실태에 대한 연구」, 2017. 12.
-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각국 법관 징계제도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5-17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수익의 사후적 통제 및 환수금 활용방안」, 연구용역보고서, 2013. 12.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업무매뉴얼」, 2019. 7.

국회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안 검토」, 국회, 1962. 10. 25.

(2) 기사

동아일보, 「법무부 “직접수사 부서 41곳 폐지”...검 “부패수사 포기 하라는 것”」, 2019. 11. 14.

중앙일보, 「밴쿠버, 포코-코퀴틀람, 전화사기 피해규모 산더미」, 2019. 11. 8.

The Bchain, 「자금세탁방지 글로벌 대응 본격화...캐나다 규제안 발표」, 2019. 7. 11.

2. 외국 문헌

가. 저서

Roach, Kent, Healy, P., and Trotter, G., 「Criminal Law and Procedure - Cases and Materials(9th ed)」, Emond Montgomery, 2004

canadian constitution foundation, 「Civil Forfeiture in canada」, 2015-2016

나. 기사

cision, 「police charge 12 and restrain numerous assets」, 2010. 10. 14.

3. 인터넷 자료

캐나다 법무부 홈페이지_department of justice canada

(<https://www.justice.gc.ca/eng/csj-sjc/just/07.html>)

캐나다 온타리오주 법원 홈페이지

(<https://www.ontariocourts.ca/ocj/general-public/what-do-judges-and-justices-of-the-peace-do>)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법원 홈페이지

(<https://www.provincialcourt.bc.ca/downloads/criminal/Criminal-Flowchart.pdf>)

캐나다 통계청 홈페이지

(<https://www150.statcan.gc.ca/n1/daily-quotidien/190722/dq190722a-eng.htm>)

캐나다 온타리오주 정부 홈페이지

(<https://www.ontario.ca/document/ontario-gazette-volume-149-issue-12-march-19-2016/ministry-attorney-general>)

캐나다 온타리오주 정부 홈페이지_검사 매뉴얼

(<https://www.ontario.ca/document/crown-prosecution-manual>)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정부 홈페이지

(<https://www2.gov.bc.ca/gov/content/safety/crime-prevention/civil-forfeiture-office>)

캐나다 연방검찰청 홈페이지

(<https://www.ppsc-sppc.gc.ca/eng/tra/tr/17.html>)

캐나다 연방경찰청(RCMP) 홈페이지

(<http://www.rcmp-grc.gc.ca/poc-pdc/index-eng.htm>)

캐나다 공공안전부(Public Safety canada) 홈페이지

(<https://www.publicsafety.gc.ca/cnt/cntrng-crm/plcng/cnmcs-plcng/ndx/snpss-en.aspx?n=74>)

캐나다 토론토경찰서 홈페이지

(<https://www.torontopolice.on.ca/financialcrimes/>)

캐나다 FinTRAC 홈페이지

(<https://www.FinTRAC-canafe.gc.ca/publications/ar/2018/1-eng>)

에그몽그룹 홈페이지

(<https://www.egmontgroup.org/en/content/about>)

APG 홈페이지

(<http://www.apgml.org/members-and-observers/page.aspx?p=8c32704a-5829-4671-873c-7b5a23ced347>)

캐나다 공공사업부 홈페이지

(<https://www.tpsgc-pwgsc.gc.ca/app-acq/gbs-spm/index-eng.html>)

캐나다 Investigation Counsel 로펌 홈페이지

(<https://investigationcounsel.com/2017/07/11/fraud-victims-know-recovery-civil-remedies-act>)